연구보고 2018-05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사건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방안

이윤진 외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8-05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사건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방안

연구책임자 **이 윤 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장 희 선**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
박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8-05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사건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방안**

발행일 2018년 11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림디엔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61-9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머 / 리 / 말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문제이다.

정부의 아동학대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학대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에 대한 처벌 강화와 어린이집 CCTV 설치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다. 유치원 역시 비슷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CCTV는 임시방편에 불과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하고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매뉴얼의 보급과 확산,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중재기구 설립 등의 욕구를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사건 대응 매뉴얼과 조기발견체계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가 영유아 학대 사전사후 대응 매뉴얼이 관련 기관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정책적 연구 자료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점차 사라지고, 나아가 교사와 아동의 인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 전문가, 학부모님, 교직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의 의견이며 연구소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18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목 차

요약 1

Ⅰ. 서론 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
2. 연구의 방법 ····· 11

Ⅱ.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15

1. 아동학대 개요 ····· 17
2. 관련 법제도 분석 ····· 36
3. 아동학대 관련 사업: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45
4. 아동학대 원인과 유형: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 54
5.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 발전 과정 ····· 58
6.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및 조기발견체계 선행연구 분석 ····· 66

Ⅲ. 교사 및 학부모 인터뷰 조사 결과 73

1. 인터뷰 개요 ····· 75
2. 원장 및 교사 조사 결과 ····· 81
3. 학부모 조사 결과 ····· 112
4. 소결 ····· 130

Ⅳ. 영유아 보육 교육기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및 조기발견체계 135

1. 매뉴얼 개발 배경 ····· 137
2.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이해[교육편] ····· 139
3. 기관에서의 실천 방법[실천편] ····· 156
4.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 183

Ⅴ. 정책 제언 189

1. 현장중심 아동학대 매뉴얼 보급 및 확산 ····· 191
2.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중재센터(가칭) 설립 ····· 192

참고문헌 209

부록 215

부록 1. 기관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요령 ····· 217
부록 2. 기관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 ····· 223
부록 3.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중치 지표 및 점수 ····· 233
부록 4. 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 세부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8조 등) ····· 234
부록 5. 유아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스트레스 대응 및 자가 진단 ····· 236
부록 6. 성인 우울자가선별검사
(Center for Epidemiological-Depression Scale : CES-D) · 237
부록 7. 심층면담 질문지: 어린이집 원장용 ····· 239
부록 8. 심층면담 질문지: 어린이집 교사용 ····· 241
부록 9. 심층면담 질문지: 실무자용 ····· 244
부록 10. 심층면담 질문지: 부모용 ····· 248

표 목차

〈표 Ⅰ-2- 1〉 심층면담 대상 및 조사 내용 ····· 12
〈표 Ⅰ-2- 2〉 심층면담 실시 일정 및 내용 ····· 13
〈표 Ⅰ-2- 3〉 자문회의 일정 및 내용 ····· 13
〈표 Ⅱ-1- 1〉 아동학대 신고 건수 ····· 18
〈표 Ⅱ-1- 2〉 아동학대 판명 사례 건수 ····· 19
〈표 Ⅱ-1- 3〉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추이 ····· 19
〈표 Ⅱ-1- 4〉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 20
〈표 Ⅱ-1- 5〉 시·도별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발생현황 ····· 20
〈표 Ⅱ-1- 6〉 시·도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 현황 ····· 21
〈표 Ⅱ-1- 7〉 아동학대 발생장소 ····· 22
〈표 Ⅱ-1- 8〉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 23
〈표 Ⅱ-1- 9〉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 23
〈표 Ⅱ-1-10〉 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사례 발생 건수 ····· 24
〈표 Ⅱ-1-11〉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 ····· 25
〈표 Ⅱ-1-12〉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 25
〈표 Ⅱ-1-13〉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만) ····· 26
〈표 Ⅱ-1-14〉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 26
〈표 Ⅱ-1-15〉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 27
〈표 Ⅱ-1-16〉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 27
〈표 Ⅱ-1-17〉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중복포함) ····· 28
〈표 Ⅱ-1-18〉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 29
〈표 Ⅱ-1-19〉 어린이집 CCTV 열람 건수 대비 아동학대 확정 건수 ····· 32
〈표 Ⅱ-1-20〉 유치원 CCTV 운영 가이드라인(교육부, 2017) ····· 33
〈표 Ⅱ-1-21〉 유치원 CCTV 운영 가이드라인: 아동학대 의심 시 (교육부, 2017) ····· 34
〈표 Ⅱ-1-22〉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 조치 결과 ····· 34
〈표 Ⅱ-1-23〉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 ····· 35

〈표 Ⅱ-2- 1〉 아동학대 유관 법률 분석 정리 ····· 45
〈표 Ⅱ-3- 1〉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 사업 관련 ····· 47
〈표 Ⅱ-4- 1〉 아동학대 원인 ····· 56
〈표 Ⅱ-4- 2〉 아동학대 유형 ····· 57
〈표 Ⅱ-5- 1〉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연도별 변화 요약 ····· 65
〈표 Ⅱ-6- 1〉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 68
〈표 Ⅲ-1- 1〉 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사항(교사) ····· 76
〈표 Ⅲ-1- 2〉 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사항(원장) ····· 78
〈표 Ⅲ-1- 3〉 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사항(부모) ····· 79
〈표 Ⅲ-4- 1〉 원장과 교사 비교 ····· 131
〈표 Ⅲ-4- 2〉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교 ····· 132
〈표 Ⅲ-4- 3〉 당사자별 학대 인식과 개선사항 관련 요구 ····· 134
〈표 Ⅳ-2- 1〉 아동복지법 상 금지 행위 ····· 140
〈표 Ⅳ-2- 2〉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 ····· 141
〈표 Ⅳ-2- 3〉 최근 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2014년-2016년) ····· 143
〈표 Ⅳ-2- 4〉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 유형별 발생사례 예시 ····· 144
〈표 Ⅳ-2- 5〉 어린이집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구체적 행위 유형 ····· 146
〈표 Ⅳ-2- 6〉 최근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사례 예시 ····· 147
〈표 Ⅳ-2- 7〉 최근 기관에서의 학대행위자 특징 ····· 154
〈표 Ⅳ-2- 8〉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관련 요인 ····· 156
〈표 Ⅳ-3- 1〉 영유아를 둘러싼 협력 파트너십의 강점 ····· 163
〈표 Ⅳ-3- 2〉 각 발달단계별 영유아의 특성 ····· 165
〈표 Ⅳ-3- 3〉 기관 일과에서의 이슈와 필요 요소 ····· 167
〈표 Ⅳ-3- 4〉 기관 일과에서의 실천 방법 ····· 170
〈표 Ⅳ-3- 5〉 보육·교육 환경에서 훈육하기 위한 기본 실천 전략 및 방법 ·· 172
〈표 Ⅳ-3- 6〉 훈육방법 정하기 ····· 176
〈표 Ⅳ-3- 7〉 보상의 유형 ····· 177
〈표 Ⅳ-3- 8〉 영유아의 짜증 다루기 ····· 179
〈표 Ⅳ-3- 9〉 영유아의 분노와 좌절 다루기 ····· 180
〈표 Ⅳ-3-10〉 영유아의 스트레스 다루기 ····· 181
〈표 Ⅳ-3-11〉 영유아의 물기 행동 다루기 ····· 181

〈표 Ⅳ-4- 1〉 신고의무자의 범위(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184
〈표 Ⅳ-4- 2〉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 187
〈표 Ⅴ-2- 1〉 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사항(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 193
〈표 Ⅴ-2- 2〉 현재의 기관 발생 아동학대 대응 절차에 관한 사항과 의견 종합 비교 ····· 201
〈표 Ⅴ-2- 3〉 개선 전후 비교 ····· 207

그림 목차

[그림 Ⅱ-1-1]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흐름 ····· 31
[그림 Ⅱ-3-1]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 예방 교육 내용 ····· 47
[그림 Ⅱ-3-2]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처리 진행도 ····· 52
[그림 Ⅱ-3-3]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법절차 개입 경로도 ····· 53
[그림 Ⅱ-5-1] 2015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 61
[그림 Ⅳ-3-1] 보육·교육을 위한 협력 파트너십 ····· 158
[그림 Ⅳ-3-2] CCTV를 활용한 기관 내 아동학대 예방 실천 ····· 183
[그림 Ⅳ-4-1]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 186
[그림 Ⅳ-4-2] 아동학대 신고 요령 ····· 188
[그림 Ⅴ-2-1] 아동학대 중재센터 모형(안) ····· 204
[그림 Ⅴ-2-2] 개선 전후 비교 ····· 207

부록 표 목차

〈부록 표 1〉 신고의무자의 범위(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217
〈부록 표 2〉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 220
〈부록 표 3〉 아동학대 관련법 및 주요 내용 ····· 223
〈부록 표 4〉 어린이집 아동학대 경중 기준 ····· 225
〈부록 표 5〉 CCTV 설치 등에 관한 법령 ····· 226

부록 그림 목차

[부록 그림 1]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 219
[부록 그림 2]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 221
[부록 그림 3] 아동학대 신고 요령 ····· 222
[부록 그림 4] 영유아 보육·교육기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절차 ····· 229
[부록 그림 5]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사건 처리 흐름도 ····· 232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 학대의 특이성

-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는 이해당사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의 정도와 수준이 가정 내 학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해당사자의 욕구 파악 필요

-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는 아동, 학부모, 교직원의 세 당사자가 등장함에 따라 각각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인식과 대응 욕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또한 교사, 학부모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여야 함

-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함과 동시에 부가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나. 연구방법 및 내용

□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을 중심으로 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과 교사, 영유아 자녀를 가진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관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경험 사례, 사전 대응 방법과 욕구, 사후 대응 방법과 욕구 등에 대하여 조사함

□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아동학대 사전-사후 대응 매뉴얼 및 조기발견체계를 개발함

2.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 아동학대 개요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
- 특히 영유아 보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는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2017년 기준 전체 아동학대의 약 3.6%를 차지
- 아동학대는 일반적으로 예방 및 발견, 신고 및 수사, 사례 및 사후 관리의 3단계 대응 절차를 가지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
- 2015년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의심 사례 발생 시 학부모에게도 CCTV 열람권이 발생
  - 하지만 2018년 조사에 의하면 어린이집 CCTV 열람 건수 대비 아동학대 확정 건수는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관련 법제도 분석

- 아동복지법은 아동 학대 관련 일반적인 내용이 제시
  -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
- 영유아보육법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어린이집 운영 및 취업 불가 규정,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열람, 보존 등의 내용이 규정
-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조사 관련 내용이 제시
- 유아교육법에는 아동학대 관련하여 기관의 운영 불가 규정이 제시

□ 아동학대 관련 사업: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현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대응 절차가 이루어짐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교직원 상담 기능을 하고 있지만 기관에서의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

□ 아동학대 원인과 유형

- 아동학대의 원인은 관련 제도, 원장의 신념, 학대에 대한 인식 등 교사와 원장, 부모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음
- 아동학대의 유형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신체적, 언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등으로 구분됨

□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 발전 과정

- 정부는 2014년 이후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수 차례 발표한 바 있음
- 2015년에는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때 CCTV 설치 의무화 등이 도입
- 최근에는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육 환경 개선 뿐 아니라 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 등을 도입하도록 함

□ 기존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 이러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매뉴얼이 제시된 바 있음
-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현장의 욕구를 반영한 매뉴얼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3. 교사 및 학부모 인터뷰 조사 결과: 아동학대 관련 인식 및 요구사항

□ 인터뷰 개요

- 본 연구는 학부모, 교사, 원장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매뉴얼 제작을 위한 인터뷰를 시행

□ 원장 및 교사 조사 결과

- 원장 및 교사는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개선되어야 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고 사후 대응과 관련하여 CCTV가 존재하긴 하지만 객관적 제3자가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

□ 학부모 조사 결과

- 학부모 조사 결과, 학대의 의심은 교사와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발생하게 되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교사의 근로 환경 개선이 학대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응답
- 학부모 역시 사후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요구

□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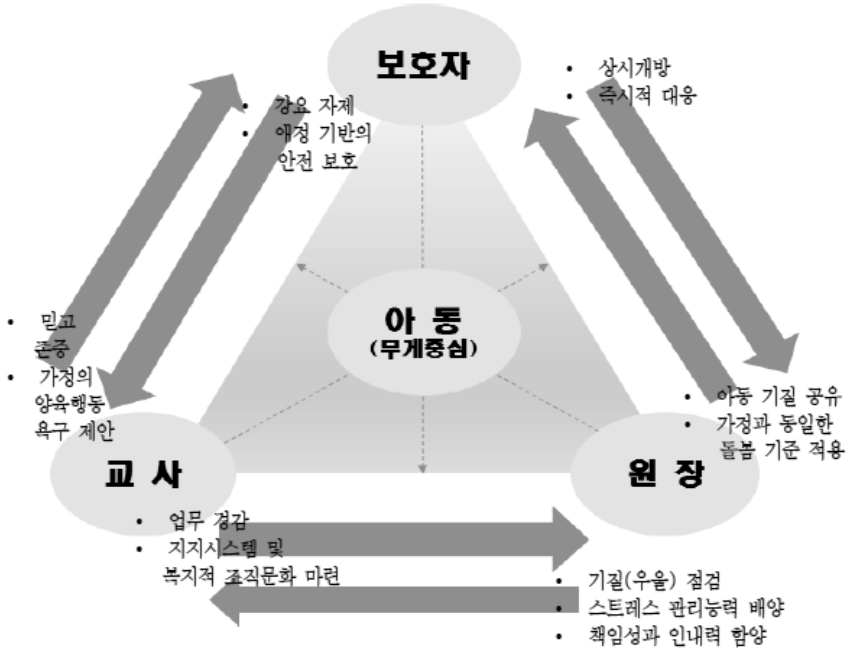
	학부모 입장	기관장 입장	교사 입장
학대 원인	- 교사의 근무 환경 열악 - 교사 인성과 자질 - 스트레스	- 교사의 근무 환경 열악 - 교사 인성과 자질 - 스트레스 - 학대 기준의 광범위화	- 교사의 근무 환경 열악 - 교사 인성과 자질 - 스트레스 - 부모의 불신 - 학대 기준 강화
학대 유형	-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로 다양	- 다양하고 상황마다 다름	- 다양하고 상황마다 다름
학대 사전 대응 절차	- 교사와의 소통	- 케이스 스터디	- 동료 교사 및 원장과 이야기 나누기 - 학부모와 소통하기
학대 사후 대응 절차	- 무조건 CCTV 열람	- 법제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듯	- 절차는 알고 있으나 막상 닥치면 당황할 듯함
학대 예방 매뉴얼 내용	- 부모와 합의된 일과 시간공유	- 필요성 인정하나 현실에 적용 가능한 부분들이 필요	- 일과시간별로 학대 유형에 대하여 알려주길 기대
사후 대응 절차에 있어 바라는 것	- 교사 및 원장과 직접 상대하지 않는 객관적 기구 설립	- 중재 역할 - 객관적 기관의 출현	- CCTV의 객관적 해석 - 중재의 역할
정책적 개선 요구 사항	- 교사 근무 환경 개선	- 교사 대 아동 수 비율 감소 재정적 지원	- 원장과 동일하나 휴게 시간에 대한 요구도 큼

4. 현장욕구 중심 매뉴얼과 조기발견체계

□ 동 매뉴얼은 아동을 중심으로 한 원장-교사-부모 간 협력과 신뢰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

□ 매뉴얼은 각 당사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아동 권리 증진에 방향성을 두고 구성

- 매뉴얼은 영유아의 발달단계별 특성을 이해하고, 일과시간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학대 발생에 대한 예방을 도움



5.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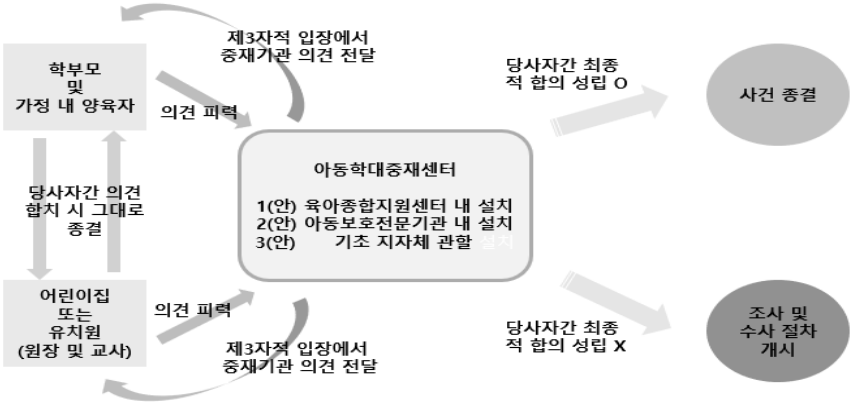
□ 본 연구의 결과 1) 매뉴얼의 실용적 보급, 2) 아동학대 중재기구를 설치 할 것을 제안함

□ 기존에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 배포된 매뉴얼들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나 현장에서의 활용가능성이 낮았던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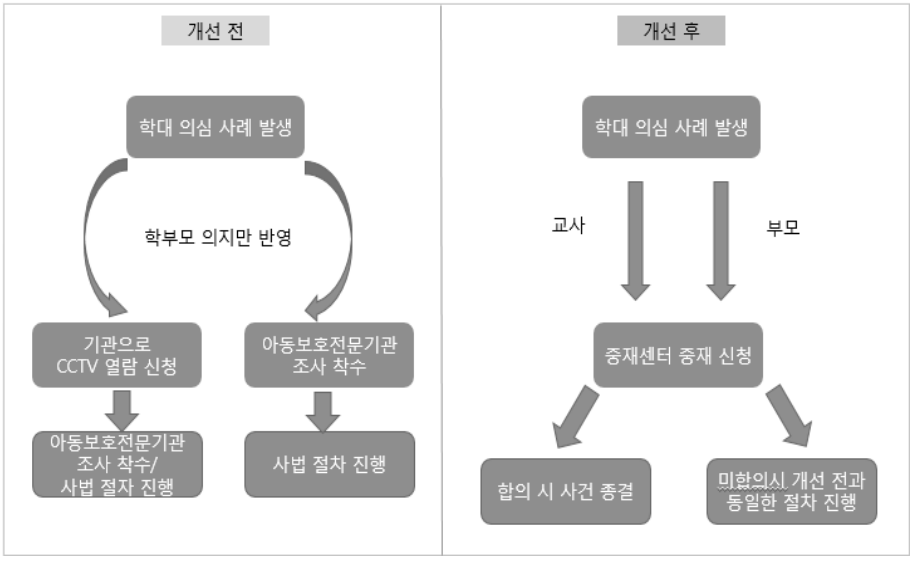
- 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배포하여 상시 모니터링 할 것을 제안함

□ 아동학대 중재센터(가칭) 는 아동학대 각 개별 당사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실용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 각 당사자 인터뷰 결과 제 3의 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중재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는 이러한 인터뷰와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의 중재기구를 제안함



□ 개선 전 후 다음의 변화가 기대됨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2015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산 이후 후속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어린이집에서 행해진 여러 가지 형태의 아동학대 사건들은 대상이 아동 중에서도 영유아라는 점, 기관에서 보육·교육을 하는 와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 교직원의 역할은 교육자로서의 역할 이전에 부모의 대리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은 더욱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8년 10월에는 아동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한 보육교사가 억울함, 스트레스, 중압감 등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보육교사 입장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성이 증폭된 바 있다.

이러한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하에, 각종 아동 학대 예방 및 후속 대책이 발표되었고 같은 맥락에서 여러 논란 끝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으로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 아동의 보호 확대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개편은 아동학대 방지의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을 수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2018년 3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한

해 동안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는 825건으로 전체 학대 사건의 약 3.7%, 유치원에서의 학대는 266건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치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정 내 학대 비율인 80.5%에 훨씬 못 미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학대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의 경우 5세 이하 영유아의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에서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보육·교육 기간에서의 아동학대는 무상보육의 정착으로 영유아 전체의 약 80% 이상이 기관 보육을 하고 있다는 점(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에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영유아 아동학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은영·박원순·이재희·이혜민, 2016;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또한 이러한 영유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교사와 학부모별로 약간씩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은영·박원순·이재희·이혜민 등, 2016).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행위 유형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되며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 또한 다양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영유아 학대 원인과 현황, 특성 등을 탐색하고 체크리스트와 매뉴얼을 개발한 것에서 나아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 내용에 담길 내용을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이로서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마련 및 조기발견체계 마련을 위해 현장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장기적으로는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1)]

나. 연구의 목적[2)]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교직원들과 영유아보육기

1) 본 연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지만, 어린이집은 0세-5세의 영유아를 모두 포괄한다는 점에서 유치원 재원 연령인 3세-5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2) 본 연구는 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을 개발함이 목적이고, 가정에서 발생한 학대를 기관에서 파악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목적이 아님을 사전에 밝혀둔다. 또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를 다루지만, 최근 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관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시행하여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매뉴얼을 통해 아동학대 조기발전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매뉴얼 개발을 통해 조기발견체계 구축을 통합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및 원장을 대상으로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학대의 원인, 현장에서의 대응 실태, 학대 예방, 사후 대응을 위한 정책적 욕구 등을 분석한다.

둘째, 보육·교육 교직원과 더불어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범위와 수준, 기관에 바라는 점 등을 조사하여 보육·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보육 수요자 중심의 실천적 매뉴얼을 개발한다.

셋째, 아동학대 정책 과정 분석과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매뉴얼 개발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수요자 욕구 중심 정책' 을 제안한다.

2 연구의 방법

가. 문헌연구

본 연구는 국내외 아동 학대와 관련한 문헌 검토를 통해 관련 정책의 변화 과정,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의 원인, 학대 대응 절차 등을 살펴본다. 특히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및 원인을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통해 파악하여 현 시점에서 문제를 다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문헌연구 대상은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관련 서적, 유관 법률 등이다.

나. 심층인터뷰

본 연구에서 심층면담은 여러 대상자를 통해 다층적으로 이루어진다. 대상자별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욕구를 파악하여 다수 당사자가 수용이 가능한 수요자 욕구 중심 매뉴얼 개발을 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기관에 영유아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개별 심층인터뷰(Deep-depth Interview)를 진행한다. 표집은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여 시행한다.

조사 내용은 개별 당사자별로 약간씩 상이하였는데 기관장의 경우 조직문화와 채용에 대한 내용을 부가적으로 질문하였고 공통적으로는 아동학대의 원인과 현황 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이후 사후 대응 방안에 있어서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질문하였다.

표 Ⅰ-2-1 심층면담 대상 및 조사 내용

조사 대상	조사 규모	조사 내용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9인	- 아동학대와 훈육의 차이 - 아동학대에 대한 주변의 관심과 반응 - 아동학대 사전 대응 관련 교사 채용 방법 - 아동학대 사후 대응 절차 및 방법 - 매뉴얼 및 조기발견체계 관련 - 사후 대응에 있어서 애로사항과 CCTV에 관한 의견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25인	-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 아동학대에 대한 주변 사례 - 아동학대 원인 관련 - 아동학대 관련법에 대한 인지 정도 - 아동학대 관련 교육 - 사후 대응에 있어서 애로사항과 CCTV에 관한 의견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5인	-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하여야 하는지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후 처리절차에 있어 문제점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현황 및 특징 - 가장 빈번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이유 - 학대 예방교육 - 기존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실효성 확보 방안 - 기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시스템
영유아 부모	13인	- 훈육과 학대의 차이 - 학대 발견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기관에 대한 훈육의 기대 정도 - 아동학대 우려 사항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법 - 학대 경험 사례 - 아동학대 관련 교육 - 기관에 아동학대의 원인, 개선 사항 - 정부의 역할 - 사후 대응에 있어서 애로사항과 CCTV 관련 사항

표 Ⅰ-2-2 심층면담 실시 일정 및 내용

개최일자	참석자/인원	안건
2018. 7. 24	유치원 교사/ 5인	- 아동학대 전반 및 아동학대 매뉴얼 관련 현장 요구
2018. 8. 7	어린이집 교사/ 3인	- 아동학대 전반 및 아동학대 매뉴얼 관련 현장 요구
2018. 8. 9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5인	- 기관 아동학대 사례 및 현황 -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2018. 8. 9	어린이집 교사 3인	- 아동학대 전반 및 아동학대 매뉴얼 관련 현장 요구
2018. 8. 14	어린이집 원장 3인	- 아동학대 전반 및 아동학대 매뉴얼 관련 현장 요구
2018. 8. 17	영유아 부모 2인	- 아동학대에 관한 부모의 의견
2018. 8. 20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 아동학대 전반 및 아동학대 매뉴얼 관련 현장 요구
2018. 8. 21	어린이집 원장 1인	- 아동학대 전반 및 아동학대 매뉴얼 관련 현장 요구
2018. 8. 22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 7인	- 아동학대 전반 및 아동학대 매뉴얼 관련 현장 요구
2018. 9. 18	영유아 부모 3인	- 아동학대에 관한 부모의 의견
2018. 9. 19	영유아 부모 4인	- 아동학대에 관한 부모의 의견
2018. 9. 19	유치원 원장 2인	- 아동학대 전반 및 아동학대 매뉴얼 관련 현장 요구
2018. 9. 20	유치원 교사 4인	- 아동학대 전반 및 아동학대 매뉴얼 관련 현장 요구
2018. 9. 21	영유아 부모 4인	- 아동학대에 관한 부모의 의견
2018. 10. 1	유치원 교사 및 원장 4인	- 아동학대 전반 및 아동학대 매뉴얼 관련 현장 요구

다. 전문가 자문회의

본 연구는 매뉴얼 개발에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 관련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한다. 심층인터뷰 자료의 내용 분석과 더불어 매뉴얼 구성 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매뉴얼 개발을 위해 현장전문가와 학계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제언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뉴얼 뿐 아니라 정책적 방안을 위한 검증을 함께 시도한다.

표 Ⅰ-2-3 자문회의 일정 및 내용

개최일자	참석자	안건
2018. 8.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중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제도 사례 소개
2018. 8.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정책 팀장	매뉴얼에 담길 내용 자문

(표 Ⅰ-2-3 계속)

개최일자	참석자	안건
2018. 9.	범죄심리학 전공 교수 1인	아동학대 사후 관리 관련 자문
2018. 10. 10. ~10. 28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 3인	아동 복지 관점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방안 관련 자문
2018. 10. 10. ~10. 28	아동가족학 전공 교수 및 전문가 3인	아동 발달 특성에 근거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방안 관련 자문
2018. 10. 10. ~10. 28	유아교육학 전공 교수 2인	유아교육학적 관점에서 아동학대 사전 예방 방안 관련 자문

주: 전문가 자문은 전문가 별로 필요한 경우 매뉴얼 개발 단계에서 1회, 완성 단계에서 1회 총 2회 실시하여 질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내용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함

라. 정책실무협의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아동학대대응팀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또한 아동학대대응팀의 구성으로 효율성 있는 정책 제언을 제시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실현 가능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한다. 또한 연구 기간 내 정책토론회를 개최함으로서 동 연구의 결과물로 정책의 수립 및 대국민 정책 확산에 기여한다.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II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1. 아동학대 개요
2. 관련 법제도 분석
3. 아동학대 관련 사업: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4. 아동학대 원인과 유형: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5.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 발전 과정
6.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및 조기발견체계 선행연구 분석

Ⅱ.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1 아동학대 개요

가. 정의

아동학대의 정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 3조 7호) 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아동학대처벌법과 형법에 의한다.

위와 같은 법적인 정의 외에도 아동학대는 아동 권리와 욕구 차원에서 논의되기도 한다. 김미숙 외(2016)의 연구에서는 법적인 아동학대의 정의 및 범주 외에도 아동복지적 차원에서 폭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아동 학대에 대한 정의는 법 규정 외에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아동 학대 정의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 내지 법규의 미비는 현장에서의 혼선을 초래하는 제 1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법적인 정의가 존재하지만 현실 적용에 있어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 다수 발생하게 됨에 따라 더욱 세부적인 정의 내지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현황

아동학대 현황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현황조사’ 자료를 통해 공

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2015년 CCTV 설치 의무화 이후에 더욱 많은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처럼 감소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는 총 29,674건으로 파악된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32%,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68%로 비신고 의무자 중에서 아동 본인에 의한 신고는 9%를 차지하였다. 신고 접수 사례를 통해볼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절대적인 학대 수치가 낮은 것과 별개로 영유아의 경우 학대 신고에 있어 취약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성장 단계를 고려할 때 양육자 또는 대리양육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학대 판명 기준이 세분화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증폭하였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할 것이다.

표 Ⅱ-1-1 아동학대 신고 건수

단위: 건(%)

	아동학대 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 사례	계
	응급아동 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2012	1,388 (12.5)	7,611 (69.6)	8,979 (82.1)	34 (0.3)	1,930 (17.6)	-	10.943 (100.0)
2013	1,686 (12.9)	9,171 (70.1)	10,857 (83.0)	43 (0.3)	2,176 (16.6)	-	13,076 (100.0)
2014	2,566 (14.4)	12,459 (70.0)	15,025 (84.5)	93 (0.5)	2,664 (15.)	9 (0.1)	17,791 (100.0)
2015	2,252 (11.7)	14,399 (74.9)	16,651 (86.7)	87 (0.5)	2,465 (12.8)	11 (0.1)	19.214 (100.0)
2016	2,796 (9.4)	23,082 (77.8)	25,878 (87.2)	189 (0.6)	3,604 (121)	3 (0.0)	29,674 (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 사례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대로 판명되는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Ⅱ-1-2 아동학대 판명 사례 건수

단위: 건(%)

구분	아동학대 사례	조기지원 사례	잠재위협사례	일반 사례	조사 진행 중 사례	계
2012	6,403(71.3)	-	721(8.0)	1,855(20.7)	-	8,979(100.0)
2013	6,796(62.6)	-	1,217(11.2)	2,829(26.1)	15(0.1)	10,857(100.0)
2014	10,027(66.7)	1,782(11.9)	-	3,215(21.4)	-	15,025(100.0)
2015	11,715(70.4)	1,742(10.5)	-	3,194(19.2)	-	16,651(100.0)
2016	18,700(72.3)	2,222(8.6)	-	4,898(18.9)	58(0.2)	25,878(100.0)

주: '아동학대사례'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의미하므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피해아동의 경우 만 13-15세의 경우가 전체의 2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대행위자의 경우 부모에 의한 경우가 80.5%로 절대적인 비중이었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가 82.2%, 어린이집은 3.2%, 학교는 3.3%, 유치원은 1.3%를 차지하였다.

표 Ⅱ-1-3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추이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6,796	10,027	11,715	18,700	21,524
어린이집 교직원에 의한 학대 빈도	202 (3.0)	295 (2.9)	427 (3.6)	587 (3.1)	776 (3.6)

주: 아동학대실태조사(2018) 참고하여 작성함

한편 2018년 이명수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이명수 의원실 내부자료, 2018) 어린이집 수가 2014년 43,742개소에서 2017년 40,238개소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4년 295건

에서 2017년 8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4년 5,827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6년 8,539건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8,467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3] 지역별로는 세종, 제주, 대전지역의 경우 2014년 대비 2017년도에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대구, 울산, 인천지역의 경우 2014년 대비 2017년도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Ⅱ-1-4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어린이집	개 수	43,742	42,517	41,084	40,238
	전년 대비 증감률 (%)		-2.8%	-3.4%	-2.1%
아동학대	발생 건수	295	427	587	815
	전년 대비 증감률 (%)		44.7%	37.5%	38.8%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건수	5,827	6,797	8,539	8,467
	전년 대비 증감률(%)		+6.6%	+5.6%	-0.8%

자료: 이명수 의원실(2018) 내부자료 제공, 한국보육진흥원 자료분석

표 Ⅱ-1-5 시·도별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발생현황

지역	구 분	2014	2017	증감	증감 비율(%)	차이값
세종	안전사고(건)	11	300	+289	+2627.3%	2546.70%
	어린이집 수(개소)	160	289	129	+80.6%	
제주	안전사고(건)	18	149	+131	+727.8%	739.80%
	어린이집 수(개소)	599	527	-72	-12.0%	
대전	안전사고(건)	114	505	+391	+343%	354.40%
	어린이집 수(개소)	1,698	1,505	-193	-11.4%	
충북	안전사고(건)	132	511	+379	+287.1%	290.60%
	어린이집 수(개소)	1,229	1,186	-43	-3.5%	
대구	안전사고(건)	73	233	+160	+219.2%	227.00%
	어린이집 수(개소)	1,588	1,464	-124	-7.8%	
부산	안전사고(건)	139	351	+212	+152.5%	154.40%
	어린이집 수(개소)	1,957	1,920	-37	-1.9%	

3) 전국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수는 2014년 43,742개에서 2017년 40,238개로 3,504개(-8.0%) 감소한 반면, 안전사고는 2014년 5,827건에서 2017년 8,467건으로 2,640건(+45.3%) 증가하였다(이명수 의원실, 2018).

(표 Ⅱ-1-5 계속)

지역	구 분	2014	2017	증감	증감 비율(%)	차이값
경남	안전사고(건)	289	662	+373	+129.1%	141.80%
	어린이집 수(개소)	3,533	3,084	-449	-12.7%	
강원	안전사고(건)	138	234	+96	+69.6%	78.20%
	어린이집 수(개소)	1,257	1,149	-108	-8.6%	
충남	안전사고(건)	91	152	+61	+67%	71.80%
	어린이집 수(개소)	2,053	1,955	-98	-4.8%	
인천	안전사고(건)	380	592	+212	+55.8%	61.10%
	어린이집 수(개소)	2,308	2,186	-122	-5.3%	
경기	안전사고(건)	1,290	1,828	+538	+41.7%	52.50%
	어린이집 수(개소)	13,259	11,825	-1,434	-10.8%	
서울	안전사고(건)	2,183	2,220	+37	+1.7%	10.00%
	어린이집 수(개소)	6,787	6,226	-561	-8.3%	
경북	안전사고(건)	132	131	-1	-0.8%	5.90%
	어린이집 수(개소)	2,212	2,063	-149	-6.7%	
전북	안전사고(건)	176	151	-25	-14.2%	-4.70%
	어린이집 수(개소)	1,654	1,497	-157	-9.5%	
광주	안전사고(건)	42	39	-3	-7.1%	-5.50%
	어린이집 수(개소)	1,260	1,240	-20	-1.6%	
울산	안전사고(건)	290	244	-46	-15.9%	-9.00%
	어린이집 수(개소)	946	881	-65	-6.9%	
전남	안전사고(건)	329	165	-164	-49.8%	-49.70%
	어린이집 수(개소)	1,242	1,241	-1	-0.1%	
계	안전사고(건)	5,827	8,467	+2,640	+45.3%	53.30%
	어린이집 수(개소)	43,742	40,238	-3,504	-8.0%	

자료 : 이명수 의원실(2018) 내부자료 제공, 한국보육진흥원 자료분석

표 Ⅱ-1-6 시·도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 현황

구분	2014년	2017년	증감	증감비율
대구	3	47	+44	+1466.7%
울산	4	51	+47	+1175.0%
인천	14	144	+130	+928.6%
충북	2	16	+14	+700.0%
부산	5	38	+33	+660.0%
서울	27	160	+133	+492.6%
경북	7	28	+21	+300%
강원	7	26	+19	+271.4%
대전	4	12	+8	+200%
광주	3	7	+4	+133.3%
경남	15	35	+20	+133.3%

(표 Ⅱ-1-6 계속)

구분	2014년	2017년	증감	증감비율
충남·세종	6	12	+6	+100%
전북	14	25	+11	+78.6%
경기	124	195	+71	+57.3%
전남	20	18	-2	-10%
제주	40	1	-39	-97.5%
총계	295	815	520	176.3%

자료: 이명수 의원실(2018) 내부자료 제공, 한국보육진흥원 자료분석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되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한 사례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다. 최근 4년간 추이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 교직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는 2012년 31건, 2013년 53건, 2014년 99건, 2015년 203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16).

또한 아동학대 발생장소에 대한 현황 자료를 통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발생 비율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Ⅱ-1-7 아동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발생장소		건수(비율)	
가정내	아동 가정 내	15,032	(80.4)
	학대행위자 가정 내	339	(1.8)
소계		15,371	(82.2)
집근처 또는 길가		353	(1.9)
친척집		150	(0.8)
이웃집		20	(0.1)
어린이집		601	(3.2)
유치원		247	(1.3)
학교		609	(3.3)
학원		159	(0.9)
병원		68	(0.4)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287	(1.5)
	기타복지시설	24	(0.1)
소계		311	(1.7)

(표 Ⅱ-1-7 계속)

발생장소	건수(비율)	
숙박업소	90	(0.5)
종교시설	61	(0.3)
기타	644	(3.4)
파악 안 됨	16	(0.1)
계	18,7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119.

더욱이 보육교직원과 유치원 교사 등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므로 이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가진다. 이들이 신고할 경우 60% 이상의 사례가 아동학대 사례로 판명되고 있다는 것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표 Ⅱ-1-8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단위: 건(%)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미판단사례		계	
보육교직원	189	(66.1)	25	(8.7)	72	(25.2)	0	(0.0)	286	(100.0)
유치원 교직원·강사	90	(78.9)	7	(6.1)	17	(14.9)	0	(0.0)	114	(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169.

아동학대의 경우 반복적으로 학대가 일어나는지, 즉 재학대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가정 내 학대의 경우와 달리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의 학대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상황적 요건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기관에서는 학대 행위 발생 시 원인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추측이 가능하다.

표 Ⅱ-1-9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단위: 건(%)

발생장소		건수(비율)	
가정내	아동 가정 내	1,463	(92.0)
	학대행위자 가정 내	30	(1.9)
소계		1,493	(93.8)

(표 Ⅱ-1-9 계속)

발생장소		건수(비율)	
집근처 또는 길가		31	(1.9)
친척집		7	(0.4)
이웃집		1	(0.1)
어린이집		1	(0.1)
유치원		2	(0.1)
학교		5	(0.3)
학원		1	(0.3)
병원		1	(0.1)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1	(0.1)
	기타복지시설	0	(0.0)
소계		1	(0.1)
숙박업소		9	(0.6)
종교시설		3	(0.2)
기타		33	(2.1)
파악 안 됨		3	(0.2)
계		1,591	(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190.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을 포함한 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비율은 약간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약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전체 9% 중 34.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이는 영유아가 학대에 그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설 종사자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전체의 5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보육교직원의 경우에도 전문성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대와 관련하여 관련 교육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향후 재교육 내지는 보수교육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표 Ⅱ-1-10 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사례 발생 건수

단위: 건, %

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사례 건수	아동학대사례 중 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비율
1,686	9.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10.

구체적으로 시설 종사자 중 보육교직원과 유치원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의 경우 경기 지역이 2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유치원교직원에 의한 학대의 경우 충북지역이 37.9%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Ⅱ-1-11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

단위: 건(%)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서울	83	(14.1)	2	(0.8)
부산	39	(6.6)	33	(13.8)
대구	24	(4.1)	2	(0.8)
인천	81	(13.8)	2	(0.8)
광주	6	(1.0)	3	(1.3)
대전	2	(0.3)	0	(0.0)
울산	42	(7.2)	3	(1.3)
경기	133	(22.7)	37	(15.4)
강원	27	(4.6)	1	(0.4)
충북	10	(1.7)	91	(37.9)
충남	13	(2.2)	25	(10.4)
전북	19	(3.2)	15	(6.3)
전남	22	(3.7)	8	(3.3)
경북	26	(4.4)	1	(0.4)
경남	53	(9.0)	17	(7.1)
제주	7	(1.2)	0	(0.0)
계	587	(100.0)	240	(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p. 211-213.

표 Ⅱ-1-12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남성		여성		계	
보육교직원	3	(0.5)	584	(99.5)	587	(100.0)
유치원교직원	16	(6.7)	224	(93.3)	240	(100.0)
초·중·고교 직원	333	(57.8)	243	(42.2)	576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19	(47.0)	134	(53.0)	253	(100.0)
기타시설 종사자	15	(53.6)	13	(46.4)	28	(100.0)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2	(100.0)	0	(0.0)	2	(100.0)
계	488	(28.9)	1,198	(71.1)	1,686	(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16.

표 Ⅱ-1-13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만)

단위: 명(%)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20~29세	187	(31.9)	68	(28.3)
30~39세	190	(32.4)	116	(48.3)
40~49세	144	(24.5)	32	(13.3)
50~59세	44	(7.5)	23	(9.6)
60~69세	11	(1.9)	0	(0.0)
70세 이상	2	(0.3)	0	(0.0)
파악 안 됨	9	(1.5)	1	(0.4)
계	587	(100.0)	240	(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16.

표 Ⅱ-1-14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단위: 명(%)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신체적 장애	0	(0.0)	0	(0.0)
정신적 장애	0	(0.0)	0	(0.0)
장애의심	1	(0.1)	0	(0.0)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496	(52.8)	166	(49.1)
중독문제	0	(0.0)	0	(0.0)
질환문제	1	(0.1)	0	(0.0)
성격 및 기질문제	87	(9.3)	4	(1.2)
위생문제	1	(0.1)	0	(0.0)
나태 및 무기력	0	(0.0)	0	(0.0)
난독해, 난작문	0	(0.0)	0	(0.0)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99	(10.5)	6	(1.8)
어릴 적 학대 경험	0	(0.0)	0	(0.0)
폭력성	0	(0.0)	0	(0.0)
전과력	0	(0.0)	13	(3.8)
성문제	0	(0.0)	13	(3.8)
원치 않은 아동	0	(0.0)	0	(0.0)
부부 및 가족갈등	0	(0.0)	0	(0.0)
종교문제	0	(0.0)	0	(0.0)
특성없음	229	(24.4)	129	(38.2)
파악 안 됨	25	(2.7)	7	(2.1)
계	939	(100.0)	332	(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17.

피해아동 성별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남아의 비율이 여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Ⅱ-1-15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단위: 명(%)

	남아		여아		계	
보육교직원	342	(58.3)	245	(41.7)	587	(100.0)
유치원교직원	144	(60.0)	96	(40.0)	240	(100.0)
초·중·고교 직원	319	(55.4)	257	(44.6)	576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47	(58.1)	106	(41.9)	253	(100.0)
기타시설 종사자	20	(71.4)	8	(28.6)	28	(100.0)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1	(50.0)	1	(50.0)	2	(100.0)
계	973	(57.7)	713	(42.3)	1,686	(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13.

피해아동 연령은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의 경우 1-3세가 가장 큰 비중을, 유치원교직원의 경우 4-6세가 절대적으로 차지함을 알 수 있었는데, 유치원의 경우 대부분의 재원생이 4-6세임을 감안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표 Ⅱ-1-16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단위: 명(%)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1세 미만	7	(1.2)	0	(0.0)
1~3세	428	(72.9)	8	(3.3)
4~6세	151	(25.7)	232	(96.7)
7~9세	0	(0.0)	0	(0.0)
10~12세	1	(0.2)	0	(0.0)
13~15세	0	(0.0)	0	(0.0)
16~17세	0	(0.0)	0	(0.0)
계	587	(100.0)	240	(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14.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48%로 가장 많았고, 정서학대 19.2%, 방임, 15.6%, 신체학대 14.5%, 성학대 2.6%의 순이었다(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7: 242). 아동학대 유형별로 학대 행위자 특성을 본 결과 성학대를 제외하고 모든 학대 유형에서 양육태도, 양육방법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경

제적 스트레스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는 양육자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함과 동시에 양육 환경의 중요성을 말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는 양육 환경이 곧 기관의 환경이므로 근로 환경 및 조건에 대한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7: 128). 이와 더불어 시설 종사자 유형별로 피해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별다른 특성이 없음에도 학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학대의 원인이 아동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표 Ⅱ-1-17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중복포함)

단위: 명(%)

구분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장애	신체적장애	1	(0.1)	0	(0.0)
	정신적장애	2	(0.3)	1	(1.3)
	장애의심	5	(0.7)	0	(0.0)
	소계	8	(1.1)	1	(1.3)
정서 정신 건강	주의산만	47	(6.5)	18	(5.9)
	과잉행동	29	(3.9)	11	(3.6)
	인터넷(게임)중독	0	(0.0)	0	(0.0)
	불안	64	(8.7)	19	(6.5)
	애착문제	5	(0.7)	5	(1.6)
	무력감	0	(0.0)	5	(1.6)
	우울	33	(4.5)	1	(0.3)
	낮은 자아존중감	1	(0.1)	0	(0.0)
	성격 및 기질문제	23	(3.1)	3	(2.0)
	탐식 및 결식	2	(0.3)	0	(0.0)
	소계	204	(27.9)	62	(21.6)
적응 행동	반항·충동·공격성	19	(2.6)	4	(1.3)
	거짓말	0	(0.0)	0	(0.3)
	도벽	0	(0.0)	0	(0.3)
	가출	0	(0.0)	0	(0.0)
	약물·흡연·음주	0	(0.0)	0	(0.0)
	성문제	1	(0.1)	0	(0.0)
	학교 부적응	1	(0.1)	0	(0.0)
	잦은 결석, 무단결과	0	(0.0)	0	(0.0)
	늦은 귀가	0	(0.0)	0	(0.0)

(표 Ⅱ-1-17 계속)

구분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학습문제	3	(0.4)	1	(0.3)
	폭력행동	17	(2.3)	0	(0.7)
	비행집단활동	0	(0.0)	0	(0.0)
	불건전한 또래관계	0	(0.0)	0	(0.0)
	대인관계기피	4	(0.5)	0	(0.0)
	소계	45	(6.1)	5	(2.9)
발달 신체 건강	신체발달지연	4	(0.5)	0	(0.3)
	언어문제	19	(2.6)	2	(1.0)
	영양결핍	0	(0.0)	0	(0.0)
	대소변문제	3	(0.4)	0	(0.0)
	위생문제	2	(0.3)	0	(0.0)
	틱(음성, 신체, 뚜렛)	0	(0.0)	0	(0.0)
	잦은병치레	0	(0.0)	0	(0.0)
	주요병력	8	(1.1)	0	(0.0)
	소계	36	(4.9)	0	(1.3)
특성없음		422	(57.4)	182	(71.2)
기타		19	(2.6)	4	(1.6)
계		734	(100.0)	256	(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15.

또한 아동학대 사례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육교직원이 행한 학대의 경우 신체학대, 정서학대가 비슷한 비율로 자리 잡고 있었고, 유치원교직원에 의한 학대의 경우에는 방임이 40%로 가장 큰 비중이었다. 이는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방임이 증가하는 것으로도 일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Ⅱ-1-18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 분류)

단위: 건(%)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신체학대	133	(22.7)	28	(11.7)
정서학대	144	(24.5)	46	(19.2)
성학대	0	(0.0)	13	(5.4)
방임	76	(12.9)	96	(40.0)

(표 Ⅱ-1-18 계속)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중복학대	신체학대·정서학대	166	(28.3)	57	(23.8)
	신체학대·성학대	0	(0.0)	0	(0.0)
	신체학애·방임	9	(1.5)	0	(0.0)
	정서학대·성학대	0	(0.0)	0	(0.0)
	정서학대·방임	33	(5.6)	0	(0.0)
	성학대·방임	0	(0.0)	0	(0.0)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0	(0.0)	0	(0.0)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26	(4.4)	0	(0.0)
	신체학대·성학대·방임	0	(0.0)	0	(0.0)
	정서학대·성학대·방임	0	(0.0)	0	(0.0)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0	(0.0)	0	(0.0)
	소계	234	(39.9)	57	(23.8)
계		587	(100.0)	240	(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18.

다. 대응절차

1) 일반적인 대응 절차

아동학대의 일반적인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대응 절차는 예방 및 발견, 신고 및 수사, 사례 및 사후관리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이때 신고 및 수사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특례법')에 의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연계하여 현장 출동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아동학대처벌특례법 제11조). 사법처리절차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법원의 3 당사자가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후대응 절차에 있어 주요 당사자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체적인 업무 흐름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Ⅱ-1-1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흐름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진행도. http://www.korea1391.go.kr/new/page/work_system.php(2018. 8. 29. 인출)

한편 영유아 보육 교육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대응 절차는 다소 상이하다. 현재의 일반적인 아동학대 대응 절차에 의하면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당사자 간에 중재 내지는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제 3자적 기구가 부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바로 사법권을 발동하게 함에 따라 어린이집 내지는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경우,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교사와 아동, 기관장, 학부모의 피로감을 증폭시키고 사후 대응에 있어 감정적 소모를 증폭시키는 경향성을 가지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CCTV 관련

어린이집에서의 대응 절차는 우선 일반적인 아동학대 대응 절차와 동일하나 2015년 CCTV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CCTV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어린이집을 상대로 CCTV 열람 신청 후에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CCTV 열람 신청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하여 확인을 한 경우 거의 모든 경우가 아동학대로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CCTV의 경우 사전예방적 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학대 판명에 있어 아동과 교사에게 모두 사후대응에 있어 순기능을 하지만 CCTV 열람 과정에 있어 불필요한 요구 상황이 다수 도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CCTV 열람 건수가 2017년 기준 하루 평균 30건을 넘어섰지

만 열람 후 아동학대로 확정된 경우는 그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어린이집 CCTV 열람건수 및 아동학대 확정현황'을 보도한 자료[4]에 의하면 2017년 6월까지 전국 4만356개 어린이집의 CCTV 열람건수는 5,519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아동학대로 확정된 건은 41건으로 약 0.7%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 이전 2015년 2.6건(총 956건) 대비 11.7배, CCTV 설치의무화 연도인 2016년 16.2건(총 5946건)보다 1.8배 증가한 수치이다.[5] 반면, CCTV 열람 후 해당 건이 아동학대로 확정된 경우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 이전인 2015년은 19건(2.0%), 설치의무화 연도인 2016년 101건(1.7%), 2017년 41건(0.7%) 등으로 CCTV 설치의무화와 관계없이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린이집 CCTV 열람건수 대비 아동학대 확정 건수를 집계한 것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Ⅱ-1-19 어린이집 CCTV 열람 건수 대비 아동학대 확정 건수

단위: 건(%)

	어린이집 CCTV 열람건수	아동학대 확정 건수
2015	956(100.0)	19(2.0)
2016	5,946(100.0)	101(1.7)
2017. 1~ 6까지	5,519(100.0)	41(0.7)

자료: 뉴시스 홈페이지,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3_0000382059&cID=10818&pID=10800, (2018. 10. 23 인출),

지난해 6개월간 CCTV 열람 목적을 보면 아동학대 확인 목적은 931건으로 17% 정도였다. 나머지 4,588건(83%)은 안전사고 확인이 이유였다.

또한 CCTV 설치는 어린이집의 경우 의무화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를 1대도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전국에 365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의원이[6]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3만9천493개 중 CCTV가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집이 356개소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수치를 살펴보면, 경기 지역이 116개

4) http://news.donga.com/home/3/all/20180805/91377120/1 (2018. 10. 1. 인출).
5) http://news.donga.com/home/3/all/20180805/91377120/1 (2018. 10. 1. 인출).
6) https://www.yna.co.kr/view/AKR20180503037900065 (2018.10.1. 인출),

소로 CCTV가 1대도 없는 어린이집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이 105개소로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북 32개소, 경남 24개소, 부산 15개소, 전남 12개소, 광주·충남이 각 11개소, 강원9개소, 대전 8개소, 인천 6개소 순이었다. 이처럼 CCTV 설치 의무화라는 법적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어린이집은 제대로 CCTV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2015년 12월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설치·운영 위반이 총 717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유치원의 경우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2015년 1월 기준 전체 유치원 8,699개소 중 유치원 내 CCTV를 설치한 원은 8,173개소로 약 94.0%, 전체 교실 33,814 개 중 설치한 교실은 17,493개로 51.7%를 차지하였다. 설립유형별로는 국립유치원은 전체 교실 15개 중 4개, 사립유치원은 전체 24,066 교실 중 17,120 개로 71.1%의 설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공립유치원은 전체 9,733개 교실 중 369 교실에 설치하여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강은진 외, 2016).

또한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안)(2017)을 살펴보면 설치를 위해 일단 유치원 장과 학부모의 상호 동의를 전제하고 있다. 설치구역은 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며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은 유치원의 장에게 요청하며 정보 주체 이외는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관기관 경과 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장이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기관과 학부모 사이의 요구의 간극을 매우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Ⅱ-1-20 유치원 CCTV 운영 가이드라인(교육부, 2017)

설치 목적	열람기준	열람범위	유의사항
안전사고 확인	유아의 안전사고	해당 사고 발생 시간 분량	
	정보주체 간 분쟁이 안전사고(상해 등)로 이어진 경우	분쟁 발생 전 후	•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모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
아동학대 의심	학부모가 자기 자녀의 유치원 내 학대를 의심	의심되는 상황	• 학대 의심 개연성이 있다면 유치원에서도 즉시 수사기관(112)에 신고한 후 가급적 수사기관과 함께 열람할 것을 권장
	수사나 재판 목적	요청물량	

자료: 교육부(2017).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안). p 21-22.

표 Ⅱ-1-21 유치원 CCTV 운영 가이드라인: 아동학대 의심 시(교육부, 2017)

	구분	주체	내용
아동 학대 의심	열람 요청	• 법적 대리인(학부모), 교직원	• 유치원 원장과의 면담
	열람 타당성 검토	• 개인영상정보처리책임자	• 열람 요청한 정보주체의 영상이 1) 있는 경우 : 열람 가 통지 2) 없는 경우 : 열람 부 통지
	아동 학대 신고	• 유치원의 장	• 영상 확인 결과 학대 의심 개연성이 있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112)에 신고
	열람	• 정보주체, 개인영상정보처리책임자(또는 담당자), 필요시 수사기관	• 아동학대 신고한 경우라면 가급적 수사기관과 함께 열람 • 열람 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비밀 유지 의무 및 필요 시 원장과의 면담 안내
	열람 대장 작성	• 개인영상정보처리담당자	
	사후 조치	• 유치원의 장 또는 교직원	• 수사 협조 • 학대 혐의자 격리 조치 • 피해 아동 지원 협조

자료: 교육부(2017).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안). p 26.

이와 같은 현황을 종합하여 보면, CCTV 설치는 의무화 되었지만, 열람 시에 학부모와 어린이집 사이 주장하는 바, 확인하고자 하는 바에 상당한 간극이 있기에 객관적인 제 3자의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기타 현황 자료

한편, 보육교직원과 유치원교직원에 의한 학대의 경우 거의 모든 아동이 학대로 인한 사망을 제외하고는 원가정보호로 초기 조치를 행하게 된다.

표 Ⅱ-1-22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 조치 결과

단위: 건(%)

	원가정 보호		분리보호														사망		계	
			친족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병원 입원		소계					
보육 교직원	586	(99.8)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2)	587	(100.0)
유치원 교직원	238	(99.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0.8)	0	(0.0)	240	(100.0)
초·중·고 교직원	571	(99.1)	5	(0.9)	0	(0.0)	0	(0.0)	0	(0.0)	0	(0.0)	0	(0.0)	5	(0.9)	0	(0.0)	576	(100.0)

(표 Ⅱ-1-22 계속)

	원가정 보호		분리보호														사망		계	
			친족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병원 입원		소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13	(84.2)	3	(1.2)	0	(0.0)	0	(0.0)	16	(6.3)	21	(8.3)	0	(0.0)	40	(15.8)	0	(0.0)	253	(100.0)
기타 시설 종사자	27	(96.4)	0	(0.0)	0	(0.0)	0	(0.0)	0	(0.0)	1	(3.6)	0	(0.0)	1	(3.6)	0	(0.0)	28	(100.0)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2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100.0)
계	1,637	(97.1)	8	(0.5)	0	(0.0)	0	(0.0)	16	(0.9)	22	(1.3)	2	(0.1)	48	(2.8)	1	(0.1)	1,686	(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20.

학대 사건 발생 이후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을 하는 경우가 12.6%, 유치원 교직원에 대해서는 3.3%로 유치원 교직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육교직원보다 사법적 처리 절차로 최종 조치가 되는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판명 이후에는 사법절차가 개입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Ⅱ-1-23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

단위: 건(%)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계	
보육교직원	74	(12.6)	10	(1.7)	501	(85.3)	2	(0.3)	587	(100.0)
유치원교직원	8	(3.3)	15	(6.3)	217	(90.4)	0	(0.0)	240	(100.0)
초·중·고교 직원	223	(38.7)	80	(13.9)	268	(46.5)	5	(0.9)	576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6	(18.2)	4	(1.6)	203	(80.2)	0	(0,0)	253	(100.0)
기타시설 종사자	3	(10.7)	4	(14.3)	21	(75.0)	0	(0,0)	28	(100.0)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0	(0,0)	0	(0,0)	2	(100.0)	0	(0,0)	2	(100.0)
계	354	(21.0)	113	(6.7)	1,212	(71.9)	7	(0.4)	1,686	(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 220.

2 관련 법제도 분석

가. 아동복지법

1) 개관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불가인 자, 보호자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로 가정 내 학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3조 7호).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하고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동법 제5조).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 교육 ·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 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법 제22조 제1항).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22조 제2항)

또한 아동 학대 조기 발견체계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동법 제45조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

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피해 학생 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동법 제22조의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제1항). 더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동법 제26조 제2항).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 제3항). 그 외에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그 외의 교육 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의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우고 있다(동법 제26조의2)

동법 제27조의2 이하에는 아동학대 처리 절차와 관련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의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그 이외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주도하여 하게 된다(동법 제29조).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도도 규정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

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제29조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동법 제29조의3).[7] 영유아 보육·교

7) 1.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②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③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육기관은 이에 해당한다.

그 외에 아동학대 법률상담, 전담 의료기관 지정 등을 규정하여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동법 제29조의6 및 제29조의7).

동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사후 절차에 주로 개입하는 주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해당 기관에 아동 학대 관련 역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영유아 보육 교육 기관에 특화된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내에서는 법제도가 미비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동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 규정함과 동시에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와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의무자를 별도로 규정하여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동법 제10조). 한편,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되며(동법 제10조 제2항),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0조의2). 또한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로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삭제 〈2016. 5. 29.〉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 · 강사 · 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 · 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현장출동에 관한 규정도 있는데,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

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즉,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신고 접수 된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관계인 조사를, 경찰은 조사와 질문을 통한 수사를 진행하며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11조).

다.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CCTV 관련 규정이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 법 제15조의4 이하는 CCTV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하지만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동법 제15조의4 제1항).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동법 제15조의4 제2항).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동법 제15조의4 제3항).

동법 제15조의5 이하는 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에 대해 규정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 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도 안 된다. 즉, 목소리는 영상정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유이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동법 제15조의4 제4항).

해당 규정 위반 시에는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의5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제15조의5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54조 제2항). 또한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54조 제3항)

한편,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린이집 설치 운영이 불가능하고(동법 제16조, 제45조), 어린이집에 근무 자격 또한 없다(동법 제20조, 제47조). 원장의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될 수 있다(동법 제46조). 경우에 따라서는 원장 또는 보육

교사의 자격은 취소될 수 있다(동법 제48조). 그 외에 아동학대를 저지른 자 중 일정 요건 충족 시에는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받도록 한다(동법 제23조의3).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동법 제49조의3). 또한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를 행정기관이나 수사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동법 제42조의2),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육교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42조의2 제2항).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다른 여러 가지 사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25조 제4항).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동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라.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에는 어린이집과 같이 CCTV 설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규정은 상대적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CCTV 가 아동학대 예방을 반드시 전제한 것은 아니지만 유치원에서는 의무 사항이 아님에 따라 교사와 학부모간 설치 요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강은진·이정림·조혜주, 2015).

관할청은 유치원이 1)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4)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교직원 등

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5)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제1항).

또한 관할청은 유치원이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동법 제32조).

그 외에 유아교육법은 유아 인권보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다. 유치원의 설립자·경영자와 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동법 제21조의2 제1항). 교직원은 제21조에 따라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21조의2 제2항)

유아교육법 또한 영유아보육법과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과 달리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이 없고, 교원 자격 정지 및 자격 박탈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대적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한 규정이 미비함을 알 수 있다.

마. 소결

이상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제도의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사후 처리 절차로 크게 구분할 수 있었다.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학대 관련자 유관기관 취업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고 사후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한 사건 조사 및 처리, 경찰과 법원이 이행하는 사법 절차가 주로 규정되어 있다. 그 외에 아동학대 예방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CCTV의 설치와 열람, 보존 및 제공,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유아교육법은 관련 내용조차 부재하였다.

하지만 이상 유관 법률을 살펴본 결과, 사법 절차적 개입 이전에 제3자적 기관이 중심에서 당사자 간 의견 조율, 중재 등의 기능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제도적으로 공통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사후 처리 절차와 관련한 것으로 자격 정지 및 취소, 원 폐쇄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전 절차와 관련해서는 학대예방교육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부모와 교직원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제도적 내용은 부재하다.

표 Ⅱ-2-1 아동학대 유관 법률 분석 정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사전 예방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신고의무자 규정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사후 개입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한 사후 개입 절차 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사후 대응 절차 규정	보육교직원 자격 박탈 규정 어린이집 폐쇄 규정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 규정
기타	기타 아동 복지 관련 일반적인 내용	피해아동 조치 규정	- CCTV 설치 및 운영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예방 심의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2018. 9. 19 인출).

3 아동학대 관련 사업: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현재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대응은 그 주체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국가와 민간 기관이 혼재되어 있는 절차로 구성된다. 중앙부처의 경우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하고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관련 업무가 수행된다. 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발생 시 진행되는 모든 상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단계별로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 시 경찰과 검찰, 법원 등이 개입하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에 있어 일정 역할을 수행한다(김아름·유해미·박은영·장민선, 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학부모가 원할 경우 2015년 이후 설치가 의무화된 CCTV에 대한 확인이라는 절차가 별도로 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사용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는데 CCTV 설치 및 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가능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영상정보의 정의, 범위, 설치 구역, 사전 의견 수렴, 열람요청 등과 관련한 포괄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호법과 별개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가. 유관 법제도

현재 영유아 보육기관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제도는 전체적인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법제도라 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등에 대한 처벌 특례법, 그리고 영유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관련하여서는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나. 서울시와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어린이집 지원 사업 중 하나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 양자를 핵심을 하는 동 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상담전문요원을 별도로 배치하여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사업 총괄관리를 맡고 있는데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후 대응에 집중하거나 학부모와 교직원간 의사소통 구조 지원 등이 아닌 학대 예방에 포커스를 맞추어 보육교직원 상담 및 인권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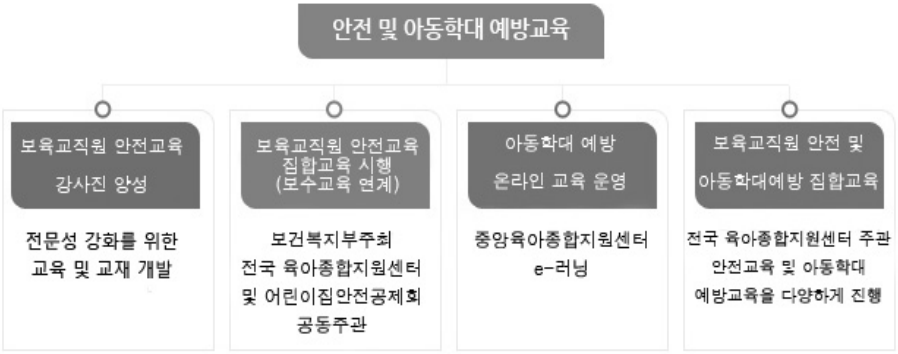
서울시는 아동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센터의 상담전문요원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영유아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켜 보육현장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3-1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 사업 관련

구분	구체적인 내용
'아동학대예방사업' 총괄 지원	-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 •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전문요원 대상 교육 및 슈퍼비전, 영유아인권심화교육 강사진 양성교육 및 재교육, 사업 실적 관리
'아동학대예방사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 '아동학대예방사업' 취지 및 목적에 부합되는 보육교직원 정신건강 지원, 바람직한 영유아 훈육 안내, 영유아인권교육 -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 1권.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이해하기 • 영유아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 • 영유아 이해하기 •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원리 이해하기 • 교사 내면의 힘 기르기 •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기 - 2권.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 실천하기 • 영유아를 존중하는 훈육이란? • 일과의 흐름에 따른 배려적 훈육 • 또래 갈등을 위한 중재적 훈육 • 방해·비참여 영유아를 위한 대안적 훈육 •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한 영유아 - 서울시 어린이집 인권상담전화 홍보물 •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영유아의 행동과 관련하여 영유아 발달 상 보일 수 있는 문제 행동을 학부모가 바르게 이해하고 부모의 적절한 반응 안내

자료: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아동학대예방사업이란. http://seoul.childcare.go.kr/lseoul/d2_30000/d2_35200/d2_35210.jsp(2018. 10. 22. 인출).

그림 Ⅱ-3-1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학대 예방 교육 내용



자료: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안전및아동학대예방.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30000/d1_60059/d1_30002.jsp(2018. 10. 18. 인출).

이러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사업과는 별개로 서울시는 아동복지센터 내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한

업무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서울시는 특히 예방에 주력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바탕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하였다.[8)]

우선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해서 교사들의 생활을 도와주고 있다. 2015년부터 계획하여 부모와 아동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서울시 내 센터에서 26명을 채용하여 관련 업무를 개시하였다. 애초에 시작은 아동 상담을 비롯한 아동 학대 관련 상담의 취지였으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보육교사 스트레스, 정신 상담의 기능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 처리 등에 대한 상담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아동학 위주의 전공자가 상담전문요원으로 배치되었으나 흐름상 성인의 정신건강 상담을 하여야 하는 모순된 구조로 변질되었다. 전국 18개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50%의 보조금이 투입되었고 보육교사 상담을 주로 진행하는 역할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상담, 보육 교사들의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가정과 아동, 보육교사 간 연계 상담이 아닌 보육교사 상담이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2015년 당시에는 더욱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님에 따라 전화 상담으로 교사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학대 의심 사례, 학대 여부 등 관련한 상황을 물어보고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려고 하였으나 성격이 변질되어 사업 수행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바로 신고 접수가 되어 학대 의심만 있어도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직접적인 경로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완충장치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던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 이후 완충장치의 역할을 실패하면서 인권 교육을 시작하면서 영유아 권리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가치관 확립에 주력하게 되었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지원하면서 전반적인 가치관 형성 및 확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량을 투입하였다.

센터장 면담 결과 어린이집 학대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입장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완충장치'의 조성과 그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

8) 이하 2018년 8월 16일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과의 면담 내용을 재구성함

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원 조직'이라는 인식이 강하므로 완충 장치의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측면을 가진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와 관련한 초기 절차를 담당하는데 신고 접수 이후에 바로 학대 상황을 전제하고 절차가 진행되기에 학부모 입장에서 본인의 감정에 대한 상담, 상황에 대한 감정적이지 않은 객관적 상황 인식 등에는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사 역시 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지만 현재 이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없기에 서로 의견 충돌 및 난항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초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질적 개입을 통해 어린이집과 학부모 간의 일종의 중재 역할을 시도한 바 있으나 현재에는 전혀 이러한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상담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일부 역할을 이양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학대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에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전반적인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대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후 절차로서 중간적 지위에서의 절충을 담당한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사전 예방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대의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대다수였으나 양적으로 계량화하는 매뉴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훈육 및 지도 방법, 아동 인권 존중의 측면을 강조하는 책자를 이미 제작 및 배포한 바 있다.

현재는 개별적인 컨설팅 및 상담을 통해 원장의 역량을 증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이는 학대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 저희가 셀프 컨설팅을 해요. 어린이 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곳을 대상으로 해요. 그곳이 간판만 갈았다고 비난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모일 수 있는 1-2주에 한번 모여서 문제를 나누게 해요. 원장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반응을 들어보면 우리 안에 답이 있는데, 자꾸 어디 가서 교육 들으려고 하고 하지만 적용이 안되다잖아요. 내부 안에서 힘을 기르고 그럴 수 있는, 저는 상담이나 뭘 만들어 내는 게 또 다른 교사의 업무를 늘리는 거라고 생각해요(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원장의 역량이 중요함은 기관의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 이루말할 수 없는 최우선의 과제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 사업

현재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를 받은 후 사례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현장출동 및 조사, 사례 판단, 피해아동 및 학대 행위자 조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력 및 정보 관리를 하는 기관으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지원을 비롯하여 아동학대 예방 위한 정책 방향 제시, 아동 학대 신고 전화 및 상담을 통한 사례 개입을 진행한다. 즉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후 개입을 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아래 절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9]는 아동복지법 제46조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아동보호기관장, 관계공무원 및 의료, 법률, 아동(사회)복지, 교육 분야의 전문가 각 1인 이상을 위촉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게 된다. 구체적인 위원회의 역할은 1)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범죄 사건 절차, 조치에 대한 자문, 2) 아동학대 사례 판단이 어렵고 자체 사례회의에서도 사례판단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자문, 3)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 개입방향 및 절차에 대한 자문, 4) 시·도지사·군수·구청장 및 경찰·사법기관이 의뢰하는 사례에 대한 자문, 5)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개입 및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 및 자, 6)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사후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자문, 7) 기타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한 논의를 주로 진행한다.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사례전문위원에게는 아동학대사례와 관련하여 전문가적 지식 및 자문(supervision)을 문서로 회신 받을 수 있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영유아보육 교육 기관 아동학대 대응의 현황, 한계, 개선 방안 등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10] 현재 기관에서 아동학대가 발생 시 교사와 원장들은 대응 절차에 대해 우왕좌왕 하거나 어떤 경우에

9) 전북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전문위원회의(http://namwon.goodneighbors.kr/gnnamwon/html/cd101111100/default, 2018. 10. 22 인출)를 참조하여 작성

10) 이하는 2018년8월 2일, 2018년 8월 9일 진행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정책팀장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심층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후 대응 매뉴얼에는 어떤 상황에서 신고하는지, 학대 위험 상황 발생 시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부터 시작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원장님이나 동료들이 행위들을 목격하거나 관찰했을 때, 주로 어떤 경우에 보고 신고하는지를 보고 조기발견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걸 참고해서 신고의무를 판단하고, 최소 선생님이 직접신고하거나 원장님이 직접신고 하는데, 부적절한을 관찰하거나 듣거나 하면 원장을 즉시 그걸 모니터링해서 전후사정봐서 학대가 의심될 때 즉시신고하고, 학대가 아니지만 위험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라는 절차적인 게 제시되면 좋겠죠. 그리고 실제 학대가 발생했다. 그러면 112에 신고하고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부모들에게 고지하고 그런 것들 메뉴얼을 담아주시면 원장님들이 도움이 될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 원장님들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조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바로 학대가 의심되면 그 선생님은 바로 직위정지 시켜서 행정실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해서 아이들과 분리시키는 절차 이후에 부모에게 연락해서 CCTV확보하는 이런 걸 잘하는 어린이 집이 있었어요.(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이하 동일)

원장의 초기 대응 절차 또한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선 학부모의 신뢰를 사는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CCTV 보존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CCTV를 현장가면 고장도 많이 나고 그러더라구요.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부모님들도 원장을 신뢰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원장이 우물쭈물하고 그러면 덮으려고 하나 그러고 부모들은 마음에 안 들면 경찰수사 같은 게 그러면 바로 언론에 넘겨요.

교사의 신고에 의한 보호도 두텁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학부모에 의한 신고 이외에도 교사가 신고를 할 경우 원장에 의하여, 또는 다른 동료 교사에 의하여 질책 받지 않는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 교사가 원장님이 하면 안 되는 게 교사가 신고했어요. 즉시신고니까 신고하고 후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아동학대 처벌이라든지 특례법에 이 교사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들도 넣어줘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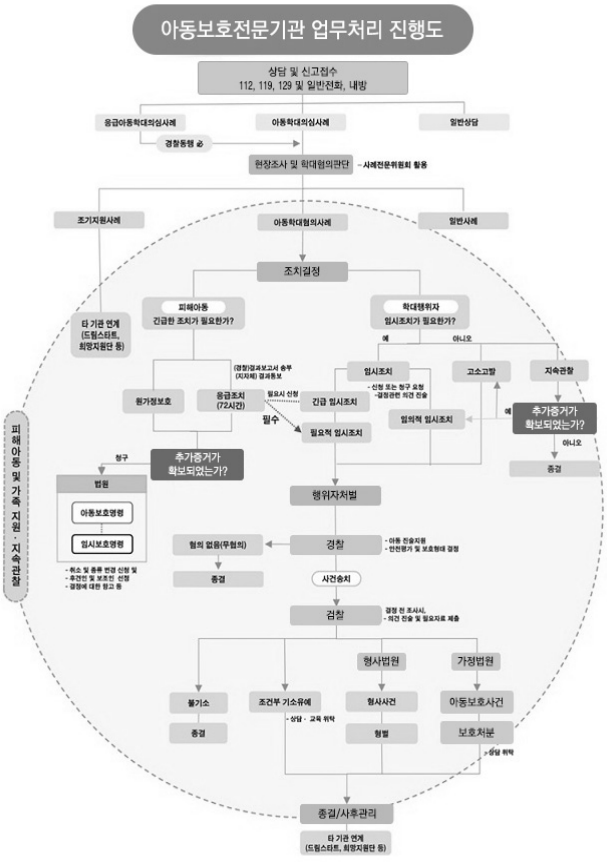
CCTV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기 발견, 또는 사후 대응에 있어 효과적이긴 하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에 따라 일방적인 CCTV에 대한 의존도 경계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사후 대응에 있어 교사들에 대한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곧 중재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 어린이집 선생님도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좋다고 해요. 부모님들에게 증거를 보여줄 수 있고. 그래요...그게 있어서 조심하기는 하지만 반대로 너무 감시당한다는 게

있어서 결국 CCTV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방적 측면 보다는 사후 대응에 증거나 조기발견의 효과는 있긴 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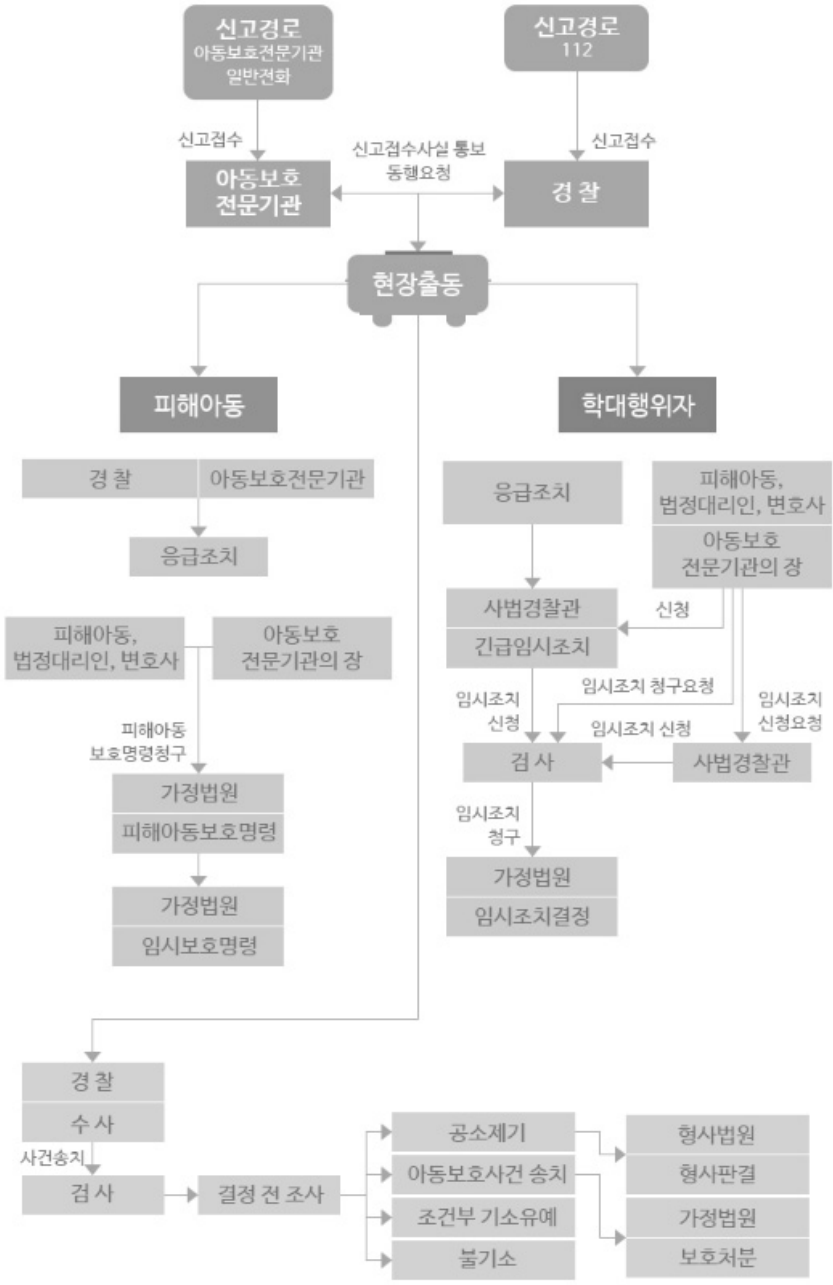
한편, 2018년 8월 5일 뉴시스에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을 제외한 전국 62개 기관에서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담당하는데 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6년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상담원 1인당 연간 추정업무시간은 약 3635시간으로 같은 기간 전체 노동자 평균 2052시간보다 1583시간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뉴시스 홈페이지,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3_0000382059, 2018. 10. 23 인출). 참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처리 진행과정은 다음 그림으로 도식화 한 바와 같다.

그림 Ⅱ-3-2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처리 진행도



자료: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학대아동 처리도.http://child.seoul.go.kr/archives/293(2018. 8. 29. 인출)

그림 Ⅱ-3-3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법절차 개입 경로도



자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사법처리 절차. http://www.korea1391.go.kr/new/page/work_system.php(2018. 8. 29. 인출)

4 아동학대 원인과 유형: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가. 아동학대의 원인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 학대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무상보육의 확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동의 생활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하도록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영유아 보육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문제가 증폭되는 데 일조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다차원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체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 부모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제도적인 부분에 의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의 경우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아 훈육과 혼동하여 아동학대를 무의식중에 야기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이경숙·박진아·최명희, 2015). 특히 아동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교사의 성향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데 처벌이 습관화 되어 있거나 일반적인 교육 방식으로 자리잡은 교사의 경우 학대에 이를 확률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Scott-little & Holloway, 1994).

최근 들어 아동 권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집단 활동에 대한 완성도 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김영은, 이희선, 2016). 이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집단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과업 지향적인 전문성 유도가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본인의 신념은 부적절한 훈육에서 나아가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위험성을 가진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교사의 엄격성, 훈육방법의 강제성은 아동의 행동에 대한 교정보다는 아동에 대한 학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가 존재한다(김호현, 2016). 더욱이 교사의 자아존중감, 직무스트레스가 아동학대 인식을 형성한다고 하였고(김희영, 윤현석, 2016) 직무스트레스에는 원장의 지도력과 학부모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김희영, 윤현석, 2016).

한편,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를 채용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원장의 조직관리 능력은 교사의 질과 근무 환경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아동 학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육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교사와 원장 간의 관계성 형성 등은 보육의 질에서 나아가 아동학대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유계숙, 양수진, 조선아, 2016). 또한 어린이집의 조직문화는 아동학대의 유발, 발견, 대응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원장의 역할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최혜영, 2015).

원장과 다른 측면에서 학부모 역시 교사의 근무 환경을 좌우하는 큰 요인이 된다. 학부모의 부적절한 기관 운영에의 개입, 교사 지도 방법에 대한 권유, 불신 등은 교사의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국 보육 질의 약화로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유계숙 외, 2016; 최혜영, 2015). 부모와 교사간의 신뢰관계는 보육의 질 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함과 동시에 교사의 근무 환경을 결정짓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보육교직원 양성과정, 보수체계 등은 아동과의 상호 작용, 보육 과정 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최혜영, 2015). 더욱이 교사에 대한 처우는 교사의 근로 여건을 결정짓고 아동에게 행하게 되는 보육서비스와 직결된다고 보았을 때 관련 제도의 내용은 아동학대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학대의 정의, 학대와 훈육의 경계, 훈육에 대한 신념 등은 아동학대의 내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이경숙 외, 2015). 처벌 기준 수위, 처벌 범위 및 형량, 학대에 대한 법적 정의의 모호함 역시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요인이며 이로서 학대에 대한 인식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이천현, 2014).

특히 유치원 아동학대를 연구 대상으로 한 최은영(2016)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부모-교사 간 신뢰 형성 부족, 교사의 과중한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환경 등이 원인이 된다고 파악하고 있기도 하였다.

이렇듯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 발생이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영유아 보육·교육의 과정에서 훈육이라는 것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근무 환경과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문화 등은 종사자들의 근로의 질을 결정지음과 동시에 이는 곧 보육의 질을 결정짓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표 Ⅱ-4-1 아동학대 원인

분류	내용
교사원인	- 근로 환경 - 자격 조건 - 인성 및 자질
원장 원인	- 조직문화 조성 - 채용 기준 - 관리 소홀
부모 요인	- 교사에 대한 불신 - 과도한 개입
제도적 요인	- 보육·교육 근로 환경 조성에 있어 정책적 문제

주: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한 것임

나.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유형은 법률상으로 법정화된 유형과 연구를 통해 밝혀진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법률상으로 아동학대의 유형은 아동복지법, 형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명시되어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형법과 아동복지법의 항목을 인용하고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아동복지법은 제17조에 아동학대의 정의를 나열하고 있는데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성적 및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본인의 보호 감독 하에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행위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이다. 종합하면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아동학대의 종류는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아동학대의 유형은 좀 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법제도상 범주에 속하는 아동학대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개괄적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데 용이하지만, 실제 보육직원들과 교사들에게 적용함에 있어 한계를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종사자들 인식 개선 혹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활용도를 염두에 둘 때 연구를 통해 실제적으로 밝혀진 아동 학대의 유형을 파악할 것이 요구된다.

김기현 외(2013) 의 연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분석을 하였는데 50% 이상이 신체학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이 말을 듣지 않거나 친구와 싸웠다는 이

유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정서학대로는 인격 무시 항위(33.3%), 공포 조성행위(31.6%) 등이 있었다.

장화정 외(2016) 의 연구는 유치원 아동학대 현황을 조사한 바 있는데 연구 결과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를 제외하고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어린이집과 그 유형이 차이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선아, 이완정, 장화정, 김경희와 김미경(2017)의 연구 역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하여 학대 유형을 파악한 바 있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사례 유형은 법적인 기준을 대입해볼 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가 혼재되어 있는 중복학대가 43.6%로 가장 높았고, 신체 학대 27.1%, 정서학대 21.7%, 방임 7.6%를 차지하였다.

동 연구는 2015년 어린이집 학대 사례를 자료로 하여 학대 시 피해아동의 행위 유형과 보육교직원의 학대 행위 유형을 함께 파악하여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학대 피해아동은 1)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2) 식사 습관, 3) 교사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는 아동, 4) 또래와의 갈등 유발, 5) 단순한 실수 등의 행위 유형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 교직원의 학대 행위는 1) 꿀밤, 2) 아동 끼리 머리 부딪히기, 3) 단순 때리기, 4) 꼬집기, 5) 밀치기, 6) 팔 다리 등을 잡아당기기, 7) 방치하기, 8)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배치하기, 9) 아동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 등으로 분석되었다.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법적인 범주 내에서 아동학대를 파악한 후 각 해당 범주에 속하는 구체적인 유형을 도출할 수 있다. 교사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으로 보육·교육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할 때 부적절한 신체적 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방임 또한 해당 유형 중 상당수에 이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4-2 아동학대 유형

법적 유형	어린이집 실제 사례 해당행위 유형
신체적 학대	- 부종 - 찰과상 - 골절 등

(표 Ⅱ-4-2 계속)

법적 유형	어린이집 실제 사례 해당행위 유형
정서적 학대	- 무서움 호소 - 두려움 호소
성적 학대	- 추행
방임	- 배식 지연 - 행위에서 분리 - 별도의 공간에서 타임아웃

주: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한 것임

5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 발전 과정

가.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11)]

정부는 2014년 2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 발견·보호 종합대책(안)'을 심의 및 확정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4). 해당 대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국한된 영유아 기관 관련 아동학대에 집중된 대책은 아니나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동 대책은 일반적인 아동학대의 원인 파악,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보호시설 운영 현황과 그 간의 제도 개선 성과 및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방향성을 강구하였다.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사전직무교육 의무화, 원장 자격 취득 요건 강화,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아동학대 발생 시 시설 운영정지·폐쇄 근거 마련 및 평가인증 취소, 학대발생시 형사고소·고발 의무화 도입,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자격취소·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실시 및 어린이집 명단과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 등의 법 위반 이력과 명단 공표, 보육시설 내 안전 및 위생관리 불량, 아동학대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 시행 등의 성과를 제시하였다.

11) 해당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 발견·보호 종합대책(안)'(관계부처 합동, 2014) 자료를 요약 정리한 것임

하지만 신고의무자 교육의 범위가 미흡, 가해자 처벌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해자 사후관리 미흡, 처벌 수위의 낮음 등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이에 아동인권교육 및 국민인식 개선을 통한 예방 및 재발 방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와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을 통한 조기발견체계 활성화, 피해아동 지원 등의 사후관리 강화 등을 할 것을 주문하였다. 영유아 기관 내 학대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장에게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 요령에 대한 리플릿을 보급한 후 책상 등에 비치하길 권고하였고 신고의무자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아동학대 간이 점검표를 보급하였다. 이때 아동의 건강과 위생상태를 면밀히 관찰 시에 학대 의심 사례 발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자격취득 및 보수 교육에서 아동복지법 상 제시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 지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교사와 아동, 부모의 다층적 아동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신고의 범위 확대, 신고의무자의 의무 강화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지자체, 시설운영회, 아동보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모니터링단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학대 위험 가정을 발굴하여 학대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동 대책은 신고의무 강화,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아동학대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내에서의 학대가 주목되지 못한 사회적 현황으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의 학대를 기관에서 발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관 내에서의 학대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는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2015년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안[12)]

보건복지부는 인천 연구수와 부평구 민간어린이집, 울산 북구 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으로 말미암은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12)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안'(보건복지부, 2015) 자료 참조하여 작성함

2015년 1월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대책 안은 장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대책을 모두 포괄한다.

우선,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집 등 시설 내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 한 달 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동학대자 처벌 강화, CCTV 의무화를 발표하였다. 처벌과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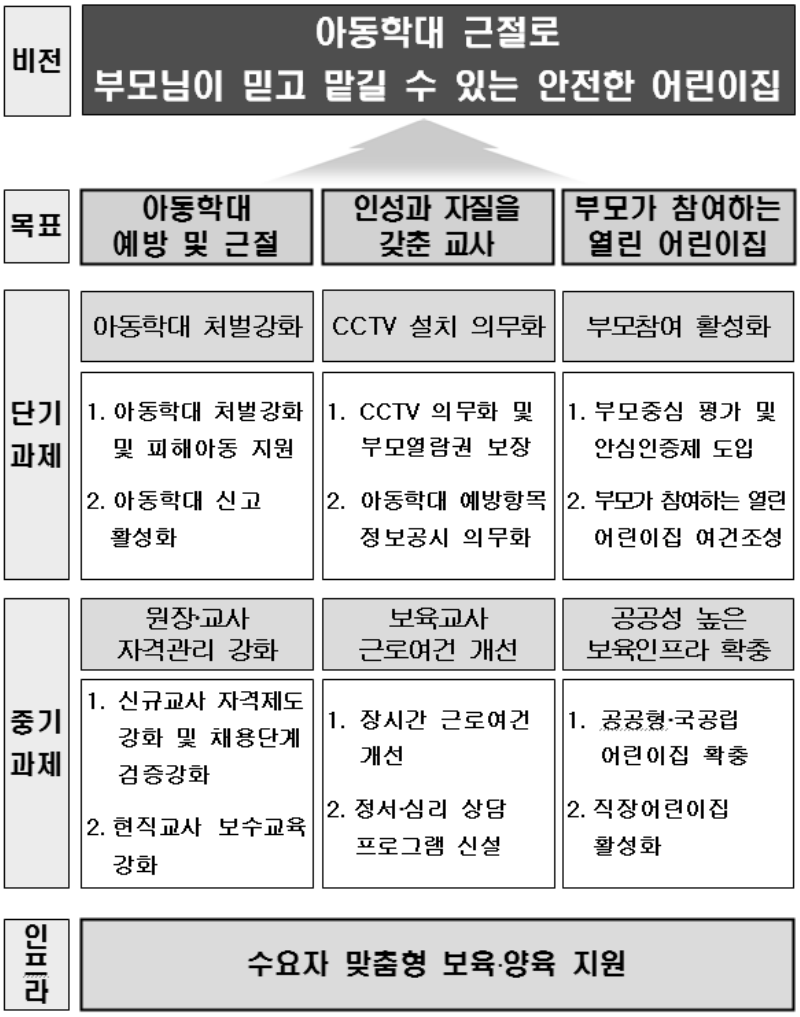
다음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 근로여건 개선, 어린이집 부모 참여 강화, 공공성을 확보한 보육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가정양육 지원 강화로 시설 보육과 가정 양육 간에 선택이 원활하도록 하였다.

특히 해당 대책은 부모와 전문가, 원장,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모 참여 등으로 어린이집 개방, 부모 교육, 실습위주 양성제도 도입, 공신력있는 교사 인성검사, 보조교사 채용 인력 확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보육 환경 개선, 부모와 교사간 네트워크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우선 아동학대 행위 처벌을 강화하여 한 번의 학대행위로도 즉시 기관 폐쇄를 할 수 있도록 one strike-out제를 도입하였고, 아동학대행위자인 교사와 원장은 영구히 업계에서 퇴출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운영정지, 폐쇄,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가해자의 이름과 어린이집 공개, 피해아동 전원조치 및 심리치료 지원,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예방 항목 정보 공시화, 수요자 중심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도입으로 부모참여 활성화, 부모안심인증제 도입과 부모모니터링단 활용, 영유아용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보급, 신규교사 자격제도 및 채용단계 검증 강화,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정서 및 심리 상담프로그램 신설[13] 등을 실시하였다. 더욱 장기적으로는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 강화, 수요자 맞춤형 보육 양육 지원으로 기관 선택 시 부모의 선택 강화 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련 내용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13) 해당 해당으로 인하여 상담 전담요원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집에 직접 찾아가거나 정신건강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힐링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사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였다.

그림 Ⅱ-5-1 2015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자료: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안. 보건복지부, p. 3.

다. 2016년 아동학대 근절대책[14)]

2016년 3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해당 대책은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 및 조기발견체계의 구축, 사후지원을 위해서는

14) '아동학대 방지 대책(안)'(관계부처 합동, 2016)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보호지원 및 재학대 방지, 신속 대응 및 처벌 강화 등을 세부적으로 시행한다.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아동권리 및 안전교육 강화, 지역사회 감시,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 전사회적 인식개선과 홍보, 정부합동 장기결석 아동 발굴시스템 구축,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가동을 통해 위험아동 발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후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재학대 방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적 가정방문, 가족 기능 회복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의 동행 출동, 가해자 처벌 및 교육 강화, 현장대응 인프라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해당 대책은 2017년까지의 아동학대 근절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에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이전 2014년도 대책과 마찬가지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내에서의 학대를 예방하고 사후에 조기 대응하기에는 그 대책이 미흡하였다는 것과 장기결석 아동을 포함한 가정 내 학대에 주목한 결과 기관에서의 대응책은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

라. 교육부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정부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 폭력과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원장 또는 설립 및 경영자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관할청이 유치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였다. 더불어 유치원의 설립자, 경영자와 원장의 유아 인권보장 의무, 체벌금지 조항 등을 신설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a).

또한 2016년에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였고,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를 개발 및 보급하였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교육행위 중 아동학대의 위험을 내포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b). 그 외에도 아동학대를 포함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내용 인지, 사후 대처 방안 등을 교직원들에게 상세히 전달하고 숙지시키는 노력을

강화하였다.

앞서 2015년에는 유치원 내 CCTV 설치를 확대하였는데 교육부는 희망 기관에 한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설치를 유도하고 이러한 지원은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율이 90% 이상이 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연합뉴스, 2016). 이러한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설치 유도는 유치원 평가 인증에 이를 반영함으로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측면도 가진다.

마. 2018년 아동학대 근절 대책

1) 2018년 3월의 아동학대 근절대책[15)]

해당 대책은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맞추어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종합지원체계 구축, 위기 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등의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7년까지 꾸준히 아동학대 인식 개선, 대책 강화 등을 시도하였으나 계속 아동학대 발견율은 상승중임을 지적하면서 여전히 가정 내 학대 미발견 등의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취약 및 위기가정 부모와 아동들에 대한 부모 교육이 부족하여 사전 예방체계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미취학 영유아들의 가정 내 학대 감시체계가 약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 감시 체계를 도입하여 개선하기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민간위탁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재학대 등의 문제를 통해 아동보호체계의 공공화와 사후보호 관리 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동 대책의 특징은 아동 권리를 중심으로 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확산에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 및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해당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대책 이후에도 영유아보육 기관 내 아동 학대는 여전히 발생하고

15)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8)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

있으므로 해당 대책이 거시적이라는 측면에서는 공감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개입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해당 대책 발표 이후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사고가 이슈화 되면서 더욱 그 한계가 부각되었다.

2) 2018년 7월의 아동학대 근절대책[16)]

2018년 7월에는 다시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 및 학대가 문제되면서 기존의 아동 학대 범주에서 영유아보육 기관 내의 아동학대의 범위, 유형 등을 새롭게 조명 받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차량에 탑승한 아동의 하차를 간과하여 7시간동안 폭염에 방치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래 발표된 대책으로 학대와 안전사고의 범주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우선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기계적 방식 또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점검 확인하는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확인시스템을 도입하여 즉각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번 통학차량 내 사고는 관련 안전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 시 안전규정의 실제 준수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사람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근절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을 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차량 내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즉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2018년 말까지 도입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전체 이용 아동에 대한 안심 등·하원 서비스제공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법제도 개선을 제시하였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실시간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을 지침과 행정지도로 실시한 후 관련 시스템 도입을 법적으로도 의무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필요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 원장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영유아 안전 및 학대사고 발생 시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을 상향 조하고 아동학대에 국한하였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 조치를 강화하도

16)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보건복지부, 2018) 발표자료 참조하여 작성함

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예방교육도 강화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였다. 현재는 원장과 차량 운전자에 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하고 또 아동 학대 관련된 예방교육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던 보육교사의 경우에 미종사한 기간별로 조기교육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도 다시금 확인하였다. 보육교사 개인의 전문성 부족 및 일탈 문제와 더불어서 보육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야기된다는 측면에서 서류 간소화, 행정업무 자동화 등을 통해서 보육교사들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1명의 보육교사가 장시간 아동을 돌보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의지를 발표하였다.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말미암은 동 대책은 안전사고도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의 논쟁을 불러 일으켜왔다. 동시에 기존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의 문제가 조속히 시행될 것을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Ⅱ-5-1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연도별 변화 요약

	2015년	2016년	2018년 3월	2018년 7월
주요 내용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신고의무자 의무 강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가정내 양육 지원 강화	가정 내 학대를 기관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 의무 강화	e행복이음시스템 구축, 보육교사 처우 개선	슬리핑차일드체크시스템 도입, 보육교사 처우 개선
특이점	어린이집 사건 이슈화 이후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대응에 대해 언급	장기결석 아동 감시 체제 제시	아동학대 조기발견시스템, 아동보호종합체계의 공공성 확보 제시	어린이집 차량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로 학대의 범주에 차량 안전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김

주: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한 것임

6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및 조기발견체계 선행연구 분석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매뉴얼이 다수 발간되었으며, 특히 2016년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배포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아동 학대 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이 2015년 이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일 시점을 바탕으로 관련 매뉴얼을 검토하기로 한다. 분석 대상인 매뉴얼은 총 9개이고,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법무부, 교육청, 아동 관련 학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연구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련 내용은 아동학대 관련 법 규정 소개, 사전 예방 절차 소개, 사후 대응 절차 소개 등이고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발생 시에 대응 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가정 내 아동학대 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에 대처하여야 할 사항들을 담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발간된 영유아 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매뉴얼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뉴얼 대상은 부모와 교직원으로 구분된다. 부모에게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길 수 있게 하는 내용과 교직원에게 아동학대에 대해 설명하고 발생 시에 대처 방안, 아동 학대 발견 방법 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둘째, 매뉴얼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개괄, 사후 대응 절차, 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 징후 포착을 위한 체크리스트 등을 담고 있다.

셋째, 훈육 방법에 대한 지도와 기관에서의 교사 대응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혼용되어 발간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각종 한계가 도출되었다.

첫째,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부재하였다. 2015년 이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이슈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과 교사들에게 어떻게 학대를 예방하여야 하는지, 부모와의 소통 구조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원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학대의 법적 정의에 대한 교육의 부족이 아동 학대의 주요 원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중복적 설명

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학대 예방 교육 자료의 가치는 있으나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매뉴얼이라고 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대 이후의 사후 대응 절차에 대하여 대부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적 절차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학대 발생 이전에 교직원들에게 어떠한 사항을 숙지하여 적용할 때 학대가 미연에 예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은 제시되고 있지 않아 현장 수용성이 상당히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영유아와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고려는 거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기관에서의 보육과 교육이 가정과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간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사후 대응 절차와 관련하여 현재 현장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매뉴얼 역시 부재함에 따라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발생을 방지하거나 사후에 대응하는데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 현재 유관 기관들이 인지하고 있는 소통의 부재 및 업무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대응 절차를 새롭게 제시한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의미이다.

이상 현재까지 발간된 주요 매뉴얼들이 담고 있는 관련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Ⅱ-6-1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연번	제목	발간년도	발간처	내용구성	특징
1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2015	경기도교육청	1. 아동학대의 이해 2. 아동학대 피해학생 보호 조치 3.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의 역할 4.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근절 5. 부록 가정폭력, 아동학대 관련 교육청 연락처 경기도 내 관련기관 현황 관련 공문(예시) 아동학대사례모음 관련 법률	아동학대 관련 정의 및 유형부터 피해 학생 보호에 대한 사항, 신고자 의무와 역할,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 신고 관련 의무 불이행 처벌 사례 및 신고의무자의 유관기관 협력 사례를 제시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음
2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2016	교육부, 보건복지부	- 제작배경 -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조기발견 및 무단결석 관리·대응 매뉴얼 기본원칙 평상시 관리·대응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관리·대응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대응 퇴학 아동에 대한 관리·대응 - 각종 안내문 및 양식 - 부록 관련 법령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피해아동보호절차(아동학대사례 개입과정)	평택아동학대사건(유치원을 다닐 때 가정내 방임 등 아동학대가 의심됐으나 제도적 한계와 현실적 여건 등으로 적극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한 것임 따라서 가정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무단결석시 관리·대응 매뉴얼이 주 내용임

(표 Ⅱ-6-1 계속)

연번	제목	발간년도	발간처	내용구성	특징
3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부모 안내서	2015	중앙아동보호전 문기관	1. 자녀에게 이러한 징후가 발견되면 아동학대를 의심해보세요 2. 학대가 의심될 때는 자녀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3. 아동학대 의심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해보세요 4. 그 밖에도 다음 내용을 유의하여 자녀와 이야기해주세요	부모에게 아동학대 징후가 의심되는 사례를 알려주고,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신고방법 및 신고 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음 아동학대 의심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의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조기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4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조치 매뉴얼 (어린이집용)	2016	보건복지부	- 조치 흐름도 - 단계별 조치요령 - 기타사항 붙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락처 붙임: 올바른 훈육방법 교육자료(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붙임: 보육교직원용 자가체크리스트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조치해야 할 사항을 흐름도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구현하였으며 조치 사항을 단계별로 구현함. 보육교직원용 자가체크리스트를 삽입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민감도를 체크할 수 있게 함
5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2016	심향영육아원	- 시설현황 - 아동학대 예방 시책 아동학대 예방 교육자료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아동학대 예방 관련규정 아동학대 예방 참고자료	사회복지법인 심향영육아원에서 제작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문제점부터 조기발견, 보호방안,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의 매뉴얼 및 예산까지 촘촘하게 작성되어 있음.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참고자료로 아동인권 자체점검표와 아동 인권평가 규정 및 지표 등이 실려있음
6	2017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2017	서울지방 변호사회	아동과 아동학대의 이해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제도 수사단계 재판단계에서의 절차 아동학대 유관기관 특수한 경우의 아동	아동학대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가 겪게 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기본적인 법적 절차와 피해아동의 치료 및 향후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위한 정보를 담고 있어 아동학대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및 관련 공익단체에게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표 Ⅱ-6-1 계속)

연번	제목	발간년도	발간처	내용구성	특징
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안내서	2017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대, 사랑의 열매	-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 아이지킴콜112 모바일 앱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 신고요령 -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간결하게 설명되어 있어, 한눈에 보기 쉬움
8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개정판 2017. 12)	2017	경기도교육청	- 아동학대의 이해 - 아동학대 발견 및 초기 대응 -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 부록 : 아동학대 관련 교육청 연락처 Wee프로젝트 현황 경기도 내 관련기관 현황 관련 공문 및 참고자료 아동학대 예방 교육 자료	경기도교육청이 만든 자료로, 초등학생 등 학교를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제작된 매뉴얼임.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중학교 미입학 학생, 무단결석 학생, 전출 후 미전입 학생, 취학(입학)유예 신청 학생에 대한 대응 등이 상세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발견 시 버려야 할 편견 등을 제시하고 있음
9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법(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2017	한국법교육센터	Ⅰ. 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 1. 아동학대란 무엇인가요? 2. 아이들을 지켜 주세요! Ⅱ. 당신은 신고의무자입니다 1. 신고의무제도가 무엇인가요? 2. 신고자는 보호됩니다 Ⅲ. 이럴 때, 신고해야 합니다 1.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사례 및 오해와 편견사항을 제시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함 특히 신고 절차와 아동학대 처리 절차, 사건의 처리절차 및 지원을 법적 관점에서 자세히 풀어나가고 있음

(표 Ⅱ-6-1 계속)

연번	제목	발간년도	발간처	내용구성	특징
				2. 신체학대 살펴보기 3. 정서학대 살펴보기 4. 성학대 살펴보기 5. 유기 · 방임 살펴보기 Ⅳ. 이렇게,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Ⅴ.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아동학대 처리절차 업무진행도 2. 초동조치 3.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절차 4. 학대행위자는 어떻게 되나요? Ⅵ. 피해아동을 지원합니다 1. 피해아동보호명령 2. 법률 및 의사소통 지원 3. 수사 · 공판 절차에서의 피해아동보호 4. 안전 및 심리적 지원 5. 범죄피해자 지원	
10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지침 및 매뉴얼: 사례·판례 원인 및 대응방안	2017	한국영유아보육 학회	1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지침과 매뉴얼 아동학대 예방지침의 필요성과 목적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황 및 발생요인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법과 적용 예 아동학대 예방지침과 매뉴얼의 기본원칙과 내용	어린이집 학대 사례와 판례를 각 영역별, 행동별로 제시하고, 그에대한 원인 분석, 문제점 제시 및 예방 대책을 제시함. 또한 소송사례를 함께 제시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

(표 Ⅱ-6-1 계속)

연번	제목	발간년도	발간처	내용구성	특징
				2부. 어린이집 학대사례: 사례·판례를 통해 본 원인과 대응방안 학대사례: 일상생활 돌봄 영역 학대사례: 행동지도 영역 어린이집 소송사례: 항소 및 행정소송 등	

주: 표 안에 기술된 각 자료 내용을 요약함

자료: 경기도교육청(2015).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보건복지부(2016).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부모 안내서.
보건복지부(2016).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조치 매뉴얼(어린이집용).
심향영육아원(2016).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서울지방변호사회(2017). 2017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 기관, 현대, 사랑의 열매(201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안내서.
경기도교육청(2016).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개정판 2016. 12)
한국법교육센터(2017).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법(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한국영유아보육학회(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지침 및 매뉴얼: 사례·판례 원인 및 대응방안.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Ⅲ

교사 및 학부모 인터뷰 조사 결과: 아동학대 관련 인식 및 요구사항

1. 인터뷰 개요
2. 원장 및 교사 조사 결과
3. 학부모 조사 결과
4. 소결

Ⅲ. 교사 및 학부모 인터뷰 조사 결과: 아동학대 관련 인식 및 요구사항

1 인터뷰 개요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에서의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함에 따라 더 큰 피해 및 2차적 피해 상황으로의 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후 대응에 있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내용을 동 매뉴얼에 함께 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동 기관 종사 교사,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시행하였다.

해당 인터뷰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매뉴얼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 아동학대 관련 정책적 개선 요구 등이 공통 문항으로 들어가고, 각 군별로 특성화된 질문을 하게 된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개방형으로 진행하며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되 포화 상태에 이른 내용들을 구조화하여 결과를 제시한다.

□ 심층면담 1: 어린이집 원장 대상

기관 아동학대와 대응매뉴얼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한다.

심층면담 내용은 1) 아동학대에 대한 주변의 관심과 반응, 2)아동학대 사전 대응, 사후 대응 절차 및 방법 3) 아동학대 매뉴얼 및 조기발견체계 관련, 4) CCTV에 관한 의견 등이다.

□ 심층면담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대상

직접 아동을 보육·교육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한다.

심층면담 내용은 1)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및 원인, 2) 아동학대에 대한 주변 사례, 3) 아동학대 관련법에 대한 인지 정도 및 관련 교육, 4) CCTV에 관한 의견 등이다.

□ 심층면담 3: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대상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한다.

심층면담 내용은 1)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리절차,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현황 및 특징, 3)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이유, 4) 기존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다.

□ 심층면담 4: 영유아 부모 대상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1) 훈육과 학대의 차이, 2) 기관에 대한 훈육의 기대 정도,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법, 4) 기관에 아동학대의 원인, 개선 사항, 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의 역할, 6) 사후 대응 절차 관련 애로사항과 CCTV관련 사항 등이다.

교사 심층면접 대상자는 서울·경기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경력은 3년부터 17년까지 다양하였고 담당아동 연령 또한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다양하였다. 성별은 전부 여성이었으며 연령대 역시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였다. 대상자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Ⅲ-1-1 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사항(교사)

번호	근무 지역	기관 유형	경력	학대 교육 이수 횟수	담당 아동 연령	하루 근무 시간	아동과 지내는 시간	아동 학대 관련법 인지 여부	학대 종류 인지 여부	학력	전공	성별	연령
01	서울	가정	6년	수시로	만2세	8시간	8시간	○	○			여	37
02	서울	가정	3년	수시로	만1세	8시간	7시간	○	○			여	45

(표 Ⅲ-1-1 계속)

번호	근무 지역	기관 유형	경력	학대 교육 이수 횟수	담당 아동 연령	하루 근무 시간	아동과 지내는 시간	아동 학대 관련법 인지 여부	학대 종류 인지 여부	학력	전공	성별	연령
03	서울	가정	6년	수시로	만2세	8시간	7시간	○	○			여	50
04	양천구	국공립	21년	매달 자체 교육, 1회 이상 집합 교육	만2세	9시간	-	○	○	대졸	유아 교육학	여	45
05	관악구	국공립	11년	집단 교육 2회, 사이버 1회	만1세	8시간	7-8시간	○	○	대졸	아동 가족 복지 학과	여	33
06	중랑구	국공립	17년	2회, 월1회 자율 장학	주임교사	9시간	5시간	○	○	대학원 이상	유아 교육	여	37
07	서초구	국공립	5년 11개월	매월 1회	만1세	8시간	7시간	X	○	대졸	아동 보육과	여	25
08	중구	국공립	7년	1번	만0세	8시간	7시간	○	○	대졸	아동 가족 복지 학과	여	30
09	중구	국공립	11년 10개월	1회	만1세	8시간	7시간	○	○	대졸	유아 교육과	여	41
10	중구	국공립	6년	1-2회	만2세	8-9	7시간	○	○	대졸	아동 학과	여	27
11	중구	국공립	5년	1회	만4,5세	8시간	8시간	○	○	대졸	아동 복지 학과	여	40
12	중구	국공립	8년	2-3회	만1세	8시간	6-7	○	○	대학원 이상	중국어 교육학	여	47
13	중구	국공립	6년	1-2	만3세	9시간	8-9	○	○	대졸	상담 심리, 보육	여	32
14	경기도 광주	사립	9년	1회 이상	만4세	9시간 30분 이상	6.5시간	○	○	대졸	유아 교육 학과	여	34
15	경기도 광주	사립	5년	1회 이상	만3세	9시간 30분 이상	6.5시간	○	○	대졸	유아 교육 학과	여	27
16	경기도 광주	사립	1년	1회 이상	만4세	9시간 30분	6.5시간	○	○	대학원 이상	유아 교육 학과	여	26

(표 Ⅲ-1-1 계속)

번호	근무 지역	기관 유형	경력	학대 교육 이수 횟수	담당 아동 연령	하루 근무 시간	아동과 지내는 시간	아동 학대 관련법 인지 여부	학대 종류 인지 여부	학력	전공	성별	연령
17	경기도 광주	사립	1년	1회	만3세	9시간 30분	7시간	△	△	대졸	유아 교육 학과	여	24
18	서초구	사립	8년	1회	만3세	9시간 30분	5시간	○	○	대졸	유아 교육 학과	여	31
19	서초구	사립	8년	1회	만4세	9시간 30분	5시간	○	○	대졸	유아 교육 학과	여	32
20	서초구	사립	4년	1회	만5세	9시간 30분	5시간	○	○	대졸	유아 교육 학과	여	27

원장 또한 서울·경기권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보육교사 경력까지 합산한 원장 경력을 집계한 결과 최소 9년 6월에서 최대 32년까지 범주가 다양하였다. 학력은 모두 대학원이상이었으며 연령대는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교사와 유사하였고 조직문화, 교사 채용, 조직 통제 및 관리, 아동학대 케이스 관리 등에 대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표 Ⅲ-1-2 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사항(원장)

번호	근무 지역	기관 유형	경력	학대 교육 이수 횟수	교사 심리 지원 여부	학채용 과정 인적성 검사 활용 여부	아동 학대 매뉴얼 비치 및 활용 여부	아동 학대 관련법 인지 여부	학대 종류 인지 여부	학력	전공	성별	연령
01	성북구	국공립	32년	1회	○	○	○	○	○	대학원 이상		여	56
02	송파구	가정	20년	1회	○	○	○	○	○	대학원 이상	국가 재난 안전 학과	여	58
03	경기 안성	가정	15년	1회	○	○	○	○	○	대학원 이상	아동학	여	48

(표 Ⅲ-1-2 계속)

번호	근무 지역	기관 유형	경력	학대 교육 이수 횟수	교사 심리 지원 여부	학채용 과정 인적성 검사 활용 여부	아동 학대 매뉴얼 비치 및 활용 여부	아동 학대 관련법 인지 여부	학대 종류 인지 여부	학력	전공	성별	연령
04	서초구	국공립	16년	13회	○	-	○	○	○	대학원 이상	복지 행정	여	37
05	성동구	민간	29년	12회	-	-	○	○	○	대학원 이상	사회 복지	여	53
06	중구	국공립	9년 6개월	3회 이상	○	○	○	○	○	대학원 이상	유아 교육	여	42
07	금천구	사립	22년	1회 이상	-	-	○	○	○	대학원 이상	유아 교육	남	46
08	양천구	사립	12년	1회	○	-	○	○	○	대학원 이상	유아 교육	여	47
09	서초구	사립	30년	1회	○	-	-	○	○	대학원 이상	유아 교육	여	58

부모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하는 영유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맞벌이, 외벌이를 불문하고 표집하여 사례조사를 시행하였다. 서울권에 거주하는 학부모를 주 대상으로 하였고 아동학대 경험, 사전 대응에 있어 요구점, 사후 대응 처리 절차에 있어 요구점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표 Ⅲ-1-3 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사항(부모)

번호	지역	자녀 연령	자녀가 다니는 기관 종류	자녀 기관 다닌 기간	아동 학대 경험 여부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이수 여부	아동 학대 대응 절차 인지 여부	아동 학대 매뉴얼 필요성 여부	학력	전공	성별	연령
01	송파구	만3세, 만0세	어린 이집	2년 5개월	-	-	○	○	대학원 이상	간호학/ 경영학	여	35
02	서초구	6세, 3세	어린 이집	4년/ 6개월	-	-	-	○	대학원 이상	경제학	여	32
03	중구	만4세, 만6세	영어 유치원/ 국공립 어린 이집	2년/ 3년	○	○	○	○	대학원 이상	미술 경영학	여	37

(표 Ⅲ-1-3 계속)

번호	지역	자녀 연령	자녀가 다니는 기관 종류	자녀 기관 다닌 기간	아동 학대 경험 여부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이수 여부	아동 학대 대응 절차 인지 여부	아동 학대 매뉴얼 필요성 여부	학력	전공	성별	연령
04	중구	만4세	어린 이집	5년	-	-	-	○	대졸	심리학	여	44
05	중구	만2세 쌍둥이	어린 이집	7개월	-	○	○	○	대졸	전산	여	42
06	마포구	만5세	어린 이집	1년	-	-	○	○	대졸	러시아어	여	43
07	중구	만1세, 만5세	어린 이집	2년/ 6년	-	-	-	○	대졸	언론학	여	34
08	중구	3세, 5세	어린 이집	3년	-	-	-	○	고졸	무용과 중퇴	여	32
09	중구	9세, 7세, 6세	초등 학교, 어린 이집	유치원 2년, 어린 이집 2년/ 4년/ 3년	-	-	-	○	고졸	-	여	40
10	강서구	3세, 7세	유치원	어린 이집 34개월/ 유치원 12개월	-	-	-	-	대졸	영양학	여	39
11	동작구	만5세	어린 이집	1년	○	-	-	○	대학원 이상		여	37
12	서초구	만2세	어린 이집	2년	○	○	○	○	대졸	사회학	여	38
13	울산	8개월, 만3세	직장 어린 이집	1년 6개월	-	-	-	○	대학원 이상	법학	여	36

2 원장 및 교사 조사 결과

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조사 결과

1) 학대 일반

가) 학대 판정의 객관적 기준 필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 조사 결과 학대의 기준에 대한 모호함을 드러내었다. 이는 향후 학부모가 학대라고 하며 기관에 찾아오더라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미약함에 따라 학대 판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자 어려운 사항인 것으로 보인다. 학대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 규정으로는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학대에 대하여 모두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 모든 인터뷰 대상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따라서 때로는 일정한 기준과 범위를 제시해주는 것이 학대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을 보이기도 하였다.

> 집에 갈 때 아까 왜 울었어 물었더니, 선생님한테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화장실을 못 가게 했어. 그럼 그것도 아동학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당장 전화기를 들고 싶은데.. 교사입장으로도 보면 못 들었대요.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는데 못 듣고 다른 일을 하신 거에요. 저희 아이는 소심한 편이라... 쿨한 아이들은 크게 얘기 했을 텐데 그래서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줬다는 거 에요. 그럼 어린이집 측에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거잖아요. 그래서 학대의 정의를 어린이 집에서 정하기보다는 나라에서나 국가 전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주면 좋을거 같아요. 제시를 해주면 좋겠어요(원장 09)

교사 본인의 기준에서는 학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여도 아동의 기질 및 성향 차이 상 특정 아동에게는 학대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와 분명히 이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었다.

> 만약에 제가 화장실에 3분 동안 갇혀있어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울었어요. 그럼 아이의 성향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중략)... 바로 선생님을 탓하기 보다는 아이가 그런 성향이니까 조금 더 봐주세요 라고 하면 될 거 같은데, 기준이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그 부분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억울한 면도 없지 않을 거 같아요(원장 01).

학대가 아닌 경우에도 CCTV 에서는 학대로 보이는 경우가 많기에 기관이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불문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 실질적으로 CCTV로 봤을 때 아무리 잘해도 학대로 보이는 게 많아요. 선생님들한테 절대로 스킨십을 하지 말아라고 해요. 머리 쓰다듬으면 때린 것처럼 나오더라구요. CCTV를 열어보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없으면 현장에서 없으면 정서적 학대로 가는 거에요. 무조건 어린이집 가기 싫어서 울고 하면 아동학대가 아닌가 해서 다 뒤져봐도 없으면 정서적 학대로 가고, 이게 사회적으로 매스컴에서 너무 자극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원장 03)

나) 학대 판정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 원장이 교사를 대상으로 전달하는 내용들

우선, 원장은 기관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핵심 키(key) 를 쥐고 있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원장이 어떻게 기관의 분위기를 만들고 교사에게 지침 사항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해당 교사가 학대 의심 사례에 연관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결정되는 것이다. 원장들이 인식하고 있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의 정제가 필요하다. 둘째, 아동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다. 셋째, 어떤 상황이던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넷째, CCTV 화면에 학대로 나올 만한 상황은 만들지 말자(예: 잡아당기기, 머리 묶어주기 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여러 가지 습관을 교육하는데 선생님이 강압이라기보다는 그걸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아주 상냥하고 전체 문장으로 해야 학대가 아닌 거죠(원장 08).

> 꼭 물어봐야 해요. "먹을 수 있겠지? 몇 개를 줄까?" 이것도 안하면 학대에요...(중략)...부산에서 줄 안 섰다고 뺀 거에요. 그런데 애가 뒤로 갔는데, 또 장난을 친 거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애가 밥을 안 먹고 집에 간 거에요. 이게 도시락처럼 되어있어요. 설거지를 엄마가 하는데 아무것도 안 받은 거에요. 엄마가 이상해서 전화를 해보고 CCTV확인을 해보니 선생님이 팔로 잡아끌고 식판을 밀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학대로 끝나고, 뷔페로 차렸어요. 자기가 배식해서 알아서 먹게 바뀌었어요(원장 07).

> CCTV보자고 해서 보니까 이게 원에서 잘해주려다가 보니까 사고나는 부분이 많은 거에요. 머리 묶어 주는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잡아당기는 것처럼 보이는 화면이 나오더라구요. 이 부분은 남들이 보면 아동학대라고 충분히 의심 할 만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심하자(원장 03).

다) 아동 학대에 다한 학부모의 불신과 학대

기관에서 학대 관련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보도될 때면 항상 긴장하는 측면이 있다. 본인을 의심하거나 일하는 데 있어 사사건건 감시받는 느낌은 일의 의욕도, 직업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도 저하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 기분 탓이겠지만 저희를 의심하는 거 같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어머님들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믿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요즘엔 녹음기도 한다고 하니까 "원장님 아이들 녹음기도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거기서 막말을 한다고 녹음기가 싫은 게 아니고 엄마가 나를 안 믿고 있구나 해서 일을 하기가 힘든 거에요(원장 01

2) 학대 예방 방법 및 학대 이후 대처 방법: 교사들을 상대로

원장들마다 학대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하였다. 본인에게 먼저 사건의 개요를 보고하고 그 이후 기관 자체 논의를 통해 대응하는 방법, 동료 교사의 학대를 본 경우에는 바로 신고하라고 하는 경우,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방법 등 본인만의 대처법을 가지고 있었다. 획일화된 시스템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활용을 할 때에는 본인만의 방법이 우선시 되었다. 이는 일률적으로 현장을 반영한 대처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솔직히 아동학대를 했다고 생각하면은 회의시간에 얘기를 해요. 저는 한 달에 2번씩 이야기를 해요. 나한테 올 시간이면 신고를 해버려라 라고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학대 같으면 신고해버려라 라고 해요(원장 05)

3)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한 학대 사례

가) 분리: 타임아웃

주변 기관의 경험을 통해 교사와 원장을 배려하지 못하는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는 학부모 중심의 일방적인 사법적 절차 개시, 취조를 비롯한 조사 과정에서 흔히 겪는 일상이었다.

> 학부모로 부터 고발을 당해서, 학부모나 경찰들의 관계자들이 와서 상황을 수업시간에 묻는데 나중에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타임아웃 시킨 거 같아요. 아이가 수업에 집중을 못해서 서있으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는 아이가 리코더를 안 가져와서 30분 동안 서있었다. 아이가 말을 해서 엄마가 화가 나서 고발을 하신 거고 진위여부를 조사했을 때는 3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고 리코더 가져온 거 아니고 여부도 아니고 그래서 무혐의 했는데, 그 아이는 유치원에 계속 다니고 선생님은 너무 화가 나서 스트레스 받은 상황이고 원장님 입장에서도 너무 억울할 거에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배려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당해야만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원장 08)

나) 생각하는 의자 이야기

생각하는 의자는 일종의 타임아웃과 유사한 것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그간 사용하였던 훈육 방식이었다. 하지만 현재에는 정서적인 학대로 관련한 내용을 학부모가 인식할 경우 여지없이 학대 가해자로 되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이는 훈육 방법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것에 반하여 교사들에 대한 교육의 부재,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 구조의 부재 등을 반영한다.

> 생각하는 의자 아세요? 생각하는 의자 있잖아요. 뭐를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라고 하는 좋은 의도로 만든 건데, 그거 지금은 정서학대에요. 거기다가 방임이야. 그런 관행적인 유치원 업계에서 있을 수 있는, 부모한테도 마찬가지에요. (원장 02)

다) 아동의 말을 일방적으로 믿는 경우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는 아동의 반응이나 행동으로 학대에 대한 의심을 시작한다. 이러한 경우 모든 경우가 학대의심 사례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아동의 말만 믿는 경우는 기관과 부모와의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 아이가 부모님이 오니까 울은 거에요. 달려와서 안기면서 울은 거에요. 아버님이 계단에 내려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무슨 일 있었어? 누가 때렸어?" 그러니까 아이가 끄덕인 거죠. 그래서 저한테 상담요청을 하신거죠(원장 06)

4) 학대 (의심) 원인

학대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 원장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일치하였다. 학대의 원인은 ▲ 과다한 업무량, ▲ 아동대비 교사 수의 부족, ▲ 보육 현장 진입 시 교사 자질 문제, ▲ 인성, ▲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 가정과의 소통 부재 등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모두 동일한 지점을 지목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력이 충분함에도 아동의 수가 많다보니 아동대비 교사 수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다, 교사의 스트레스 등은 감소하지 않고 있었다.

가) 교사의 스트레스

저는 현장 교사 출신이에요. 22년째 현장에 있는데, 가장 첫 번째 학대를 저지르는 원인은 스트레스에요. 그러다보니 아동인권이고 이거는 다 무시되고 신체학대(원장 07)

나) 아동대비 교사수의 부족

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교사 없어요. 보조교사가 없어요. 있으면 그 사람 의식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헬퍼를 해줘서 화장실도 가는데... 헬퍼 지원이 절실하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으면 학대가 줄더라.. (원장 07)

아동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비율이 적어진다는 것인데, 그러나 인력보충이 되어서 하루 종일 일하는 게 아니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나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해요(원장 05)

다) 가정과의 소통, 기관에 대한 신뢰 부재

보육과 교육은 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부터 연속적인 작업이라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기관에서만 행동을 가르치거나 교육을 할 수 없기에 가정에서의 양육과 연속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신뢰가 부족한 것도 학대 의심의 큰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어머니한테 얘기할 때 문제행동에 대해서 원인을 함께 찾으려가 하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원장 01)

선생님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웬만하면 신뢰를 하세요. 그런데 엄마 자체도 들어오시지 않고 그러면 전화부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할 거 같아요. 원에 신뢰가 없고 안가보고 상상으로 하면 그럴 거 같아요.(원장 02)

부모님들의 태도도 아이를 맡겼으면 선생님들이 말하는 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조언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기보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여기대로 집에서는 집대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반대이면 아이들도 빨리 잡히고 해결이 되요(원장 06)

토닥여 주면서 너가 혼난 게 아니고 다급하고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야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집에 가서 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엄마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 한다 ..(원장 05)

"아이 몸이 왜 그렇죠?" "어디가 다쳤나요"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에요. 손톱자국처럼 보이는 거에요. 누가 긁은 것처럼 보이는 거에요. 선생님으로서는 부담이 되죠... 평가인증까지 마치고 올 2월까지 견디셨는데 그분이 퇴사를 했고 저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원장 01)

라) 교사의 자질과 인성

교사의 자질 역시 학대를 유발하는 데 원인으로 작용한다. 일종의 테크닉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인성과 아이를 다루는 방법 등은 교사의 자질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 교사의 자질이 가장 원인인거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아이가 왜 이럴까 하는 아이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중략)... 안된다고도 안하고 잡아주지도 않고 연계도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에요. (원장 06)

마) 과다한 1인당 보육시간과 과다한 업무량

어린이집 원장들의 경우 유치원에 비하여 본인 기관의 업무가 더욱 과다하다고 체감하고 있었다. 보육시간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다. 유치원의 경우 공식적으로 오후 3시 이전이면 모든 업무가 종료하고 종일반 선생님으로 전환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가 퇴근 시까지 아이들과 생활하다보니 상대적으로 학대가 일어날 상황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 힘들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걸 보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가정어린이 집인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교사가 부족하고, 교사가 원장 겸임이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는 일에 분량이 많지 않은가 해요. 교사들의 업무과다라고 그런 거 같아요(원장 01)

> 양육하고 보육하는 시간도 그렇구요. 유치원은 반일반이 있고 종일반이 있어서 반일반이 끝나면 종일반 교사가 체인지 되는 곳이 많잖아요. 그에 반해서 어린이 집은 하루 종일 아이와 붙어 있어서 구조적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만약에 유치원도 종일 어린이집 같이 그렇게 한다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거 같은데, 아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같으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원장 01)

5) 일과 중 가장 긴장되고 힘든 시간

원장을 대상으로 교사와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였다. 매뉴얼 구성 시에 아동의 기관에서의 일과를 반영하기 위함인데, '언제 가장 긴장되고 힘든 시간이냐?' 는 질문에 ▲ 식사 시간, ▲ 낮잠재우기 시간, ▲ 놀이 시간 등이 언급되었다. 식사 시간이 가장 힘들다고 한 비율이 인터뷰 대상 9명 중 7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터뷰한 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으로 '아이가 원하는 만큼만' 먹이는 것으로 식사 시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음식물을 억지로 먹인 사례가 방

송에서 학대로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바뀐 사례였다. 2015년 인천 어린이집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하지만 식사도 생활 지도라는 인식도 강하여 어디까지가 교육이고 학대를 방지하는 것인지에 대한 심리적 회의감은 가지고 있는 듯하였다.

> 이번 운영위원회 때 말씀 드린 게, 집에서는 안 먹으니까 어린이 집에서 먹여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게 말하면 또 가서 "하나 먹어봐" 하면 "싫어요" 라고 하면 좋아하는 것만 먹고 싫어하는 거 안 먹으면 하다보면 다른 아이들도 챙겨야 하는데 , 그거 때문에 더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있으면 몇 번 권유는 하겠지만 억지로 먹이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통과가 됐어요.(원장 03)

> 급식의 경우에는 애들은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먹으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한 아이가 안 먹으면 다른 아이도 안 먹는다고 해서 단체생활이니까 도와달라고 어머니들에게 말하는데 잘 안 돼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싫어하면 먹이지 말아주세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교육하고 어디를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원장이 정해줘야 해요(원장 05)

> 양 같은 경우에는 적정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맛보고 뱉으라고 얘기를 해요. 삼키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국물은 안 먹여요. 국물은 몸에 좋지 않아서요. 우유나 케이크 사탕은 먹이지 않아요. 몸에 좋지 않아서 억지로 안 먹인다고 아이들한테 말을 해요. 우유도 엄마들에 따라서 안 좋다고 생각하는 엄마들도 많아서 안먹여요. 몸에 좋은 생선 야채는 조금이라도 먹어보자고 얘기하고 어머니들한테 얘기를 해요...그런데 아예 안먹는다고 하면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급식비 빼고 도시락을 싸서 보내시라고 해요. 알러지가 있는 애들이 많아져서 그게 많아졌어요. 한가지가 아니라 우유, 땅콩 여러가지가 있어서요. 그런데 살다보면 놓치는 동의가 있잖아요. 엄마랑 만나서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는거 같아요. 그럼 대부분 엄마들은 동의를 해주셨어요.(원장 06)

> 어디까지 학대이고 어디까지가 교육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때 누구든지 느끼고 아이가 싫은데 해야하는 건 식사시간 인거 같아요(원장 07)

6) 사전 대응 관련

가) 원장의 역할 중요: 기관 분위기 형성과 중재자 역할의 중요성

우선,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원장의 역할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별다른 중재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원장이 실질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현실상 원장이 중재자로 기능을 하긴 하지만, 심리적인 부담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원장이 상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원장님이 있거나 없거나 따라서 다르고 아침마다 엄마들을 등·하원할 때 만나요. 중간중간 원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개

> 입하고.. 소소하게 인사하고 귀가차량 탔을때 만나면 표정보고서 그러면 애들이 재밌다고 하면 그 정도 그리고 선생님한테 일지를 검사하고 관찰해요. 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원장 05)

> 원장님의 말 한마디와 용어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중략)...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 먼저 부모님을 불러서 일이 있어서 "아시지 않느냐 선생님의 마음, 그리고 너무 죄송하고 선생님이 걱정하고 있어서 어머님의 판단에 제가 좀 선처를 구하거나 맡긴다" 라고 해서 어머님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움직이는 거죠(원장 06)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제 3자적 중재자가 없는 상황에서 학대 의심 사례로 부모와 기관간의 갈등으로 번지기 전 원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 부모 교육 실시

부모 교육은 아동의 기관에서의 보육과 교육 이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시행하는 기관의 경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모교육은 따로 교육을 해요, 오리엔테이션에서 학대유형을 교육해요. 같이 조심하자고 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적응하시라고 지원해줘요(원장 06)

다) 교사 채용 과정에서 학대 유발 가능성이 있는 교사를 배제하여 일차적인 사전 학대 예방 시행

원장보다 현실적으로 아동들과 생활하는 것은 교사이다. 따라서 원장의 경우 교사 채용의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데 학대의 원인 중 하나도 조직문화 형성이 꼽히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올바른 교사에 대한 채용은 일차적인 학대 예방의 관문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보인다. 원장들은 교사 면접 시 시간을 길게 두고 인성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거나 경력을 통한 문의, 학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한다고 답하였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적성검사가 필수이기에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인성과 적성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MBTI나 성격 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기도 하였다.

한편 중간에 이직이 많은 교사일수록 아동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간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는 경력과 무관하게 아동 학대에 대한 가능성이 많다고 보아

채용하지 않는 원장도 눈에 띄었다.

> 인성은 그래서 결국은 출신 학교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학력이 전부는 아니지만 저희같은 소규모 기관에서 테스트를 할 수 없어서. 학교를 보고 그 학교 출신이나 그 학교 부속유치원의 분위기와 저희 원이 잘 맞는지 보게 되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대학교의 친구들은 학력 위주로 뽑고 싶지 않지만 결국에는 저에게 익숙하고 안다는 학교가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요 경력교사라면 먼저 있던 원장님에게 전화를 점점점 하게 되더라구요. 물어보는 게 죄송스럽긴 하지만 저한테도 많이 물어볼 수 있고, 저도 사실은 그 교사가 왜 퇴사를 하고 왔는지 궁금하니까 저도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면접시간을 오래 가지는 거 밖에 없는 거 같아요(원장 07)

> 인성 테스트나 MBTI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원장 01)

> 소개서가 많은 것을 주지만 만나보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유능한 거 보다는 저는 우리 조직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아이들과 어머님들과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과 잘 맞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부모와 애들한테도 잘해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구요.(원장 08)

> 국공립어린이집 채용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는 적성검사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거에요.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되려면, 인력풀 교사교육을 이수를 해야 하고, 안 해도 되지만 채용해서 1년안에 이수를 하면 돼요(원장 06)

> 저는 주로 경력을 보는데, 중간에 퇴사한 사람들은 일단 걸러요. 그걸 책임감으로 봐요. 중간 입사자도 좋게 보지는 않지만, 입사시점을 안 따지는데, 퇴사시점 2월말로 퇴사한 선생님들을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2의 엄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놓고 중간에 퇴사하는 거는 책임감이 없다고 보고, 그런 선생님들이야 말로 아동학대를 하는 여지가 있어요, 그것도 방임이잖아요(원장 09)

아이들과의 상황적 관계에 대한 본인만의 생각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의 자질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해당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향후 행동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로 간주하였다.

> 아이들과의 상황상황에 대해서 물어봐요.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데 못가는 상황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침에 등원하는 친구가 있는데, 많이 울어요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어린이집에 잘 올수 있게 할 수 있나요.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대답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자기입장에서 생각하는 선생님이 있고, 아이입장에서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그래요. 듣다보면 아이를 위하는지 변명을 하는지 느낌이오고 그래서 상황을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원장 02)

라) 복수담임제 시행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는 복수담임제는 서로 간 견제, 상호간 이해, 스트레스 해소, 업무 경감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 혼자 여러 전체 아동을 맡는 것 보다는 여러 명이 한반에서 아동을 맡는 것이 학대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 예를 들면 한 반에 선생님의 태도가 오해를 살거 같으면 선생님의 표정이나 말투가 들려서 그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주변동료를 불러서 그분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투담임 쓰리 담임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듣고 반응을 해요.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결재를 받으러 왔을 때 이야기를 해요.(원장 04)

> 항상 1:2 1:5가 아니라 2:6, 2:10 이러면, 훨씬 효율적인 거에요. 제가 예전에 피력을 했으나, 이게 서로 감시도 되고 조력도 되고 그러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혼자 하다보면 심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원장 01)

마) 교사들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로 학대 사전 예방

원장의 교사들을 대하는 노하우, 정기적인 스트레스 상담 등이 언급되었으나 교사의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제 1의 스트레스 관리로 언급되었다.

> 원장의 성격도 좌지우지 할 거 같아요. 저는 야단도 안치고 시시콜콜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알아서 해요. 폭넓게 하는데 선생님들한테 선만 넘지 말라고 해요. 선생님들이 늦어도 여유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원장 04)

> 여기는 교사가 아니라 아이가 주도적이잖아요. 아이한테 맞춰서 서비스를 해야해서 요즘 누리과정 지원금 나오면서 종일반 아이들이 엄청 늘었어요. 대부분 엄마들이 종일반을 원해요. 보통 4-5시 까지 하고 가는 분위기에요.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으면 청소나 잡무에서 빼드려요. 차량 도우미도 고용해서 빼고 그리고 수업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드려요(원장 09)

> 제가 작년 재작년 그럴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보내드리거나 원에 오시는 분들 하고 있는대, 저희가 해보니까 외부에서 하시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더라구요. 늦게 퇴근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스럽더라구요. 선생님들이 늦게 퇴근하면 다음날 영향을 주니까 되도록 빨리 퇴근하게 해주는 게 저의 의무이기도 하고(원장 04)

> 저희가 1년에 두 번 자체 연수를 해요. 1박 2일로 외부로 나가서 친목 겸해서 레크리에이션이나 체험프로그램을 해서 재밌게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원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연수를 또 해요(원장 06)

7) 사후 대응 관련

어린이집에서 학대와 관련한 사후 대응은 대부분 CCTV 열람과 관련된 것이었다. 기관에 따라 CCTV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배제하기도 하였으며 부모의 요구를 거부하는 기관도 존재하였다. 영유아보육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CCTV 열람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학대 의심이 있고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부모와 함께, 또는 기관 내에서 교사들과 함께 CCTV를 열람하였고, 자체적으로 월 1회 모니터링하여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장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학부모의 사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사후 대응 관련에서 원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제3자인 전문가의 판단을 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가) CCTV 의 주기적 모니터링

> 저희는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는 거 같아요. 화장실이라든지 교실이라든지 돌고 오면 보이는 게 CCTV거든요. 그래서 보다가 좀 아이가 많이 울거나 선생님이 방치하는 거 같으면 바로 가서 얘기하는 편이라 선생님들이 익숙해진거 같아요(원장 06)

나) 학부모가 CCTV 요청 시 신청 절차 거친 후 지체 없이 열람 허가

> 언제 닥칠지 모를 일이니 당황하지 않게, 해보고 있는데, 막상 그런 일이 있으면 당황하긴 하겠죠. 일단을 요구를 하시면 CCTV열람 절차에 따라서 신청서 쓰시고 어느 장면 요구하시는지 따라서 녹화본을 뜨고...보호자의 아이들만 나오고 주변에 블라인드 처리되게... 개인 부분이랑 프로그램해서 미리 녹화본을 해놓고 보여드리고 있어요.(원장 04)

다) 제3자인 전문가 개입의 필요

현재 학대 신고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나오지만 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조사관이라고 생각하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 전문가가 꼭 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장은 교사편이라고 엄마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성인하고 달라서 계속 말이 바뀌어요. 저는 그냥 전문가들이 빨리 개입을 해서 정확하게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보전은 중재하는 게 아니에요. 중재자가 존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원장 02)

라) CCTV에 의존하지 않는 원장의 결단은 불필요한 오해 발생을 줄일 수 있음

일부 원장의 경우는 CCTV 열람 신청 시 보여주지 않고 자체적 판독 후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자체 판독 시 CCTV 화면상에 아동학대로 보일만한 여지가 있었으나 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중재자로서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조율한 경험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살펴보았을 때, 반드시 일차적으로 CCTV를 학부모,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게 공개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CCTV를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안 보여줬어요. CCTV를 보고 싶냐. 나를 못 믿냐 했는데, 믿기는 하는데 CCTV를 해서 아동학대라고 선생님이 그러면 나는 사표 쓸 각오는 되어있다...(중략) 제가 CCTV를 봤어요. 나도 보니까 밥먹을 때 막 먹이는 거 같은 게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조심하자고 하고 지나갔어요(원장 03)

8) 매뉴얼 관련 요구 사항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일단 필요성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었고 주로 ▲ 학대와 훈육의 경계, ▲ 학대의 기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길 원하고 있었다. 이때 학부모와 교사간의 합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교사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매뉴얼의 방향을 요구하였다.

원장들의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은 교사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공통적이었다.

가) 교사의 인권 보장

> 교사를 지켜주는 매뉴얼도 중요한 거 같아요...(중략)..어디까지 아이와 교사를 보호해주는지 모르겠는데, 교사는 보편적인 가르침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중략).. 엄마들의 욕구대로 보육만 해야하나 그래요. 회의감이 느껴져요.(유치원 09)

나) 학대의 기준 수립

> 어디 까지가 학대고, 어디까지가 교육인지 해줘야 할거 같아요...(중략)...정말 추상적인 정의 말고 정말 실적을 채울 수 있는게 아니라 필요한 교육을 해야하지 않을까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야하지 않을까 해요(원장 02)

9) 기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요구 사항

마지막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몇 가지로 압축될 수 있었다. 가장 많이 요구 하는 것은 ▲ 인력의 충원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소 실현 이었고 그 이외에도 ▲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도 개선, ▲ 교사 업무량 축소, ▲ 복리후생 개선 및 처우 개선, ▲ 교사 질의 향상을 위한 까다로운 교사 채용 기준 수립 등의 응답이 있었다.

> 나라에서 보조교사를 21만명 충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 있는 사람들의 처우개선을 잘해줘서 관리를 할 생각을 해야지(원장 04)

> 평가 인증은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해요. 그 기준이 좋다는 것도 알고, 좋은 제도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게 하루 날 잡아서 관찰하는 건데, 그거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완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원장 01)

> 처우개선하면 교사의 질도 높아져야 하고.. 원장이 업무평가표 같은걸 체크해서 1년에 두 번 평가를 해서 사기업처럼 평가를 해서 미달이 되면... 선생님한테 조금 죄송하지만 그만큼의 돈을 받고 하려면 그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원장 05).

나.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조사 결과

본 연구는 원장과 분리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심층 면담을 별도로 시행하였다. 원장과 교사의 의견은 다소 상이하였다. 교사는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와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들 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1) 학대 일반

학대의 형태, 학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관련해서는 CCTV 설치 의무화 이후 학대에 대한 신고 및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과 동시에 교사들의 학대 관련 인

식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모와의 양육 방법 및 생활 지도 범위의 합의 정도가 학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연령별로 보육·교육의 방법과 범위가 상이함에 따라 학대에 노출되는 정도, 종류 등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학대와 방임의 경계에 있는 상황에도 자주 노출되고 있었는데 이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치원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활습관 지도 등을 어린이집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하는 데 있어 학대와의 경계에 놓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단체 활동의 경우 유치원에서는 단체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어 원하지 않는 아이의 경우도 최대한 합류를 원칙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학대에 대한 인식은 최근 들어 많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는데, 겉으로 보이는 신체적 학대 이외에 정서적 학대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다.

가) 학대의 판단 기준

학대의 법적인 판단기준 이외에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을 찾기란 어려웠다. 교사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가 아닌 아동에 의한, 아동이 중심에 있는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가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교사의 행동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다면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사례 중에는 대집단 활동에서 배제를 하는 경우 방임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교육의 일환으로 강압적이 될 언정 배재시키고 있지 않았고, 어린이집의 경우도 웬만하면 발달 수준에 맞춰주되 참여를 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대집단 활동에서 배제될 경우 방임이 될 수 있고, 방임도 학대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인이 의도치 않게 방임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럴 때 CCTV를 통해 본다면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전언이었다.

> 배제를 시키지 않아요. 참여하게 해서 주교사가 전체 어린이 들을 이끌고 다른 선생님이 그 어린이를 개별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같이 참여하게 해요(교사 20)

방임의 경우 교사들도 학대라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의도치 않게 자연스럽게 방임이 되는 상황도 상당 수 발생하고 있었다. 학대와 방임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는 결국 정책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으로 귀결되었다.

>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에 애가 한명 화장실 간다면 화장실간 아이보고 누구는 배식해야 되고 그러면 방임스럽게 방치가 되는 거죠(교사 01)

> 바쁜 시간에 한분이라도 계셔주시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봐주시면 그 아이에 대한 방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교사 02)

> 반마다 특징적으로 공격적으로 행동을 보이는 아이가 있거나, 좀더 소극적이 친구들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신경을 써주면 좋은데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그 시간 동안에는 자칫 잘못하면 방임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죠(교사 04)

학대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면 교사들도 업무를 하기 훨씬 수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어떠한 범위까지가 학대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정부에서도 말을 해주지 않아 '학대 기준의 부재' 는 아이들을 보육, 교육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 나무목재 장난감 도구가 있는데 그걸 앞에 여자아이에게 제지할 시간도 없이 던졌어요. 이마에 맞는 순간 딱 소리가 나는데...(중략)...잘못된 건대 아이를 붙잡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알고 싶은 거에요(교사 06)

> 굉장히 어려운 게 얼마 전에 0세 아이가 울고 있는데 울면서 안아 달라고 매달리는데 밀쳐서 넘어지는데 넘어지더라, 그런데 애들은 작아서 넘어져요...(중략)...근데 그거를 소리도 들리지 않는 CCTV로 학대라고 기사화 됐었더라고요. 저런 거는 그냥 보육과정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건데(교사 07)

나) 본인이 생각하는 할 수 있는 훈육, 하지 말아야 할 훈육

교사 입장에서 예전과 달리 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아동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상당히 조심스러워 진 것이 사실이다. 잡아끌기, 타임아웃 등은 하지 말아야 할 훈육으로, 애정 어린 말투로 타이르기, 반복해서 이야기 해주기 등을

할 수 있는 훈육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학대가 아니고 훈육이었다는 걸 보여주려면 훈육 후에 안아주면서 토닥여 줘야 훈육이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교사 10)

하지만 최근에는 아동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것과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잡아주는 것 사이에서 교사들도 많은 갈등을 하고 있어 훈육의 방법과 기준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 아이의 개성을 존중하면 기본생활 지도습관이 어려울 때가 있고, 단체 생활이라 서로 피해가 안 가게 지도를 하면 아이의 개성을 누를 수밖에 없는 게 생겨서 기준이 참 어려운 거 같아요...(중략)..그 아이들은 밥을 먹지 않고 놀고 싶은데, 그걸 계속 존중해주면 하루에 제가 해야 될 걸 못해요(교사 19)

다) 아동 학대에 대한 일반적 인식

아동학대를 하는 교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이상 아동이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말을 듣지 않고, 교사의 경우도 스트레스가 쌓여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면 신체적 학대까지는 나아가지 않아도 평소와 행동이 다르게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겉으로 드러나는 학대 사건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님에도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직업적 회의감과 함께 해당 기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학대를 가하는 교사는 행동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개인적인 인성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해당 기관의 동료들이 제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다수였다.

> 왜 동료 교사들이 저렇게 될때 까지 몰랐을까. 그리고 왜 알았다면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런 게 생각이 들고, 때려서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요(교사 11)

>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선생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 게, 안자면 안자도 되는 거고, 그건 개인적인 리듬인건데, 저희가 배우면서 전공서적에 나오는 게 개별적인 요구를 반영해야한다, 특성을 인식하고 이해해야한다 이런 게 중점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안 되는 느낌? 그런 게 참 답답한 거 같아요.(교사 13)

하지만 현재 어린이집 운영 구조상, 학대는 절대 이루어져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밖에 없는 현실을 함께 인지하고 있기에 정책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학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하였다.

> 이해는 돼요. 저 사람이 얼마나 극한의 상황에 갔으면 그렇게 까지 했을까 그런데, 그게 반이나 원분위기에 맞춰지는 거 같아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좋은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요.(교사 12)

2) 교사가 생각하는 학대의 유형

학대의 유형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신체적 접촉이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언어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센 교사는 언어적 학대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었다. 생각하는 의자의 경우에도 아이 혼자, 별도의 장소에 떨어뜨려 놓는 것은 학대라고 보았고 예전에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었으나 현재에는 인식의 개선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다.

> 업무가 많이 바쁘거나 시간이 촉박하고, 아이들이 잘 안 따라 주면,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잘 못해주고, 말을 성의있게 못해주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빈번한 일이었고, 이 모든 것이 학대의 한 종류인 방임으로 분류된다면 학대의 유형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돼요..... 생각할 시간을 마냥 주는건 훈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게 방임이 될 수 있고 그런 거 같아요.(교사 15)

> 아이가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행동을 강요받을 때, 그리고 방임이나 그런 것처럼 아이에게 돌봐주어야 할 기본적인 것도 해주지 않을 때(교사 05)

> 이 아이한테 관심을 주다가 다른 아이들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거에요. 그리고 아이들의 인식이 바뀌어요. "왜 선생님은 저 아이한테만 관심을 주지?",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생겨요 애들이(교사 03)

3) 학대 경험 직간접적 사례

인터뷰 대상자 중에 학대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학대로 제재를 받아본 사람은 없었다. 아마 현직 교사를 인터뷰 한 결과로 예상된다. 간접적 경험으로 어떠한 유형의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신체적 학대가 상대적으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특수아동이 재원하는 유치원의 경우는 학대와 관련하여 다른 일반적인 경험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선생님이 아이를 어떻게 보면 학대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아이를 좀 힘으로 미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분은 그만두셨어요. 저희 교사들이 보고 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거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담을 해서..(교사 14)

장애아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지함에 있어 강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증가하지만, 부모가 용인하지 못하여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 장애통합 어린이 집에서 아이들 신체로 하는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소리 지르고 이런 거 그런 거나 잘 못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애기가 막 소리를 같이 서로 지르는 거죠. 그것도 사실 학대죠.(교사 13)

> 단체 대집단 활동을 강요하면서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화장실에 가두어 아이를 통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요,

> 악기를 연주하는데 장난을 치거나 집중을 안하면 장구채를 뺏는 다던지, 악기를 뺏고 그런 다던지... 그래서 그런 학대 아닌 학대를 많이 했죠(교사 15)

> 제가 짧은 실습 중에 유치원 만 5세반인데 선생님이 아이들이 케어가 안 되니까 화가 나서 스물 몇 명이 산만하고 아이들 통제가 안 되니까 너무 화가나서 어떤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이한테 너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책상과 의자를 화장실에 넣고 문을 닫으신 거에요...(중략)...화가 나니까 좁은 공간에 화장실에 아이를 넣어버린 거에요(교사 16)

4) 일과 중 가장 힘든 시간, 가장 힘든 상황

가) 일반적으로는 식사 시간과 전 일과에 걸쳐 힘든 상황 수시 유발

교사를 대상으로 일과 중 가장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조사하였다. 이는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가장 많은 부분이기에 상세한 질문을 통해 답변을 얻고자 하였다. 인터뷰 결과 원장 인터뷰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교사들 대다수는 원장과 마찬가지로 ▲ 식사시간과 간식 배식 시간이 힘들다고 하였으나, ▲ 자유 놀이시간, ▲ 잠 재우기 시간, ▲ 외부활동 시간, ▲ 등하원 시간, ▲ 전이 시간 등 교사별로 인식하는

힘든 상황이 다양하였고, 유치원의 경우 자유놀이시간과 외부활동시간이 특히 힘들고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였다. 어린이집의 경우 가정어린이집 교사는 특히 잠재우는 시간이 힘들다고 하였다.

더욱이 식사 시간은 모든 연령별로 각각 힘든 특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어린 연령의 경우 직접 먹여주어야 해서 노동력이 많이 요하고, 연령과 상관없이 힘을 들여서 먹여야 하는 아이가 있는 부분과 학부모들이 대부분 먹는 것에 민감하여 아이를 먹여야 한다는 책임감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경우 보육 및 발달 과업과 무관하게 부모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다. 부모와 어느 정도까지 먹이고, 안 먹이는 범위인가를 학기 초에 합의한 후 그에 따른 자체적 매뉴얼에 따라 식사 지도를 하고 있는 기관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보육하여야 할 아동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더욱 피로감이 증폭되는데, 하루 종일 대체교사 없이 오로지 혼자서 보육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로의 누적, 스트레스의 누적,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이 부분은 어린이집 교사에게서 더욱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점심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오후에 지쳐서 뭔가 다른 서류업무도 해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이들도 오후시간에 힘들어 해요. 아침부터 그 반 아이들이 많이 남아있으면 힘들어요.(교사 09)

> 밥 먹을 때가 힘들죠. 저는 만0세인데 이유식도 밥도 먹고 개별차가 많아서 힘들고 먹다가 막 자고 깨워서 그럼 먹여야 되나 그런 게 힘들고 뱉고 그러면 흘리고 그런 것도 당연한 연령에서 하는 건데(교사 08)

더욱이 모든 일과 중에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손이 많이 가는 영아의 경우는 하원 할 때 까지 계속 힘들고, 출근해서부터 체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하원 근접한 시간에 가장 체력적, 정신적 고갈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기를 잘하는 애들이 많고, 던지고, 갑자기 확 물건을 뺏고.. (중략)..그럴 때 더 스트레스 받고 피로를 느낄 거 같아요.(교사 01)

나) 부모의 과도한 개입으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

특히 학기 초 적응 기간의 경우 힘든 시간이 하루 종일 계속되는 데, 영유아를 불문하고 초임 교사의 경우 가장 힘든 일과는 적응 초기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 보육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 베이비시터처럼 상대한다던지, ▲ 본인의 스트레스를 교사를 통해 해소하려 한다든지, ▲ 일과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아이 때문에 힘든 상황이 아닌 부모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 부모들의 스트레스도 들어줘야 하고 그래요. 교사들의 입장이 그래요. 그리고 가정에서 기본이 안돼서 들어와요(교사 02)

> 개인 시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교사 03)

>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등원서 부터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힘든 거는 점심시간 쯤 준비할 때, 그쯤 되면 아이들과 상호작용해주고 놀이하다 보면..(교사 08)

> 등원시간이요. 동시에 많이 보면 아직은 손이 필요해요. 부모님들도 선생님과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이미 교실은 활동하거나 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머님들과 얘기하고 먼저 온 아이들 돌보고 해야 해서 힘든 거 같아요(교사 04)

> 자유놀이 시간이나 준비하거나 그럴 때가 산만하고 그런 거 같아요, 또 정리가 끝나면 화장실 가고 한쪽에서는 밥 준비하고 간식시간 밥 먹고 나서 연결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선생님 한분은 배식하고 한분은 자리에 앉혀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하고, 옷 잘 못 입는 친구도 봐줘야하고..(교사 07)

> 저희는 5세반에 안 잤으면 좋겠다 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다른 아이까지 못 자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 아이랑 상호작용을 해야 해서 그 교사는 다른 업무를 못해요(교사 13)

다) 가정과의 교육 연계가 미비함에서 학대로 여겨질 만한 상황이 발생

가정에서 교육이 연계되지 않고 기관에서의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발달단계별 과업 달성, 기본적 생활습관 형성 등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많았고, 이 경우 학대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빈번하였다. 교사 입장에서는 생활 지도인 경우에도 가정에서 제대로 부모들이 아동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거나 키우는 데 무관심하여 교사의 학습 지도가 학대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아이들이 1세면은 자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배변훈련이나 그런 게 되게 큰 과업인

데, 우리는 노력을 했는데, 집에서는 안 해요 그럼 거기서 스트레스가 있어요...(중략).. 여기는 단체라 다른 아이들을 봐야 되는 시간에 손이 한 번 더 가는 게(교사 09)

모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해요. 집에서는 그렇게 교육 안하잖아요. 아이한테 큰소리 지르고 때리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어린이 집에서는 못하게 해요. 그런 집 아이가 어린이 집에서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학대는 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건 인지 못하고 선생님 한테만 요구를 해요(교사 11)

5) 학대의 원인

교사가 생각하는 학대의 원인은 다양하게 지목되었다. ▲ 교사의 인성 및 자질 부족, ▲ 기관의 분위기, ▲ 아동의 원인 제공, ▲ 과도한 업무량, ▲ 스트레스 등이 학대의 원인으로 판단되었고 아동의 기질에 따라 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하여 원장에 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사의 자질과 관련 하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기준 완화는 모두가 느끼고 있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대 원인과 관련해서는 원장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랑 다소 상이한 점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사의 인성은 학대와 훈육의 경계에 있는 경우 영유아를 대하는 태도부터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적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 있다는 점은 원장과 교사가 동일하게 학대를 유발하는 환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영유아의 경우 기관에서의 단체생활에의 적응에 대해 때로는 교사가 강압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이러한 상황이 학대로 연결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가) 교사의 인성함량 미달과 자질 부족

교사의 자질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인식이 악화되어 있었다. 보육교사에 입문하는 과정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유치원의 경우 정식 교육과정 이수 후에 업계에서 일을 하게 되지만 보육교사의 경우 입문과정이 쉬운 것부터 어려운 과정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어린이집은 교사교육이 안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희들은 그래도 어쨌든 정기적 교육을 받

> 고 유치원에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애들한테 직접 풀면, 유치원 교사는 적어도 뉴스에 나온 상황처럼 풀지는 않는 거 같아요. 푸는 방법이 적어도 학대라는 느낌으로 푸는 건 없는 거 같아요(교사 14)

> 단순히 그럼 시험으로 걸러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내는 모습이나 판단하시는 그런 걸로 하는 거라 되게 어려운거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는 자격을 따는 게 다르잖아요.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3년이든 4년이던 학교 대학과정 중에 있어야 되고, 교사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학력 차이보다는 배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단순히 몇 개월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유아교육은 몇 년이라는 시간동안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교사 17)

나) 기관의 분위기가 학대 환경 조성

기관의 분위기는 학대와 연결되는 가장 큰 고리로 파악된다. 원장의 교사 컨트롤, 부모와의 관계 조성, 개선 방법 제안 등은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 1의 방책으로 지목되었다. 하지만 이 경우 원장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상황도 다수 연출되었다.

> 안자면 안자는 애들을 따로 보육하는 곳이 있었는데 굳이 굳이 재우시는 거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래야 자기가 수첩도 쓰고 조금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더라구요..(중략)..교사 한명이 문제가 아니라 유치원이든 어린이 집이든 위에서 부터 문제가 많더라구요.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거 같고, 솔직히 그 학대 일어나서 죽은 아이의 상황이 여러번 있었을 거고, 그걸 개선안하고 지냈다는 게, 그건 위에서 바꿀 수 있었을 거 같은데(교사 20)

> 원의 분위기도 큰 역할을 차지하는 거 같아요. 원의 선생님들이 좀 엄하다 그럴 수도 있고 조금 자유롭게 놓아주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처럼 어린이집 마다 교사도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의 분위기가 달라져요.(교사 07)

다) 교사의 미숙한 대처

아동학대가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순간적인 상황에서 학대가 발생하였는데, 교사들도 이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었다.

> 아동학대가 미숙함에서 오는 것도 많거든요(교사 10)

라) 업무 스트레스

교사의 과도한 근로와 편지 않은 근로 환경은 학대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으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 저는 업무스트레스 때문인 거 같아요(교사 15)

> 서류업무가 많고, 반 서류나 개인서류가 있고, 휴게시간을 주지만 쓸 수없는 시간인거 같아요. 그 시간에 알림장을 쓰지 않으면 어차피 남아서 써야하는 건데(교사 11)

> 사진도 매일 찍어서 보내야 하잖아요. 놀이 하거나 그리고 상호작용도 해야 되는데 보여주기 식으로 사진 찍는 거 같아요. 그런 스트레스가 많아요(교사 09)

마) 아동의 기질적 요인으로 인한 학대 유발

이 부분은 교사의 경우에도 랜덤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기본적인 인성이나 자질이 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학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아동의 기질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관계없이 적극적인 학대 혹은 소극적인 학대에 처할 가능성에 노출되고 있었다.

> 약간 기질이 강한 애들이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도 기질이 강하신 분들이 있어서 안 맞으면 마음도 힘들도 몸도 힘들고(교사 09)

> 조용히 있어서 교사한테 방임이 될 수도 있어요...조용하고 표현안하는 애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닥칠 수 있어요.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애들은.(교사 10)

바) 근무환경의 열악함이 학대의 구조적인 원인이라고 인식

해당 원인은 어린이집 중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학대 가능성,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학대 가능성에 있어 차이를 가져왔다. 예산이 부족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의 근무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 밖에 없었고 국공립의 경우에는 서류 작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근무 환경의 열악함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교사들은 이러한 다양한 업무의 과중함과 근무 환경의 열악함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학대를 근절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근무시간의 장기화도 교사의 피로감을 누적시켜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 외에 교사 한명 당 돌봐야 하는 아동수가 상대적으

로 많은 것도 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 업무가 국공립과 민간이 서류가 똑같으면 사람이 없어서 나눠가지면 서류가 많아지고...(중략) 가정은 원장님이 겸하는데 그 나머지 일을 원장님이 나가시면 거의 나가시는데 그러면 교사가 케어 해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식재료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게 너무 터무니없고 그래요(교사 05)

> 교사가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바쁠 때 이번 학회에도 보니까 아이들과 있어야 될 시간뿐만 있거나 다른 것들이 있을 때 아이도 케어해야되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하다 보면서 조금 놓치거나 되는 경우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교사 18)

> 되게 오래 어린이 집에 맡겨놓으세요. 저희는 특성상 맞벌이가 있어서 12시간도 있고 7시 반까지 더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열시까지 해요 여기는. 힘들어요,,(교사 10)

> 한명의 교사가 봐야 되는 아동의 수가 많은 게 가장 큰 문제인거 같아요. 안전에 예민해서 학대가 될 수 있어요. 1세 반이 5명인데, 내가 혼자 자유롭게 해줄 수 가 없는 거예요. 밥을 혼자 탐색하면서 먹게 둘 수 없어요. 혼자 여러 명의 아이를 보니깐요. 아이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교사 04)

사) 학부모의 과도한 요구 사항

부모의 과도한 요구는 교사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직접적 원인은 아닐지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만은 확실하였다.

>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많아요. 낮잠을 안자서 집에 오면 너무 힘들어 한다 꼭좀 낮잠 자게 해달라고 해요. 그걸 선생님들이 수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교사 03)

6) 사전 대응 관련

교사 인터뷰를 통해 추출한 학대에 대한 사전 대응 방법으로 권장되는 것은 ▲ 부모와의 올바른 신뢰구조 형성, ▲ CCTV 의 긍정적 활용, ▲ 교사 직무 환경 분석과 관리 등으로 구분되었다. 특히 학대 의심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하지 않고 재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기관의 종류와 상관없이 기관 내 묵시적인 매뉴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교사 역시 감정노동자라는 측면을 일부 보이고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영유아 아동을 상대로 보육과 교육을 진행하는 전문가

이지만 사람을 상대하는 직종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상대방이 어린 아이라는 측면에서 감정적인 부분의 컨트롤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현재 기관 내와 기관 외에 이러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제 3자가 부족하다는 점, 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절차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도출되었다.

가) 교사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지도를 통한 훈육 방식

아동들에 대한 생활지도는 대부분 반복적인 설명으로 진행하는 것이 학대를 예방하는 제 1의 수칙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한번이야기를 한다고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서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교사 18)

나) 힘든 시간에 인력의 충원

인력이 충원될 때 의도치 않은 방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는 학대에 대한 사전 대응 방식 중 하나로 활용할 만하다. 또한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으로도 인식되고 있었다.

> 누군가 한명은 차리고 있어야 되니까 한 명 보조 선생님이 갔다 오시던지 한명은 차리고 한 명은 이야기를 한다던지 동화책을 읽어 준다던지 하면 한명이 모든 아이를 앉혀놓고 볼 수 있어서, 다치거나 하는 경우가 없어서, 급간식 시간이 안정적이고 좋더라구요(교사 02)

다) 기관내 사례회의 개최

사례회의는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학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하여 본인의 일과를 비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대 사전 대응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회의에서 저희 반에 이런 아이가 이런 일 때문에 부모님과 일이 있었고 그런 내용을 수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다른 선생님도 아이를 대하거나 할 때 도움이 돼요(교사 03)

> CCTV를 원장님이 보고 교사들끼리고 보면서 모니터링해요. 한 달에 3번씩 20분씩 모여서 사례 회의를 해요. 저희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자고 하면서 개방적으로 만들어요. 도움이 되어요(교사 01)

라) 학대 예방교육

학대 예방 교육 자체는 형식적이지만, 받지 않는 것보다는 학대에 대한 기본 상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부모 교육 의무화

기관에서의 학대가 반드시 교사들의 역량 강화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부모의 역할을 재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부모교육을 의무화 했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도 부모교육을 위해서 연차를 허용해 주는게 좋을 것 같구요(교사 01)

바) 스트레스 상담 및 관리

교사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심리 지원 및 상담 프로그램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과의 인터뷰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지속적이지 못할 경우 거의 효과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더불어 또 다른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있어 교사들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섣불리 도입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쉬는 시간을 방해하기 때문에 별로 받고 싶지 않다는 의견, 낙인 효과로 인해 꺼려진다는 의견, 수시로 장기적으로 진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 들이 나왔다. 이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부정적이지는 아니지만 현재처럼 분절적으로 행사성으로 운영된다면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스트레스 상담을 하는 것이 교사의 자질을 문제 삼는 도구로 될 우려는 완전히 배재되어야 교사들이 마음 놓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동료들 간의 상황 공유가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별적 상담프로그램보다

는 현실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동료 분들이랑 얘기 하는게 많이 해소되고, 경험이 도움이 되고, 각자 많은 방법들을 나누다 보면,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다음날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방법을 찾고 스트레스를 찾고 어린이들 행동도 수정이 되고(교사 17)

사) 부모와의 신뢰 구조 형성 필요

학대 의심사례로 일단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모와의 신뢰 구조 형성이 최우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와는 대화로 상호작용으로 하고, 그런 행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나 그런 거는 어머님들이랑 매일매일 전화 상담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경우에 그렇게 주로 해결해요.(교사 16)

아) 복수담임제를 통한 동료 교사와 감시 체계 형성

복수담임제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이었다. 동료 간의 감시 체계를 자연스레 형성하면서 서로의 행동에 대한 조언, 제지, 의견 나눔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 효율적인 사전 대응 체계 중 하나로 보인다.

> 팀티칭을 하면서 이런 아동학대 상황이 의심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저도 시행착오를 겪고 경력이 쌓였으니까 같이 하는 선생님이 밥을 억지로 먹이려고 한다면 팁을 주죠. 의심받을 수 있으니 먹이지 말고 부모님한테 말하라고 조언을 해요.(교사 06)

> 만약에 밥 먹이는 상황에서 힘들다 그러면 옆에 선생님이 와서 "제가 좀 먹여줄까요" 하면서 좀 물러나서 쉴 수 있게 그럼 타임을 하면서 좀 괜찮아지는 거 같아요. 그걸 짝꿍들이 한번 씩 잡아주고, 그 아이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부모도 알고 있고 하니까 옆에서 제지를 해주면 충분히 아동학대는 막을 수 있어요 (교사 09)

7) 사후 대응 관련

어린이집의 경우 CCTV 가 필수임에 따라 사후 처리 절차에서 기본적인 것은 CCTV 시청이었다. 교사에게 방어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상당하였다. 또한 사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선 기관에서 발생한 학대의 경우 가정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 이후에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동료 교사의 학대에 대한 의심, 가정에서 학대에 대한 의심이 발생했을 시 교사가 어떻

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를 함께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였다.

그 외에 교사들이 언급하는 사후 대응 절차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건 발생 시 학대 의심에 이르기 전 교사의 신속한 대처 필요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관련 사후 대응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처' 였다. 이에 관련한 매뉴얼이 기관 별로 있는 곳도 있었는데, 만약 아이가 다쳤을 경우 즉시 사진을 찍고, 병원으로 간 후, 부모에게 바로 연락하는 것이 매뉴얼화 되어 있었다. 이는 결국 부모와의 신뢰 구조를 해치지 않고 사후에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나아가더라도 기관과 부모, 아동 모두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 만약 애들이 물었어요. 그러면 즉시 병원으로 가요. 바로 즉시 어머니에게 보고하고 병원으로 가요. 원장님에게도 즉시 보고를 해요. 그리고 병원을 다녀오고 나서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로 경과보고를 해요. 저희는 원칙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걸 안하면 괘씸죄를 적용하더라구요. 의사가 말하는 거랑 저희가 말하는 게 달라서 무조건 병원으로 가서 심지어 사진도 찍어서 보내줘요.(교사 03)

> 저희도 애가 뛰다가 다치면 바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교사 01)

> 만약에 등원할 때 상처를 발견을 못했다가 그 후에 발견했을 경우에는 본 즉시 사진을 오전에 바로 어머니에게 보내요. 그렇지 않고 오후에 발견하면 난리가 나는 거에요.(교사 04)

나) 부모와의 소통 구조 필요

부모와 신뢰 구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교사들에게는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학부모와 기관을 이어줄 수 있는 전달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아동의 상황을 즉시즉시 설명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모두 교사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업무' 임은 분명했다.

> 유치부 정도 되면 그래도 말을 할 줄 알고 알아듣는데, 대집단에 규칙을 정하기도 하는데, 영아는 규칙도 정하기 어렵거든요. 대집단 활동에 도태되는 애가 있어요. 그 아이는 우선 제 옆에 앉혀요. 그리고 부모에게 설명해요(교사 01)

다) CCTV를 통한 오해 해소 필요

CCTV 상으로는 학대로 보이는 경우가 다소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 과도하게 노출되어 부모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이었다. 이는 결국 교사들이 CC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모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CCTV를 통해 사례를 매주 공유하고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잘못된 사항에 대한 의견 표출 기회 제공 등을 통해 학대 의심 사례 발생에 대비하고 있었다.

라) 객관적 제 3자에 의한 학대 검증 필요

교사들은 객관적인 주요 근거 자료로 CCTV 가 있긴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판독해주고 교사의 입장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결국 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본인들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들어주고 대변해주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중재기구 내지 완충장치가 없다는 것에 기인한다.

>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누군가 봤을때 학대라고 보이면 학대라고 하는 거에요. 교사를 대변할 수 있는 건 없어요(교사 20)

마) CCTV 열람 요청에의 재빠른 대응

부모가 CCTV를 보자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아동의 의견이나 신체적인 특징에 의존할 때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서로 기분만 상한 채로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부모 입장에서 학대가 의심되어 CCTV 열람을 요청한 경우 기관에서는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상황까지 오면 학대의 의심이 결국 교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학부모와의 신뢰관계는 깨지고 교사의 권위는 바닥에 추락하게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열람 요청 시 재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CCTV 열람 이전에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을 청취할 수 있는 중재 기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보자고 했으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안보여줄 수가 없는 거에요. 물론 엄마가 보러오기 전에 같이 보면서 절차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보긴 보니까 안 돼요 거부할 권리는 없는 거 같아요(교사 11)

그러고 나면 사이가 좋다가도 거리감이 생겨요. 더 이상 애한테 정을 주고 싶지 않은 거에요. "이렇게 못 믿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교사 12)

제가 오히려 CCTV확인하자고 했어요. 아버님 확인하시라고 했더니 그거 아니라고 선생님을 믿는데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데, 그런 매뉴얼은 아니지만 억울할 때는 그렇게 되더라구요(교사 08)

7세 아이가 민소매 옷을 입고 왔는데 멍이든 걸 봤어요. 아침에는 없었다고 하는데 집에 갈 때 멍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어머님이 CCTV보자고 하시더라구요. 결국은 쉬면서 빨아서 그런 거였어요. (교사 10)

바) 원장에게 신속한 보고

원장은 학부모와 교사의 사이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교사는 주로 원장을 통해 상황을 마무리하기를 바랄 수 있었다.

저희는 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어머님께서 어떤 부분이 그런지 저희가 말씀드려도 방어하는 거 밖에 안되고 어머니가 의구심을 가지면 객관적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는 편이구요.(교사 09)

사) 동료교사 신고에 있어 어려움

사후 대응에서 동료에 대한 신고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심적 부담과 직업적 윤리 의식 사이의 갈등 해소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내가 여기를 내일 그만두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내가 신고를 하고 목격자가 되면 어쨌든 내가 불려가서 뭐를 해야 하잖아요(교사 15)

만약에 제 동료교사가 때리는걸 보면 말은 할거 같아요. 신고는 못 할거 같아요. 조심스럽게 말할 거 같아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다면 원장님에게 까지는 말할 거 같아요. 그런데 신고의무자로 전화는 못할 것 같아요.(교사 16)

심하게 하시면 신고를 해야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학대신고 의무자잖아요.(교사 20)

8) 매뉴얼 관련 요구 사항

교사들의 생각을 들어본 결과, 아동학대 매뉴얼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제도 설명, 절차 소개 등의 형식적인 내용보

다는 '사례를 통한 현실 인식' 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였다.

> 사례를 많이 보여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던 학대교육을 보면, 사전적 의미나 뉴스와 같은 거를 보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갈등상황에서 좋은 교육적을 대처방안에 대해 알려주고 그런 거면 도움이 될 거 같아요(교사 17)

> 여러 가지 사례를 가져와서 전문가 분들이 도와주면 좋을 거 같아요(교사 02)

> 상세하게 사례별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상세하게 해야지 선생님들이 말 한마디 실수로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판단이 제일 먼저에요(교사 10)

종합하면,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1) 부모와의 합의선 정하기, 2) 아동 중심으로 상황 판단하기, 3) 원장의 결정 등이 담겨 있으면 했고, 4) 훈육과 학대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설명에 대한 요구가 주된 사항이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유사하였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매뉴얼에 대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9) 아동 학대 방지 위한 정책적 요구 사항

인터뷰 결과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모두 교사 대 아동비율의 축소가 업무의 과도함과 교사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도 ▲ 평가인증제도 개선으로 서류 작업 간소화, ▲ 보조교사 증원, ▲ 대체교사 증원, ▲ 근무 시간 축소, ▲ 원장 및 교사 자격 관리 강화 등이 바라는 점으로 지목되었다. 결국 정책적인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학대 경감이라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란 무리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아동 대 교사비율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오전에 봐주시는 분, 오후에 봐주시는 분 끊어서 해주면 선생님들이 좀 쉬거나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아이들을 보는 순간만큼은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분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치원은 아동학대 거의 안 나오고 어린이집만 나오잖아요. 그게 분명 어린이 집과 유치원에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해요.(교사 01)

> 평가인증을 좀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모니터링 나오면 평소에도 잘하기는 하지만 특히 더 신경쓰는 거는 맞잖아요. 그런 거 준비하느라 늦게까지 남아서 청소하고 서류준비하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거 같아요.(교사 20)

> 유치원은 청소해주는 곳도 있고 한데, 저희는 모두 다 일을 해야 되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거긴 지원이 나오는데, 도우미 할머니 오시기는 하지만 도움이 많이 되지는 않아요. 애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할거 같아요. 교사도 하고 사무직원도 하고 그래서요(교사 02)

> 일지가 제일 스트레스고, 간소화 됐으면 좋겠어요. 글짓기 굉장히 많이 해요(교사 08)

> 자격증을 함부로 주면 안될 거 같아요. 특히 어린이집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만 봐도 나이 들어 할 거 없으면 2년 딱 공부해서 딸 수 있어요. 그건 돈을 벌기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교사는 돈을 벌기위한 수단은 아니잖아요(교사 02)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업무 강도의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유치원의 경우 종일반이 운영되고 있지 않고, 종일반이 운영되더라도 교사가 분리되기에 업무 강도는 어린이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다. 교사들 인터뷰 결과 업무 강도는 학대에 결정적이지는 않더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는 틀림이 없어 보였다.

3 학부모 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원장과 교사 뿐 아니라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기관에서의 아동 학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사전 및 사후 대응 절차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학대 의심 원인과 학대에 대한 일반적 인식

1) 학대 의심 원인

가) 기관에 바라는 점과 가정에서 지도하는 것과의 불일치

원장과 교사 인터뷰 결과와 달리 학부모의 기준은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하면서도 다층적이었다. 본인이 집에서 적용하는 학대 기준과 기관에 바라는 학대 기준이 상이함에서 오는 차이였다.

> 경계가 참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처럼. 제가하면 필요한 훈육 이였지, 했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하면은 또 계속 그러나 내가 모르게 그렇게 하나 생각할거 같아요(학부모 01).

나) 교사와의 신뢰 형성이 불가능한 상황은 학대 의심으로 이어질 여지가 큼

교사와의 신뢰 형성은 학대를 의심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교사와 자주 소통을 할 수 없기에 학대에 이르지 않았어도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는 어린이집이 개방되어 있지 않은 구조인 것과도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 아침에 잠깐이랑 나중에 데려올 때 그게 다인데, 그게 만약에 어린이 집에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좀 어린이 집 자체운영할 때 열려 있으면, 일상적으로 오픈하면, 그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끼리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고 그런 어린이 집도 있다고 해요.(학부모 05)

다) 학대 의심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사와의 신뢰회복, 아동 발달 과정에 있어 사전 조율과 합의 필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사와 언제든지 아동의 상태에 대하여 의논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다면 학대에 대한 의심이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 여건상 여러 아동을 봐야 하는 보육환경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아이가 다른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를 한다거나 선생님이 컨트롤할 상황이 어려우면 얘기해 달라고해요 그러면 집에서 교육 시키던지 문제를 찾든지 해서 그 행동을 어린이집에서 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선생님이 그 행동을 어린이 집에서 고치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찾아서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말아달라고 학기 초에 부탁을 해요.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다거나 할때 선생님이 컨트롤할 문제가 있다면 얘기해 달라고 해요(학부모 02)

> 엄마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아이를 찝어 놓고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의 엄마랑 얘기해서 문제해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학부모 01)

즉, 아동 학대를 사전에 예방함에 있어서는 교사와 학부모간 신뢰 형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부모의 적극적 역할도 필요하고 모든 부분을 교사에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선생님이 엄마와 면밀한 상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사 대 학생 비율이 많다고 하지만 이걸 당장 해결할 수 없으면 선생님이 아이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를 엄마와 같이 부담해야한다고 맞다고 생각해요.(학부모 05)

선생님을 아이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거 같아요(학부모 11)

라) 기관의 폐쇄성을 개선하여야 학부모의 학대 의심이 줄어들 것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기관에 자녀를 등원시킬 때 교실 안을 볼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이는 기관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하여 알 수 없게 만드는 이유이고, 어떠한 이상행동을 발견하였을 때 학대에 대한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원인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반면에 기관이 개방적이라고 말하는 학부모들은 기관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 역시 다른 폐쇄적인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국 기관의 폐쇄성은 기관 자체에 대한 불신과 함께 교사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하는 측면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사고와 외부인 출입 등의 위험을 떠 앉고 어디까지 기관을 개방하여야 하는 지는 고민해보아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동학대의 차이가 공간의 폐쇄성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차량으로 등하원을 해서 일반사람들이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학부모 11)

등하원을 시켜도 신발장 까지 밖에 없어요. 강남에 어떤 어린이 집은 큰데 거기는 CCTV가 방마다 달려있고 신발장이 있는데 현관에서 인사를 하더라도 보고 있어서 안심이 된다고 하더라구요.(학부모 12)

2) 학대에 대한 일반적 인식

가) 훈육과 학대의 경계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주관적일 가능성이 클 것임을 학부모들도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언어적 폭력은 소리 지르는 것, 욕설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인식하였다. 벌세우기는 학부모별로 인식이 달랐다. 격리를 시키는 것 자체를 학대로 인식하고 있는 부모가 있음에 반하여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훈육보다는 별도

의 장소에서 아동을 통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었다.

> 손이나 그런 거 보다는 벌세우는 거는 저희도 집에서 하거든요. 어린이집에서 그렇다면은 생각해보라고 아이에게 시키라고 할 거 같아요. 아이가 왜 혼나는지 알게 한다면 허용할거 같아요(학부모 02).

>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해요. 왜 그랬는지 얘기를 해요(학부모 03)

> 내가 만약 보육교사를 했을 때 이 아이가 민망함을 느끼지 않고 훈육적 효과를 느끼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공간에 가면 나머지 아이들은 방치 될 수도 있고, 뭔가 애들이 나의 시야에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한 아이와 깊은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거 같아요(학부모 04)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은 당연히 폭력으로 인지되고 있었는데, 타임아웃과 관련해서는 학부모별로 의견이 갈리고 있었다. 하지만 학대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 학대라고 생각해요. 소리만 지른다고 학대가 아니잖아요(학부모 01)

> 아이가 많은데 한 명을 지목해서 그러는 건 아이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런 것도 학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리시켜 놓는 거는 명백한 한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보는 곳에서 그런 거는 모멸감을 느낄 거고 아이가 학대라고 생각해요 (학부모 11)

> 타임아웃 이외에는 허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분리가 되더라도 공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 이외에는 어린이집에서는 훈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학부모 12)

나) 학대의 확인: 자녀의 언행과 행동 변화를 통하여 학대 여부를 확인함

인터뷰에 응한 모든 학부모들은 아동의 하루 일과 질문, 신체 확인 등을 통해 매일 자녀의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였다. 모든 학부모의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기관 생활을 같이 할 수 없기에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차적으로 아동을 통한 확인이었다.

> 저는 밤에 잘 때 늘 누워서 어린이 집에 있던 걸 물어봐요. 친구, 선생님 얘기를 물어봐요. 엄마들하고 소통할 때도(학부모 07)

> 보통 애들이 알아요. 와서 얘기 하더라구요. 위험하다고 공지하잖아요 선생님이. 누가 선생님한테 혼났어, 약속한 거를 지키지 않아서 라고 해요(학부모 06)

나. 실제 경험하였거나 간접 경험한 학대 이야기

학부모 인터뷰 결과정서적인 학대를 경험한 경우 발견이 쉽지는 않았다. 직접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보게 되어 학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어린이집에 만약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학대를 인지 못하고 계속 재원 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하였다. 이는 곧 어린이집의 폐쇄성은 학대와 연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1) 정서적 학대 사례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직간접 경험을 통한 것이었으나 정서적 학대는 주로 무서운 말과 욕설을 통한 언어폭력, 따돌림, 배식 시간 지연, 무시하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정서적 학대의 가장 흔한 케이스는 '배제'였다.

> 저희 아이 있는 반에 밥먹는 시간에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절대로..(중략)..두 번 다 점심 시간에 그랬어요. 그 반의 특성이에요...(중략).. 아이들이 공포스럽고, 좀 길들여진 무력감? 선생님한테 애들이 무력해 보여요. 저는 비언어적인 거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도 정서가 있어서 옆 반과 그 반에 모습을 보면 정말 확연하게 달랐어요.(학부모 10).

> 선생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쁜 애들이 보여서 그 아이를 조금 배제를 했던 거에요. 계속 그게 보였던 거에요. 이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CCTV를, 간식을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주고 간식을 먹을때 서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에요.(학부모 08)

정서적 학대 뿐 아니라 다양한 학대가 일어나는 기관의 특징은 1) 동료 상호간 의사소통의 부재, 2) 원장의 관리 소홀 등의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2) 억지로 밥 먹이기

한 학부모의 간접적 체험 사례로는 장애아동의 경우 식사 시간에 강제로 밥을 먹이는 상황이 연출된 상황이었다.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의 경계가 상대적으로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 제가 강제적으로 먹이는 것도 봤고. 그런데 그거는 부모가 동의 했대요.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교 가서 뒤쳐지거나 그래서 우리 아이는 처음에 물어봤어요. 엄마가 동의 했다고 그래서 먹는 거는 자유롭게 됐대요. 그리고 어린이집 자체는 오픈이 되어있어요. 강제

적으로 강압적으로 지시 안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구요.(학부모 05)

3) 언어 및 신체 학대 사례

어깨 잡아끌기, 밀치기 등의 신체적 학대 사례는 주로 증상이 발생할 경우 드러났다. 언어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중복 학대인 경우가 많았는데 아동에게 딱딱한 말투가 아닌 욕설을 하는 경우도 포착할 수 있었다.

> 그 어린이 집에 어린이가 팔이 탈골이 되가지고, 잡아끌어가지고 CCTV를 뒤집어 봤더니, 그 어린이집 애들이 다 학대를 조금씩 당했더라구요. 그래서 그 엄마도 되짚어 보니까 애가 좀 이상하게 행동했던 거도 생각이 나고, 김치 같은 것도 억지로 먹인 정황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더라구요..애가 놀이나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해서 억지로 끌고 가다가 팔이 탈골된 케이스였는데(학부모 02)

> 언어로 "이 새끼들아, 빨리나와“ 그만뒀죠 당연히. 평소에 말도 무뚝뚝하고 그랬는데, 애들한테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 안했지요. 2년을 근무했던 선생님인데(학부모 02)

4) 전이 시간 중 신체적 정서적 중복학대 사례

학대는 일반적으로 단편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중복 학대가 대부분이었다. 신체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방임과 정서적 학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다.

> 예를 들면 CCTV를 보면 아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가는데 엄마만 아는 거에요. 선생님이 갑자기 안아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굉장히 힘들어요. 음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안고 뽀뽀를 해요. 아이가 싫어서 밀면 손을 놔서 나동그라져요. 그러면 팔짱을 끼고 잘됐다고 말해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상황은 성격 장애인 거잖아요. 남자아이한테는 웃옷이나 허벅지에 손이 꼬집히고, 성적학대가 있었는지는 CCTV 안 나와서 알 수 없구요. 남자애는 실어증 와서 바로 옮겼고, 그분은 사임 처리 했어요 (학부모 13)

> 제가 혼내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그래요.너무 가슴이 아팠죠.(학부모 13)

5) 아이 실종 사건

국공립 어린이집 케이스였고, 평가인증에서도 매년 A등급을 받는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활동시 아동 실종사건이 발생한 케이스도 있었다.

> 올해 중간에 옮겼는데, 중간에도 아이를 잃어버려서 2시간 동안 경찰오고 난리가 났는데(학부모 12)

이러한 케이스들은 현재의 평가 인증이 무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

6) CCTV 공개로 인한 추가적 학대 확인 케이스가 큰 비중을 차지함: CCTV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

가) CCTV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학부모들의 대부분은 CCTV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 불신을 하고 있었다. 우선 마지막 방어수단이라는 점에서 CCTV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CCTV가 모든 상황을 보여주고 포착할 수 없기에 불신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교사에의 신뢰가 아닌 CCTV 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후 대응 절차에 있어 학부모에게 CCTV 는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차후에 잡아내려면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학부모 08).

> 그게 사각지대에 일어나더라도 정황은 엄마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정황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CCTV는 꼭 있어야 해요. 선생님이 CCTV가 있어서 더 조심해줘야겠지만, 차후에라도 이 선생님을 내 쫓는 거라도 활용하려면 있어야 해요.(학부모 13

나) 아동학대의 임의적 발견: 다른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파악하려다 발생한 사례들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으나 CCTV 공개 이후 추가적인 아동학대 케이스가 발견되는 일이 상당 수 존재하였다. 이는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한 채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학부모들과 공유한 경우인데 일부 기관의 경우는 해당 아동만 볼 수 있도록 처리하는 방법으로 개인 신상 보호를 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개인 신상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어디까지 결정하여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CCTV를 활용한다는 것은 학부모의 경우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여 사소한 말 한마디, CCTV 화면 한구석에서 학대의 혐의를 찾느라 급급한 경우도 있었다. 한 개의 학대 사건이 일반화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또한 한 개의 학대사건으로 다른

무고한 교사가 함께 누명을 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학대의 원인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학대의 원인은 주로 교사의 근로 환경이 열악함에서 온다는 것이었다. 그 이외에도 공간의 폐쇄성, 교사의 인성과 자질 등이 언급되었지만 무엇보다 근로 환경이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아동학대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1) 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1. 과도한 행정처리

행정처리가 줄어들고,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등 교사 업무 부담이 줄어들면 아이들한테 할애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아동과 함께 하는 시간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2) 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2. 스트레스

한편,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아동 학대의 원인은 교사의 스트레스라고 상당수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동 학대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스트레스 해소가 관건이었다.

> 저는 아이들이 길게 있으면 (교사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점심도 집에서 먹어요.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시간은...(학부모 07)

> 기관을 좀 많이 보내봤는데, 선생님들에 그런 환경이나 이런걸 봐도 조금 힘든 환경의 선생님은 애들한테 표정부터가 달라요. (학부모 08)

> 쉬엄쉬엄 갈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학부모 09)

3) 공간의 폐쇄성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어린이집의 특수성상 학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창문이 대부분 가려져 있는데 그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여기에서 보장이 되어

야 할건 보육교사의 휴게공간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휴게공간에서는 침범 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아동학대도 폐쇄적이라 들키지 않아서 일어난다는 거죠.(학부모 11)

라. 사전 대응 절차 관련

학부모 입장에서 학대에 사전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보 습득과 신뢰로 파악된다.

1) 개방성 확보와 학부모들 간 모임 활성화 필요

어떤 원들은 엄마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임자체를 꺼려하시는 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학대라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학부모 06)

2) 교사와 신뢰 소통구조 활성화

자녀의 상황을 전달받고 하루 종일 어떠한 일들을 하였는지, 소소한 것이라도 서로 전달 받으면서 교사와 학부모간에 신뢰 구조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의 일을 선생님에게 알리고 공유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사에 대한 의심 전에 신뢰 구조를 공고히 함으로서 학대 의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해준다.

마칠 때 데리러 오면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컨디션이 아침에는 안 좋았지만 다른 활동은 괜찮았고 밥은 많이 안 먹었다. 먹기 싫다고 해서 안 먹게 했고 그런 거는 다 말을 해주세요.(학부모 07)

요구사항이 있을 때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제가 집에서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뺏기는 상황에서 제가 하는 것과 선생님이 하는 게 일치해야지 혼란스럽지 않을 거 같아요.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말씀을 드리죠. (학부모 08)

키즈노트로 공유를 해요. 식습관 문제였던 거 같아요. 먹이고 싶으면 먼저 맛있게 먹어달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문제행동 있잖아요. 당연히. 어린이집 다니고 더 좋아졌어요. 집에서도 훈육할 때는 혼나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해줘요. 실제로 혼내지는 않아요. 혼내야 되는 상황을 선생님들과 공유를 해요. 말을 존칭을 쓰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집에서 하는 걸 공유를 해요.(학부모 09)

마. 학대 발생 이후 절차 관련

1) 개요

학부모들의 경우 학대 발생 이후 관련 절차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었다. 일단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통해 하루 일과를 설명하도록 하거나 기분을 물어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인터뷰에 응한 학부모들은 본인의 자녀가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하더라도 지역 사회 내 소문, 향후 아동이 받을 불이익 등을 감안하여 학대 피해를 당한 기관이나 교사에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거의 모든 학부모들이 반드시 CCTV를 확인하겠다고 하여 CCTV 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방어수단 내지는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CCTV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견되었다.

2) 학대 확인과 CCTV

처음에 학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 아동의 의사 확인, 2) 기관에 확인, 3) 불신이 깊은 경우 CCTV 열람요청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CCTV 열람 이후 학대가 의심될 경우에는 1) 원장과 교사의 답변 기다림, 2) 아동보호전문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해당 담당에 신고 또는 경찰에 접수 등의 절차에 따랐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과정의 흐름 속에서 아동은 피해가 치유되지 않고 전원하거나 가정에서 머물렀고,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교사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직업적 자존감 하락으로 보육 현장을 떠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양 당사자의 인권이 모두 침해될 수 밖에 없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CCTV 열람부터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 또한 문제였다. CCTV를 보고 완전히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방어적으로 기관에서 CCTV 열람을 거부한다면 이는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사법적 절차로 나아가게 만드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 선생님이 CCTV를 삭제한 거에요. 선생님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삭제를 한 거에요. 그래서 원장도 그만두고, 선생님들도 그런 상황에서 그만두니까,(학부모 13)

전후 상황이나 패턴을 보면 무리가 가지 않을 상황일 수도 있는데 자제력을 잃고 그렇게 나타나는 사건들도 생기지 않았을까 해요.(학부모 01)

가서 일단 CCTV확인하고, 폭행이 확인이 되면, 컴플레인 넣지만 선생님이 그만두던 안 그만두던 그 선생님이 하는 걸 방치했다는 걸 기관에 책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 기관을 옮기는 쪽으로...그리고 그 해당 어린이 집도 그렇게 되니까 기관을 옮길 수 있게 되있더라구요.(학부모 02)

선생님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 거 때문에 선생님들에 자긍심이 더 낮아지고, 그런 걸 선생님들이 제공을 원인한 면도 없지 않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부모들이 불신을 하고 그런 시선을 받으니까, 직업적 자긍심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는 거 같아요. 일단은 확인을 해볼 거 같고, 만약에 학대인거 같다 그러면, CCTV 확인도 하고 법적대응도 하고 그러겠죠. 그냥 옮기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냥 옮기면 그 원에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거고,..(중략).. 장기적으로는 CCTV가 없어지고 신뢰가 맞다고 생각해요. 범죄자로 몰아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교사들의 노동환경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학부모 03)

3) 사후 대응에 있어 CCTV 의 절대적 필요성

아직까지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CCTV 열람 허용이 학대를 방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더욱 강화되어 목소리도 들려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학부모도 있었다.

길거리나 수많은 곳에서 CCTV가 존재하는데 아동학대를 훈육의 차원에서 대할게 아니라 범죄의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인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누구든지 발견을 했을 때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공동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학부모 13)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믿고 보내는 편이에요. 예방책은 없고, 기관에서 활동을 애한테 물어봐요. 선생님이 나쁘게 한건 뭔지 등등. 그런데 대부분 없어요. 누구 선생님은 무섭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그 선생님은 무섭지 않구나 하고. 혹시 선생님이 싫어하는 걸 시키면 싫다라고 말하라고 해줘요. 5살부터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고 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싫다는 건 싫다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구요(학부모 07).

4) 법적 절차로 나아가기 전의 중재에의 욕구를 가지고 있음

한편, 학대가 정황상 의심될 경우 CCTV를 열람한 후 바로 법적인 대응 절차로 나아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결국 CCTV 화면상 학대 여부를 부모가 판단한

후 법적인 대응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었는데 해당 당사자들의 합의를 찾기 힘들고 감정적인 소모가 많다는 점, 학부모 역시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해당 기관에 재원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와 감정이 상하지 않게 상호간 합의하고 아동이 기관에 재원할 수 있거나 궁금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후 절차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학대 당사자인데 그들이 뭐를 한들... 화가 가라앉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 법적으로 해야죠. CCTV는 당연히 보여줘야 하고 문제가 됐을 때 공론화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건지 원장이나 선생님이 바뀌는 향후 대책을 마련해서 알려주고...(중략)...원을 옮기지 않고, 원장이나 선생님들이 바뀌고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을 거 같아요.

반면에 사후 신고 절차가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보육시설의 특성상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 직장의 존속 여부가 기관의 개방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더욱 학대에 대한 이야기가 숨겨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 밖으로 나가면 스케줄이 안 맞고 너무 자기가 힘드니까 아이가 하나인 경우에는 1년만 더 다니면 되니까 ..(참는 거죠)..(학부모 13)

그러나 CCTV 저장이 잘 되지 않아 경찰에게 바로 신고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결국 사전 대응이 충분히 되고 있다면 사후 대응 절차에 있어 바로 사법적 절차로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 학기가 바쁘니까 다음 학기로 미루자 해서 다음 학기로 미뤘더니 자동으로 없어졌다고 그러는 거에요. (학부모 13)

학대 정황을 학부모가 습득한 이후에는 협박과 회유를 번갈아 반복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으면 참으라고 하는 원장도 발견할 수 있다.

5) 아동학대 대응 사후 절차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가) 공개된 환경과 적법 절차 준수

내부자가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과 기관의 공개가 우선 필수적이다. 사후에 법

적으로 대응하는 것에서 나아가기 전에 법적인 대응까지 가지 않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나) 중재 기관의 필요

중재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해가라고 여겨지는 보육교사 내지는 원장과의 상담은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대 신고 이 후 그 기관에서 아이가 다시 생활하기란 불가능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 그거를 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가해자인데? 그리고 피해아동 학부모를 고립시켜요. 다른 엄마들을 더 잘해준다거나. 그러면서 따돌리기도 해요(학부모 13)

바.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사항

아동학대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효과성에 대해서는 학대가 일어날만한 상황에서 어떻게 교사가 행동해야 하는지 일정 부분 지침을 만들어준다면 학부모도 상황이 예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활동에 대한 이해가 쉽고 교사 역시 학대에 대한 의심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 저는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뉴얼이 좋겠다라고 느꼈을 때, 아이가 만약에 누구랑 싸웠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묻잖아요. 저도 알고 선생님도 아는 매뉴얼이 있으면 상황을 알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약속된 매뉴얼 인거잖아요.(학부모 07)

매뉴얼이 실제로 있을 경우 교사들에 대한 신뢰도 증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알 수 있었다.

1) 일반: 특정한 행위를 아동에게 강요하지 않기

학대 예방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대부분이었고 집에서도 함께 활용하기를 원하였다. 특히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아이에게 권유를 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반영되길 원하기도 하였다.

> 활동을 아이가 싫어하면...권유를 해서도 싫어하면 친구는 그러면은 블록 활동을 다른 활동을 하던가 하는 절충점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술활동 시간이라고 미술활동을 강요하면 문제라고 생각해요. 폭행이다 훈육이다라는 지점이라는 게 하기 싫어하는 걸 강요하는 순간 학대가 되는...(학부모 05)

> 어린이집과 학교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초등학생보다 어리고 그 활동을 참여 안 해도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요하고 아이한테 하는 순간 학대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김치를 먹기 싫어하는데, 먹이면 정서적인 학대거든요. 부모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부모 06)

2) 식사시간: 원하는 만큼만 먹이기

식사는 즐겁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아동이 원하는 만큼 주고, 원하는 만큼 먹이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이미 많은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학부모의 선호에 따라 아동들에게 배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 저희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설문조사를 해요. 싫어하는 반찬, 좋아하는 반찬 써요. 싫어하는 반찬 있으면 교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써요.(학부모 09)

> "이 아이는 이걸 안 먹어요" 그러면 "집에서도 안 먹으니까 어린이 집에서 조금이라도 먹게 해주세요" 라던지 어떤 분은 "싫은 건 먹여주지 마세요" 라던지..(학부모 10)

3) 놀이시간: 다양한 욕구에 다층적으로 반응하되 배제시키지 않기

놀이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예상하고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교사들에게 숙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예상된다. 한편 아이들끼리 놀다가 긴장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체벌의 형태로 훈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 깜깜한 방에 가둬주는 건 아니고 같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수치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학부모 08)

역시 이 경우에도 그때의 상황을 부모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사의 그때의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집에 아이가 다쳐서 오면 일과 중에 어떠한 경유에서 상처가 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교사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근거이자 단서로 작용하였다.

> 아이들이 많아서 지들끼리 다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발견을 못하고 집에서도 다치는데, 그거를 일이 있었을 때 키즈노트에 간단하게 적어주면, 좋을 거 같아요. (학부모 09)

4) 낮잠시간: 아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하되, 아동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교사의 근무 환경 조성하기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는 시간은 교사들의 휴식 시간이라는 점이 학부모들을 긴장시키고 있었다. 내 아이가 억지로 자는 것은 동의하지 않으나 그때 교사들이 쉬지 못하면 또한 본인의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하였다. 따라서 이때 보조 인력이 보충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 낮잠시간도 선생님들이 휴식시간이 낮잠시간인거 같아요. 따로 휴식시간을 선생님들한테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애를 재워야 쉴 수 있는거라 그게 배려가 되야 선생님들이 쉴 수가 있을 텐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낮잠시간에만 투여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면 아이들한테 편하게 선생님이 대할 것 같아요.(학부모 01)

5) 대집단 활동 시간: 안전에 대한 보호장치 필요

대집단 활동의 욕구가 없는 경우 강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는 야외 활동 시에 인력의 부족, 케어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대다수였다.

> 어쨌든 다른 대안을 하나는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에게 무조건 강요하는 것 보다는요.(학부모 09)

> 그것 보다는 본인이 케어할 수 있는 상황에 가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야외가 체력소모가 심하죠.(학부모 08)

사. 보육·교육 기관에 바라는 점

1) 교사 자격 기준 강화

교사의 자격 기준이 국가적으로 정해져 있어도 본인의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경우 선별적으로 교사를 진입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그 정도로 교사 자격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가정과의 소통 구조 정착: 키즈노트 사용과 관련한 의견

현재 많은 보육교육기관에서 키즈노트를 사용한다. 아이들의 일상과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앱으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동들의 일상생활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시간동안 본인의 자녀에게 집중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쌓이기도 하였다.

>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5:1 이 되는 만3세는 키즈노트를 안 써요. 7:1 까지는 써줘요. 그런데 15:1은 제가 보기에도 안 쓰는 게 나아요. 애들 보는 것도 바쁜데 그거 쓰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한 달에 한번 사진첩만 올려줘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학부모 09)

> 선생님들 일 줄여주고 애를 들여다 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선생님들이 일을 적게 해야 아이들을 한 번 더 보지 않을까 생각해요.(학부모 10)

> 직장 다녀서 하루 종일 우리 애는 어린이집에 8시 부터 8시까지 있어서 저는 이게 선생님들은 힘들 수도 있을 거 같지만 엄마들 입장에서는 키즈노트를 의무화해서 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학부모 07)

3) 유치원 CCTV 설치 및 소통구조 강화 필요

한편, 학부모들은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이유로 CCTV와 같은 사후 대응 절차가 부재하다는 것을 꼽았다. 이는 사후 대응 절차로 CCTV에 대한 우선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교사에 대한 신뢰 이전에 상황적인 객관적 판단을 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어린이집에 비하여 유치원의 경우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 유치원은 처음에 놀랐던 게, 어린이 집에는 CCTV가 있는데 유치원에는 없더라구요. 모니터링 제도도 없는거 같고 그래서..어린이집에는 작은 상처도 선생님이 봐주셔야 하고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또 선생님들이 원장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분도 권위적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이런 건가부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바뀌고 보면 막혀 있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린이집 보다는 유치원이 소통구조가 막혀있었어요.(학부모 07)

> 주위에서 유치원 다니는 엄마들 들어보면 원장선생님이 어린이집보다 단호하고 보육보다 교육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에 일상생활에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하고, 처음부터 "니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확실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개념 자체가 다르더라구요.(학부모 08)

4) 가해자 처벌 강화와 케이스 스터디 활성화

기관 내 케이스 스터디가 학대의 발생 우려를 낮춘다고 언급하였다.

> 선생님들이 원장이 CCTV를 봐서 선생님의 문제행동을 봐서 클릭을 해서 한 달에 한번 모아놓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걸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게 ...(중략)..랜덤으로 CCTV 일정도 랜덤으로 해서 관찰을 하면서 잘못된 상황을 잡는 게, 지금 하루 동안 하는데 하루 동안 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학부모 06)

5) 기관 환경 개선과 투담임 이상의 교사 배치 요구

복수담임제는 서로 간 견제, 상호 협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 한 공간 한 반에 한 선생님 있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학부모 01)

> 선생님 반에 팀웍이 중요한 거 같아요. 선생님 간에 팀웍이 좋아야 의견교환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할거 같아요.(학부모 07)

> 원의 환경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선생님의 근무환경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학부모 09)

아. 정부 정책에 바라는 점

1)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없애야 함

인력의 부족과 아동수의 과도함은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없애기 위한 정책을 바라고 있었다.

2) 학대 이후 처벌보다 중요한 건 학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적 조건 필요

가) 교사 처우 개선: 스트레스 완화

교사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통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는 복리후생환경의 개선과도 연결된다. 관련하여 학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교사의 근로 환경 개선이라고 할 수 있었다.

스트레스 관리는 필요한 거 같아요. 엄마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한테 예쁜 말도 거칠게 나가는 법인데, 선생님들도 같은 사람인데...(학부모 01)

공간이 넓고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없어보였고, 작년에 이어서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거 보면 직장이 선생님들에게 안정감을 주는구나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더 낫지 않을까 해요. (학부모 10)

나) 자격 기준 강화

또한 모든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요구하였다. 자격 함량에 미달되는 교사가 양성될 수밖에 없는 보육교사 양성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사이버 강의 통해서 보육교사 자격증 따게 만들어놓고,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퀄리티 컨트롤이 안됐겠죠. 그렇게 생각해요.(학부모 07)

다)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교사 1인이 보는 아동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원에 대한 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보조교사가 있어야 된다거나. 선생님이 기저귀를 갈 때 나머지 두 아이는 어떻게 해요. (학부모 02)

라) 개방된 어린이집

무엇보다 어린이집의 개방성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학부모들이 대다수였다. CCTV로는 어린이집의 상황과 분위기를 온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걸 보면 선생님이 아이를 평소에 대하는걸 보면 마음이 놓일거 같아요. 그런걸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학부모 05)

CCTV는 어차피 실시간으로 볼 수 없고, 학대가 일어났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볼 수 있잖아요.(학부모 06)

개방. 상시적으로 보고 대신 교육활동에 방해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는 있어야 되고, 그런다면 선생님들도 알아서 잘 하실 거고, 엄마들도 사소한 거를 가지고 곤두세우고 의심하고 그러질 않을 거 같아요(학부모 07)

4 소결

가. 원장과 교사 비교

원장과 교사는 학대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1) 채용 관련 엄격함 유지, 2) 일정 기간 동안 인턴십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일치한 의견을 보였다. 사전 대응과 관련하여 CCTV 활용에 대해서는 개개인별로 의견 차이가 심했는데 어린이집의 경우 의무화가 되어 있는 이상 이를 활용하여 방어수단 내지 보호 수단으로 사용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원장들 사이에서 특히 지배적이었다.

사전 대응 수단으로 학대 예방 매뉴얼은 있으면 좋겠으나 현실 적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하루 일과 중 아이의 행동 상황을 반영하여 유관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원장과 교사 모두 다수를 차지하였다. 인터뷰 결과를 통해 도출된 공통적으로 바라는 부분은 다음과 같았다. 1) 잠자는 시간에 자지 않는 아이를 다루는 방법, 2) 아동이 대집단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 상처를 발견했을 경우, 4) 또래 상호간 다툼으로 다치거나 아동의 감정이 상했을 경우, 5) 일과 활동 중에 다쳤을 경우, 6) 타임아웃과 같은 훈육의 범위와 수준, 7) 점심시간 혹은 배식할 때 식사 지도 방법, 8) 학대 발생 이후 학부모와의 신뢰소통 구조 등이다.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학대 원인의 가장 큰 요소라는 점에서 원장과 교사가 일치하였고 이를 위한 심리 치료 내지는 상담 프로그램 도입은 원장의 경우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였지만 교사의 경우는 또 다른 업무 부담으로 다가옴을 알 수 있었다.

사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원장의 경우 절차에 따라 움직이겠다, 학부모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견이 팽팽하였으며 부모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때 양 당사자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제3자적 기구의 출현을 바라는 의견도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가장 해결하여야 할 시급한 정부 정책은 한명의 교사가 다루는 아동 수를 줄이는 것(교사 대 아동 비율의 축소), 보조교사 도입, 임금 보조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대 이후 기관의 폐쇄조치, 자격 박탈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학대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 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표 Ⅲ-4-1 원장과 교사 비교

구분	원장	교사
학대 원인	- 업무 환경 열악 - 학대 기준의 광범위화	- 부모의 불신 - 업무 환경 열악 - 학대 기준 강화
학대 유형	- 정서적, 신체적 학대가 다수	- 정서적, 신체적, 언어적 학대, 강요 등
학대 사전 대응 절차	- 사전 사례 회의 - CCTV 주기적 모니터링	- 학부모에게 바로 상황 알려줌
학대 사후 대응 절차	- 법제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듯	- 절차는 알고 있으나 막상 닥치면 당황할 듯함
학대 예방 매뉴얼 내용	- 필요성 인정하나 현실에 적용 가능한 부분들이 필요	- 일과시간별로 학대 유형에 대하여 알려주길 기대
사후 대응 절차에 있어 바라는 것	- 중재 역할 - 객관적 기관의 출현	- CCTV의 객관적 해석 - 중재의 역할
정책적 개선 요구 사항	- 교사 대 아동 수 비율 감소 - 재정적 지원	- 원장과 동일하나 휴게 시간에 대한 요구도 큼

주: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한 것임

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직원 비교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직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점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대상 서비스 연령층의 차이이다. 이는 훈육의 범위와 학대의 종류를 결정하게 하였다. 유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아짐에 따라 신체적 학대보다는 정서적 학대가, 어린이집의 경우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학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방임의 경우 학대의 한 종류로 양 기관 모두 불가피한 경우 발생하였다. 둘째, 스트레스와 업무량의 과중은 학대의 주요 요인이었고 제도적으로 돌보는 아동수가 이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모두 업무의 과도함이 신체적인 피로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유발케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양 기관의 가장 큰 차이는 교사의 자질이었다. 유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사 자격증 취득이 어렵다는 점에 근거하여 어린이집보다는 교사의 능력이나 자질이 검증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반

면에 이 모든 것이 교사의 자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현장으로의 투입 이전에 인적성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양 기관의 교직원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다.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요약하면, 1) 일과 시간 흐름별 행동의 구체적 반영, 2) 언어적 표현의 방법(예: 목소리 톤, 사용하지 않아야 할 언어), 3) 아동 간 중재 방법, 4) 식사 지도 방법 등이 매뉴얼에 담겼으면 하는 욕구를 표출하였다.

표 Ⅲ-4-2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교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대 원인	- 신체적 힘듦 - 업무 환경 열악	- 말을 안들음 - 업무 환경 열악
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가 다수	- 신체적 학대보다 정서적 학대가 다수
학대 사전 대응 절차	- 부모와의 소통 구조를 통해 - 원장을 통해	- 주로 원장을 통해
학대 사후 대응 절차	- CCTV를 통한 해결 주로 진행	- 원장을 통한 해결 주로 진행
학대 예방 매뉴얼 내용	- 일과시간 상세히 다루어 주었으면	-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였으면
사후 대응 절차에 있어 바라는 것	- 중재 - 객관적 증거 확보	- 학부모의 신뢰
정책적 개선 요구 사항	- 근로 환경 개선	- 근로 환경 개선

주: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한 것임

다. 교직원과 학부모 비교

교직원과 학부모는 같은 상황, 다른 인식을 하는 경우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집에서는 사소한 훈육의 방식이라고 하는 행동들을 기관에서 교사가 수행한 경우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강한 반발을 가지고 있었다. 기는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어떠한 행동을 하던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은 기관을 지속적으로 다닐 수 없게 만들었다.

다음으로 신뢰소통 구조의 부재를 상호간 불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키즈노트 혹은 수첩을 활용하여 아동의 일과 상황을 교사와 학부모가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로서는 학부모들이 온전히 아동의 생활을 인지할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전화통화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교사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져 아이들을 온전히 보육 또는 교육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 구조를 반복하고 있었다.

더욱이 CCTV 에 대하여 학부모들은 강한 필요성과 더불어 이 조차 사각지대에 대한 불신이 공존하고 있는 반면, 교직원의 경우 본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 적극적으로 인식하면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았다. 결국 교사의 개별적 인성 내지는 자질이 중요한 상황에서 CCTV는 중요하지 않았으나 학부모의 신뢰를 유일하게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과 관련하여, 필요성에 대하여 90% 이상의 학부모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교직원과의 신뢰소통구조에 대한 엄격성 유지를 1순위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꼽았다. 따라서 매뉴얼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도 '교사와의 즉각적인 소통, 즉각적으로 아동상태 공유' 가 전반적인 의견을 차지하였다. 교직원의 경우도 매뉴얼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나 학부모와 비교하여 현장의 요구가 더욱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원하고 있어 어느 정도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의 경우 교사 내지는 원장의 힘든 점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 매뉴얼이 존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교사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이 매뉴얼보다 우선하여야 한다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학대의 원인에 대해 학부모는 교사의 근로환경이 열악함, 교사의 자질 부족, 원장의 자질 부족 등을 언급하면서 반드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교직원의 경우도 유사한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근로 환경에 대한 열악함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보아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었다.

학대에 대한 사전 예방 내지는 사전 대응에서 학부모의 경우 교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교직원의 경우 심리적인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행 방식에 이견은 있었으나 필요성 인지, 근무 환경 개선, 사례회의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학대에 대한 사후 대응은 학부모의 경우 CCTV 확인이 용이치 않아 다른 기관으로 아무 말 없이 옮긴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현재 기관과 학부모간의 소통구조가 매우 미약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결국 본인들의 의견을 기관에 세세히 이야기하기에 부담스럽고, 현재로서는 객관적으로 본인들의 의견을 들어줄 기구가 없다는 것에 이인하였다. 교직원의 경우 학부모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으로 사후 대응을 하고 있으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미흡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교직원들의 경우는 학부모의 입장과 달리 본인이 학대 의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학대의 의심을 사는 경우가 다반사임을 지적하면서 인식의 개선, 신뢰 회복, 제 3자적 객관적 기구의 개입 등을 바랐다.

정책적 개선에 대한 요구는 양자가 거의 유사하였다.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교사 근로 환경 및 여건 개선, 교사 대 아동 수 비율 축소, 보조교사 투입 등을 언급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Ⅲ-4-3 당사자별 학대 인식과 개선사항 관련 요구

구분	학부모 입장	기관장 입장	교사 입장
학대 원인	- 교사의 근무 환경 열악 - 교사 인성과 자질 - 스트레스	- 교사의 근무 환경 열악 - 교사 인성과 자질 - 스트레스 - 학대 기준의 광범위화	- 교사의 근무 환경 열악 - 교사 인성과 자질 - 스트레스 - 부모의 불신 - 학대 기준 강화
학대 유형	-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학대로 다양	- 다양하고 상황마다 다름	- 다양하고 상황마다 다름
학대 사전 대응 절차	- 교사와의 소통	- 케이스 스터디	- 동료 교사 및 원장과 이야기 나누기 - 학부모와 소통하기
학대 사후 대응 절차	- 무조건 CCTV 열람	- 법제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듯	- 절차는 알고 있으나 막상 닥치면 당황할 듯함
학대 예방 매뉴얼 내용	- 부모와 합의된 일과 시간 공유	- 필요성 인정하나 현실에 적용 가능한 부분들이 필요	- 일과시간별로 학대 유형에 대하여 알려주길 기대
사후 대응 절차에 있어 바라는 것	- 교사 및 원장과 직접 상대하지 않는 객관적 기구 설립	- 중재 역할 - 객관적 기관의 출현	- CCTV의 객관적 해석 - 중재의 역할
정책적 개선 요구 사항	- 교사 근무 환경 개선	- 교사 대 아동 수 비율 감소 재정적 지원	- 원장과 동일하나 휴게 시간에 대한 요구도 큼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Ⅳ

영유아 보육 교육기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및 조기발견체계

1. 매뉴얼 개발 배경
2.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이해[교육편]
3. 기관에서의 실천 방법[실천편]
4.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Ⅳ. 영유아 보육 교육기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및 조기발견체계

1 매뉴얼 개발 배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일 것이다. 최근 무상 보육·교육의 확대 실시로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보육·교육기관(이하 '기관')의 기능이 보편적으로 확대되면서 기관은 제 2의 가정이라고 일컬어 질 만큼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과정에서의 역할과 가치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관에 대한 학부모와 사회의 기대와 요구도 증대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 저출산, 맞벌이 부부 증가 등의 국내 사회·경제적 흐름으로 말미암아 학부모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학부모와 사회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영유아를 해롭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언론에 의해 노출된 기관 내 학대 발생 사례는 학부모와 대중들에게 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해로움의 지속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기관에서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관 내 학대를 예방하고 영유아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제기되었고, 모색 방안의 하나로 현장에서 즉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매뉴얼 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기관 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본 매뉴얼이 제작되었다.

본 매뉴얼은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매뉴얼은 기관 내 종사자인 원장 및 교사, 기타종사자를 직접적인 대상

으로 삼고 있지만, 기관에서의 돌봄과 교육이 학부모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원장-교사-학부모 간의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 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는 발생한 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매뉴얼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영유아의 권리 증진 및 건강한 성장 기반 마련
○ 아동학대사례 검토 및 현장 인터뷰 기반의 실효성 높은 실천 지침 제공
○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 아동을 중심으로 한 원장-교사-부모와 협력과 신뢰로운 교육환경 조성

본 매뉴얼은 기존에 분산되었던 기관 종사자들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훈육 관련 지침들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재구조화하고 학부모·교사·원장의 실질적인 욕구들과 상호 협력 체계를 고려함으로써, 매뉴얼의 통합성-체계성-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매뉴얼이 일선의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본 매뉴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매뉴얼 개발 배경
○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이해 [교육편]
○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실천 방법 [실천편]

본 매뉴얼이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내에서 학부모-교사-원장 간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보호자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기관 내에서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2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이해[교육편]

가. 기관의 역할 이해하기

무상교육 및 누리과정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기관 내에서의 돌봄과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영유아의 보육·교육이 선별적인 차원이 아닌 보편적 차원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은 가정 다음으로 중요한 영유아의 주요 생활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 생활·교육 공간에서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봄과 교육을 받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때때로 영유아는 여러 가지 환경적 또는 개인적 조건으로 인해 기관 내에서 위험에 처해지는 상황에 맞닥뜨려지기도 한다.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해주는 것이 기관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매뉴얼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실제 기관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나. 아동학대 행위 이해하기

기관 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사와 학부모, 원장 모두는 기관 학대의 정의 및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지침을 제공해달라는 요구도가 컸다. 그러나 다소 넓은 수준의 학대행위를 포괄하여 아동학대 정의를 적용하고 있는 국내의 법상,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 또한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행위를 명확히 구체적인 수준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법적 정의에 기초하여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검찰, 사법부 등의 관계자가 상황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아동학대 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내 실정 상 아무리 사소한 부정적 언행 및 행동이라도 반복적으로 행한다면 학대행위자로서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17] 실제 판례 등을 통해 구체적인 학대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17) 자문의견을 바탕으로 정리된 내용이다.

1) 아동학대의 정의

가) 법적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에 의하면,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 양육 ·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 감독하는 자(「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로 정의되고 있다. 흔히 보호자를 부모에 한정하여 생각하기 쉽지만, 법에서는 기관의 교사 및 원장을 비롯하여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거나 보호하는 업무관계 중에 있는 성인 모두를 아동의 ‘보호자’로 간주하고 있다. 법적 정의에 기초해 볼 때, 기관 내 종사자는 영유아의 중요 보호자로서,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관련하여, 기관 종사자들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금지해야 할 행위들에 대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10가지 금지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어, 아동에게 행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이해하게 한다. 해당 금지행위가 다소 광범위한 수준 및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들 행위는 영유아에게 행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표 Ⅳ-2-1 아동복지법 상 금지 행위

	금지 행위(「아동복지법」제17조)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5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6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표 Ⅳ-2-1 계속)

	금지 행위(「아동복지법」제17조)
7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9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liBgcolor1.(2018. 9. 18 인출).

나)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는 아동권리 원칙에 입각하여 아동에게 행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을 법적 금지행위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체크리스트는 어떠한 행위들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이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학대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에 대해 보육·교육기관의 종사자가 더욱 민감성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체크리스트에는 아동권리 침해의 부적절한 행동이 예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 종사자가 이를 통해 스스로의 상황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종사자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아동에게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표 Ⅳ-2-2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18)]

구분	내 용
1	아동에게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하지 않아야 한다. ·아동에게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돼지야!”, “이 못생긴 게”, “멍청아!”, “바보”, “나가죽어라” 등) ·아동을 비판, 비난, 조롱, 모욕, 우롱하지 않아야 한다. (“넌 혼자 이것도 못하니?”, “너처럼 못하는 아이는 처음 봤다”며 무시하는 행위 등)
2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음식을 먹는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연령이 낮은 반으로 보내서 아동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18) 본 체크리스트는 부정적 경험을 얼마나 자주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권리 침해 행동을 보다 명시적으로 나타내주기 위하여, 빈도를 제외하고 각 경험 문항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표현하여 제시하였음.

(표 Ⅳ-2-2 계속)

구분	내 용
3	아동에게 위협을 주는 언어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숫자 다 셀 때까지 해!", "엄마한테 일찍 데리러 오지 말라고 할거야!", "동생반이나 원장반으로 보내버릴거야!", "엄마, 아빠한테 이를거야!", "집으로 내쫓을거야!", 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아동이 바깥놀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
4	아동에게 폭력적인 장면을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 아동에게 종사자 간 싸움 장면을 노출시키는 행위, 원장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는 경우 등
5	(자, 회초리, 긴 막대 등의) 도구로 아동을 위협하지 말아야 한다.
6	화장실, 창고 등 아무도 없는 빈 장소에 벌을 세우기 위해 아동을 가두지 말아야 한다.
7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아동을 재촉하거나 공포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아동에게 고함을 지르지 말아야 한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혼자 놔두고 갈 거야!"
8	아동의 신체부위를 때리지 말아야 한다. 맨손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랑의 매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때린 행위 등
9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은 입히지 않았지만, 고의적으로 아동의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아동의 팔을 당겨 서두르게 하는 행위, 아동의 머리나 엉덩이를 치며 행동을 중지시키는 행위,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입을 벌려 먹이는 행위, 아동을 꼬집거나 잡고 흔드는 행위, 목을 잡고 조르는 행위 등
10	낮잠시간이나 놀이시간 등에 아동을 혼자 있게 하거나 아동 간 다툼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11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아동이 적절한 음식을 충분히 제공받도록 하지 않거나, 식사 때가 되어도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상한 음식을 아동에게 주는 행위 등
12	아동을 위험상황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아동이 위험한 물건(칼, 압정, 핀 등)을 가지고 놀아도 내버려두는 행위, 아동이 자는 낮잠시간에 책상 위에 의자를 두는 행위,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는 행위, 아동이 흘린 음식을 먹게 하거나 기저귀를 긴 시간동안 갈아주지 않는 행위 등
13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치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이 몸이 아프다고 해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행위 등
14	과도하게 신체접촉을 하거나 아동의 신체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기저귀갈이 할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생식기를 고의적으로 노출시키거나 만지는 행위, 사람들 앞에서 속옷을 갈아입히거나 용변을 보도록 하는 행위
15	음란비디오나 책을 아동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

자료: 보건복지부(2016).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조치 매뉴얼(어린이집용).

2) 기관 아동학대 이해하기

관계 법령과 체크리스트에서 규정된 아동학대 행위들은 다소 규범적이고 광범위하다. 기관에서 실제 발생했던 아동학대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영유아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을 확인할 수 있고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행위들의 특징 및 제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최근 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최근 3개년 동안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는 각 해마다 발생했었던 아동학대사례의 약 5% 내외로 확인된다.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 발생했던 아동학대사례 중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수준은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발생 수준에 비해 약 2.5~3배 정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어린이집은 39,000여 곳이 운영되고 있고 유치원은 9,500여 곳이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율이 4대 1정도임을 감안할 때[19], 최근 3년간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시설 수(규모) 대비 실제 아동학대 발생 비율은 어린이집(2016년 학대 발생 수는 전체 어린이집 중의 1.5%에 해당)에서보다 유치원(2016년 학대 발생 수는 전체 유치원 중의 2.6%에 해당)에서 다소 높았던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아동학대 발생 건수의 증가 수준은 유치원에서보다 어린이집에서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 경향이 있었다. 무엇보다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이 교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보육·교유기관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 대책의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표 Ⅳ-2-3 최근 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2014년-2016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아동학대사례	10,027(100%)		11,715건(100.0%)		18,700건(100.0%)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발생 건(비율)	396건(4%) (어린이집 300건, 유치원 96건)		639건(5.5%) (어린이집 432건, 유치원 207건)		848건(4.5%) (어린이집 601건, 유치원 247건)	
학대행위자	보육 교직원 295 (2.9%)	유치원 교직원 99[20] (1%)	보육 교직원 427 (3.6%)	유치원 교직원 203 (1.7%)	보육 교직원 587 (3.1%)	유치원 교직원 240 (1.3%)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9) 유치원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oe.go.kr/main.do), 2018. 9. 21. 추출
20) 학대행위자의 수(99)가 발생 건 수(96건)에 비해 많은 것은 1건의 아동학대사례에서 여러 명의 학대행위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임.

나) 기관 내 아동학대사례 실재

(1) 학대유형별 세부 행위

국내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를 최초로 분석한 연구보고서(김기현 외, 2013)에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던 실제 아동학대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학대 행위[21]들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발생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신체학대의 경우에는 '손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꼬집기 또는 입술로 아동을 물었던' 행동이 가장 빈번했었고 정서학대의 경우에는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과 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행동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아동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던 정서학대의 행동 역시 전체 정서학대사례의 약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었다. 방임의 경우에는 '교사가 아동을 혼자 둔' 행동이 가장 빈번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제 사례에 대한 정보는 기관 내 행위 중 어떠한 행위들이 학대행위로 판정되었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동시에 각각의 행위들이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실제 일어났었고 이후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인지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이 행위들이 앞서 살펴본 아동권리 자가 체크리스트의 기본이 되는 행위들이자 학대 행위이기 때문에 교사 스스로의 주의와 점검을 도울 수 있다.

표 Ⅳ-2-4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 유형별 발생사례 예시

구분	학대 행위 유형	실제 예시 사례	발생 비율 (%)
신체 학대	• 손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기/꼬집기/물기	다른 아동을 깨물어 피 나게 한 만 2세 아동의 엉덩이를 2차례 손으로 때리고 깨물며 볼을 꼬집음	60.0
	• 도구로 때리기	만 6세 아동이 한글 모른다는 이유로 가위와 연필로 10번 정도 찌름	22.4
	• 흔들기/잡아당기기/밀치기	친구와 싸운 만 3세 아동 억지로 팔 끌고 가서 4~5차례 양쪽 어깨 흔들며 확 젖힘	12.5
	• 발로 차기/때리기 • 물건던지기 • 특정 상황에서 해 입히기	음주운전으로 가로수 및 축대를 들이받아 아동에게 해를 끼침	5.1
	소 계		100

21) 해당 학대행위 구분은 미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시스템의 학대 기록 분석도구(MCRAI)를 바탕으로 구축된 것임(김기현 외, 2013).

(표 Ⅳ-2-4 계속)

구분	학대 행위 유형	실제 예시 사례	발생 비율 (%)
정서 학대	• 아동의 인격 및 감정과 기분 무시 또는 모욕	매운 음식 섭취 시 물 못 마시게 하고, 밥 먹는 속도 느리면 연령 낮은 반으로 보내서 아동이 수치심을 느끼게 함	33.3
	• 공포분위기 조성	아동에게 소리를 질러 공포분위기 조성	31.6
	• 아동을 가둠	아동이 울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불 꺼진 화장실이나 방에 가둠	12.3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 언어 표현 • 내쫓거나 버리겠다고 위협 • 교사 간 싸움에 노출 • 시설 내 폭력에 노출 •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및 강요	10~19개월 된 유아에게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원장과 학부모간 심한 폭언이 오가는 상황을 원아들에게 노출	22.8
	소 계		100
방임	• 교사가 아동을 혼자 둠	등원 시 교사가 아동의 하차를 확인하지 못해 만4세 아동이 어린이집 차량에 약 6시간 동안 방치	29.0
	• 부적절한 음식 제공 • 불균형 급식 • 음식 신선도와 청결 문제	상한 음식(썩은 고구마)을 아동에게 제공하거나 불균형 간식(과자 등) 제공으로 인해 일부 아동들의 아토피 문제 심각	25.8
	• 충분한 대체 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채 아동을 혼자 둠	교사가 아동을 재운 뒤 30분 이상 자리 부재한 사이 만 2세 아동이 깨어나 교사 찾아 2~30분 정도 교실 돌다가 소변을 지림	16.1
	• 안전하지 않은 환경 • 실내외 시설 및 설비에 안전장치 미설치 및 위험요소 존재	교구장을 아동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입구에 세로로 세워놓아 아동을 위험상황에 방치시킴	13.0
	• 현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실 등이 청결하지 못함 •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	곰팡이 핀 장난감을 아동에게 제공하였으며 원내 수족구 걸린 아동을 등원시켜 다른 아동들이 전염됨	13.0
	• 필요한 의료처치 비제공	24시간 어린이집에서 관리 소홀로 아동들 아토피 및 습진 등 피부병 생겼으나 적절한 피부과 병원 방문하지 않아 병 심각	10.3
	소 계		100

자료: 김기현 외(2013). 2013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 Ⅰ: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p. 28-29, 33-35.

최근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정선아 외, 2017), 해당 보고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다양한 구체적 행위 양상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체학대의 경우 '꿀밤'에

서부터 '세게 흔들기', '머리를 세게 당겨서 땋기' 등 아동과의 신체 접촉을 통해 실제적인 학대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포함하고 있고, 정서학대의 경우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기'에서부터 '억지로 먹이기', '다른 반 보내기', '분무기 뿌리기' 등 아동이 심리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표 Ⅳ-2-5 어린이집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구체적 행위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구체적 행위 유형	- 꿀밤 - 아동의 머리끼리 부딪히기 - 엉덩이, 얼굴, 팔, 머리, 어깨, 뺨 등 때리기 - 얼굴 잡고 흔들기 - 밀쳐 넘어뜨리기 - 발로 밀치거나 차기, 머리 밀치기 - 꼬집기 - 손을 꽉 잡기 - 손바닥을 손톱으로 누르기 - 바닥에 강하게 내려놓기 - 세게 흔들기 - 물기 - 아동 얼굴에 의료용 테이프로 공갈젖꼭지를 붙이기 - 핀셋으로 찌르기 - 아동이 한 문제행동 따라 하기(깨물기, 얼굴 때리기, 신발로 때리기, 장난감으로 때리기, 깔고 앉기) - 체벌하기(앉았다 일어났다 70회, 자로 발바닥 때리기, 제자리 뛰기) - 머리를 세게 잡아당겨서 땋기 - 사고 시 대처하지 않기 - 사고 후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기 - 아동이 울 때까지 때리기	- 소리 지르기 - 장시간 분리하기 -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기 - 아동이 잘 때 몸 위에 담요나 쿠션 올려두기 - 방치하기 - 화장실, 빈 교실 등에 가두기 - 한 자리에서 생각하기(타임아웃)[22] - 장시간 무시하기 -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 두거나 누르기 - 다른 반으로 보내기 - 아동의 작품을 찢거나 구겨버리기 - 억지로 먹이기 - 입 안에 있는 것을 억지로 빼기 - 흘린 음식 다시 먹이기 - 식판을 치며 공포 분위기 조성하기 - 아동의 옷에 일부러 음식을 묻히기 - 쏟은 음식물 옆에 아동 눕히고 사진 찍기 - 어두운 교실에서 밥 먹이기 - 부적절한 언어 사용하기 -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는 종교 활동 실시 -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기 - 분무기 뿌리기 - 차량에 두고 내리기 - 하루 종일 바운서에 묶어 놓기 - 배달 음식(짜장면 등)으로 급식 시행하기 -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하기 - 학대 행위 목격하게 하기 - 부적절한 언어사용하기 - 밥, 국, 죽, 반찬을 모두 섞어 먹이기 - 낮잠시간에 아동 방치하기

자료: 정선아 외(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심층 분석.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p. 128-129.

22) 타임아웃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훈육지침 자료에 의하면, 아동의 '연령 당 1분'을 기준으로 타임아웃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데 반해, 해당 자료에서는 타임아웃이 정서학대 행위로 제시되고 있음.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타임아웃 자체가 부적절한 아동행동지도 방안이라기보다는 실제 어린이집에서 타임아웃이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장시간 또는 아동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장소에서 시행된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음.

(2) 최근 발생한 학대사례의 실재

최근 1~2년 이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담당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아동학대 담당 사건들[23] 역시 위의 아동학대 행위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FGI(집단 인터뷰)를 통해 5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실제 담당했던 기관 내 아동학대사례들의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해당 사례들의 특성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학대행위자는 교사로 확인되었다. '비위생적 환경 및 식재료의 문제' 등의 기관 차원적 방임 상황에서는 원장이 학대행위자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교사가 학대행위자일 경우의 방임 행위는 '아동을 차량이나 교실에 방치' 하는 등의 보다 구체적인 행위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정서학대의 경우 학대로 인정된 3건 모두가 신체학대와 함께 발생한 사례로, 교사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아동의 몸을 들어 올리는' 위협적인 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기분이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 것이 학대행위로 인정되었다. 신체학대의 경우에는 '아동을 흔들거나 던지거나 잡아당기는 행위', '아동을 도구로 때리거나 머리를 긁거나 때리는 행위', '턱을 잡고 흔든다거나 아동을 돌돌 말아서 못 움직이게 한 행위' 등의 행위들이 학대행위로 인정되었다.

표 Ⅳ-2-6 최근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사례 예시

구분	학대 행위자	피해아동		학대 내용	
		총 수	연령	학대유형	학대 행위 및 상황
1	☑ 교사	7	만 2세~ 만 4세	☑ 신체학대	세게 흔듦, 도구로 때림, 아동 던짐
				☑ 정서학대	공포분위기 조성
2	☑ 교사 (3명)	7	만 세 ~ 만 세	☑ 신체학대	머리를 세게 긁음, 머리 때림
				☑ 정서학대	아동 몸을 들어 올림
3	☑ 교사	1	만 4세	☑ 신체학대	아동의 팔을 잡고 흔드는 행위
				☑ 정서학대	고의적으로 반 내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의 차별행위
4	☑ 원장 ☑ 교사	4	만 0세 ~ 만 1세	☑ 신체학대	얼굴과 온몸을 이불로 돌돌 말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함

23) 해당 자료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진행 시, 최근 2년 동안 기관에서 발생했던 학대사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요청하여 확보한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다만, 해당 사례의 경우 기관 내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을 담당한 일부 지역의 현장전문가로부터 요청하여 얻은 자료로서,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특징이나 경향성의 큰 틀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학대 행위들이 발생하였었는지를 파악하여 학대 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구분	학대 행위자	피해아동		학대 내용	
		총 수	연령	학대유형	학대 행위 및 상황
5	☑ 교사	1	만 3세	☑ 신체학대	아동의 신체 잡아당김
6	☑ 교사	2	만 세 ~ 만 세	☑ 신체학대	신체 때림, 턱 잡고 흔듦
7	☑ 원장	1	만 5세	☑ 신체학대	아동의 손가락을 묾
8	☑ 교사	1	만 2세	☑ 신체학대	아동의 배와 사타구니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강하게 밀침
9	☑ 교사 (2명)	1	만 세	☑ 방임	차량방치
10	☑ 원장	10	만 2세 ~ 만 4세	☑ 방임	썩은 식재료 사용, 방역작업 미실시
11	☑ 원장	1	만11개월	☑ 방임	하루의 절반을 문이 닫힌 방에서 시간을 보냄
12	☑ 교사	2	만 2세 ~ 만 5세	☑ 방임	아동들을 반 내에 약 10분간 방치(사례판단위원회 결정)
13	☑ 교사 (2명)	1	만 3세	☑ 방임	교사(투담임)가 아동을 50분간 방안에 방치함

자료: 5개 FGI 참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제공사례 재정리

(3) 기관의 학대사례들에 대한 판례

최근 기관 내에서 학대와 관련하여 판정이 이루어진 사례들은 교사와 원장 모두에게 실형 및 벌금이 선고된 사례를 비롯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기각된 실증 사례,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취소처분이 취소된 사례까지 확인된다. 즉, 최근의 기관 내 학대사례들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엄격한 판정과 보육교사 및 원장을 보호하는 판정까지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가) 교사 실형 및 원장 벌금형 사례

영유아에게 상해를 입힌 교사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었고 원장은 지도·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음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례] 기관의 아동학대 판례(사건번호 2013고단457)[24]

- 【최종판결】 어린이집 교사 오씨는 징역 8월,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사건개요】 2012년 11월 대전 동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오씨는 갓 돌을 지난 피해자 신양이 밥을 삼키지 않자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양 쪽 귀를 잡아당기고, 이마와 볼을 때려 전치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

【최종판결】
A어린이집 이모(27)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원장 김모(47)씨에게는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되었다.

【사건개요-원장】
토하거나 구역질하는 아동에게 강제로 식사를 먹이는 등 수차례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이 씨는 지난해 6월부터 40일간 부천 A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돌보던 아동에게 총 45회에 걸쳐 폭행을 하거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아동이 앉은 의자를 일부러 잡아빼서 넘어뜨리거나 간식이 담긴 식기를 아동에게 던지거나 하는 등, 훈육의 방법과 수단을 넘은 물리력을 가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이 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격리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아동들을 괴롭혔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아동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로 아동을 폭행하거나 정서적인 학대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수의 피해아동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 아동 연령이 범행 당시 만 3세로 물리적·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동의 인격형성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실형 선고했다.

【사건개요-원장】
원장 김 씨에 대해서 판사는 "이 씨의 범행이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김 씨가 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리 감독상의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 발생 이전에 다른 학부모가 제기한 민원이 있었고, 그 이후에 특별한 관리조치나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 교사 벌금형 및 원장 무죄 사례

영유아에게 상해를 입힌 교사에 대한 원장의 관리·감독 소홀 혐의가 원장에게 항상 벌금형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으로 내려지지는 않았다. 최근의 사례에서 원장은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판례] 교사 벌금형 및 원장 무죄 사례[25)]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고인1에게 일부 인정된 죄명: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상고[각공2017상, 211]
[춘천지법 2017.1.19. 선고 2015노 945판결]

【판시사항】
-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인 피해자들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교사와 원장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교사의 행동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유죄를 선고
- 어린이집 원장은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판결요지】
- 교사의 체벌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체벌의 강도와 두려움을 고려할 때 피고인 갑의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

24)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case&wr_id=8236(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2018.9.21.추출)

당하나,
- 원장은 직접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수료하도록 지도한 점, 매주 어린이집 교사들과 회의하면서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직접 지도하고 어린이집 교육사정을 검토·관리한 점, 평소 어린이집 복도를 돌아다니며 아동들의 교육상황을 관찰하였고 학부모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였으며, 교사들에게 업무일지, 교육일지를 쓰게 하여 이를 보며 교육상황을 점검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 문】
- 어린이집 교사는 벌금 500만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 어린이집 원장은 무죄

【범죄사실-보육교사】
- 교사는 아동3(여, 당시 4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을 2회 때려 입술이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였다.
- 교사는 아동4(여, 당시 4세)의 귀를 잡아당겨 피가 맺히게 하였다.
- 교사는 아동5(당시 4세)가 율동연습을 하던 중 틀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꿀밤을 주듯이 때렸다.
- 교사는 아동1(당시 5세)이 가져온 생일떡을 책상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아동1이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아동 2(당시 4세)에게 떡을 주었다는 이유로 아동2에게 떡을 꺼내라고 하면서 아동2와 아동1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각 1회씩 때렸다.

특히 최근에는 원장에 대한 원심의 벌금형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장이 무죄를 판결 받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교사의 학대행위를 신고할 경우 원장이나 기관이 도리어 해를 입을 수 있다는 기존의 편견을 깨뜨리는 판례이기도 하다.

[판례] 교사 벌금 및 원장 무죄 사례[26)]
- 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노252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미간행]

【항소 이유】
-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
-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주 문】
- 어린이집 교사는 벌금 200만원
- 어린이집 원장은 무죄

【판결요지】
- 원장이 교사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장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여 간접적으로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을 감시하고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주어 아동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 점, 원감

25) 춘천지방법원 2017.1.19. 선고 2015노945 판결 : 상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고인1에게일부인정된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을 통하여 보육교사들의 개별교육,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방지,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사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점, 소속 교사들에 대하여 중앙보육정보센터에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받게 한 점, 3일에 한번 씩 상담일지를 살펴보아 어린이집 소속 아동 학부모와의 교류를 확인한 점,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배식시간,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걸쳐 수업 교실을 둘러보는 등으로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정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고, 단순히 원장이 CCTV영상을 매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일 보육교사들과 그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범죄사실】
- 어린이집 교사는 2013. 9. 25. 11:12경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아동1(3세)이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앉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아동1을 우측 발로 밀치고, 같은 날 12:39경 아동1이 밥을 잘 먹지 않고 딴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오른 손으로 1회 때리고, 다음 날인 09:28경 아동1의 모가 적어 보낸 원아수첩에 "아이가 이마를 다쳤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보고 화가 나 왼손으로 아동1의 이마 부위 상처를 확인한 후 머리를 뒤로 세게 밀치고, 같은 날 09:33경 아동1이 교실 출입문 쪽에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아동1을 밀치고, 같은 일시경 교실에서 아동1의 모가 아동1의 보육에 관하여 수회 지적하는 등 까다롭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업 준비시간 및 수업시간 동안 다른 원생들은 교사 근처에 모여 앉게 하였음에도 아동1만 다른 원생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교사의 뒷편에 따로 떨어져 앉게 하여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50경 교실에서 아동1이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아 복도에 놓아두고 아동1을 복도로 내보낸 다음 수저통을 복도로 던져 아동1로 하여금 혼자 복도에서 쭈그린 상태로 밥을 먹게 하고, 같은 날 14:04경 교실에서 아동1이 낮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책을 빼앗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포괄하여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원장의 자격정지 처분 사례

몇 년 전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의 행위가 학대로 판정되어 원장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원장은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심 그대로 원장의 자격정지 처분을 유지시킨 사례도 확인된다. 즉, 명백한 학대 상황에서 법적 규제는 강력하게 발휘되었다.

[재결례] 기관 아동학대사례의 재결례 사례[27]
-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위원회 제2012-278호) 2012.9.18 기각

가)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시설 인가를 받고 운영하던 중 2012.5.17. 한 아동이 점심 먹기를 거부하고 놀이터에서 보육교사 없이 혼자 놀다가 놀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아동에 대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하원 시키는 등 아동보육에 대한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26) 대구지방법원 2015.4.23. 선고 2014노252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27)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case&wr_id=8288 (중앙아동보호전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위반 시 3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이 규정되어 있는 바,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지고, 그에 따라 영유아를 홀로 방치하지 말고 곁에서 발생 가능한 위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율이 낮아지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23개월 된 아동을 놀이터에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와 이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하원시킨 사실은 경미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다) 00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개요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의 등을 때린 것이 아니라 토닥여주었다고 하였으나 임상적으로 볼 때 여러 차례 손바닥으로 등을 가격하여 나타난 상처이며, 사건 정황상으로 볼 때 청구인(학대행위의심자)이 아동을 신체 학대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아동보육에 대한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하였다거나 달리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교사 자격취소 처분 취소 사례[28]

최근의 판례에서는 교사의 자격취소 처분이 기소된 사실만으로 판결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사의 자격취소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확인된다. 이는 일종의 교사보호의 판례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판례]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 취소[29]
-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 취소
[공2018상, 992]

【판시사항】
-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또는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이
-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만이 아니라,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단서는 보육교사가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일부터 10년간 보육교사 자격을 다시 교부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매우 엄격한 제재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 이처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력한 제재적 처분의 근거 규정을 해석할 때는 엄격해석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여기에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헌법의 대원칙이므로(헌법 제27조 제4항), 기소된 사실만으로 제재적 처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렇다면 유죄의 확정판결도 없이 단순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나아가 여기서 '처벌'은 과벌(과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문기관 홈페이지 2018.9.21.추출)

28) 해당 사례는 학대행위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의 선고유예 판정이 자격정지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어 있기에, 교사의 학대 혐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공유하고자 함.

한다고 새길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유】
- 원심은, 원고가 2014. 1. 23.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5. 4. 14.에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원고에 대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상태였을 뿐이고,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는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구 아동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후 원고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기관에서의 학대행위자 특징 및 원인

가) 기관에서의 학대행위자 특징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기관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교사가 대부분으로, 전체 학대행위자 중 보육교직원의 비율이 유치원교직원의 비율에 비해 2.5배~3배 정도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기관에서 영유아를 학대했던 행위자들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으로 인해 학대를 행한 비율이 50% 내외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특별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던 행위자들이 약 30% 내외였다. 유치원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여러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동들을 교실에서 지도하다보면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과정을 통해 교사가 영유아 돌봄 및 교육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사 양성과정의 내용과 질도 향후 아동을 대하는 태도 및 상호작용과 관련됨을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어(Arnett, 1989)[30], 교육의 내용과 질이 현장의 민감성과 전문성을 담보하여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행위자 특성 중 그 다음으로는 두드러진 특성은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과 '성격 및 기질적인 문제'였다. 영유아의 경우 그 어느 연령대에 비해 특히

29) 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두64371 판결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30) 22개 데이케어센터의 59명 돌봄자를 비교육 집단, 대학 내 2개의 교육과정 이수 집단, 4개의 교육과정 이수 집단, 4년 대학의 아동교육 정규과정 이수 집단,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눠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집단에서 아동을 덜 권위적으로 대했고 아동과 더 높은 긍정적 상호작용을 보였으며 아동에게 더욱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에서 4년 대학의 아동교육 정규과정 이수 집단의 돌봄자들에게서 이러한 특징이 가장 두드러졌다(Arnett, 1989).

더욱 주의 깊고 밀도 있는 돌봄을 필요로 하기에, 아동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하고 교사 스스로의 기질 조절에 더욱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크게는 국가적 차원에서, 작게는 기관 내 차원에서 교사들이 직면한 스트레스적인 상황과 심리적인 어려움 등을 해결하고 지지해주기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체계 등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Ⅳ-2-7 최근 기관에서의 학대행위자 특징

구분	2014		2015		2016	
아동학대사례	10,027건(100.0%)		11,715건(100.0%)		18,700건(100.0%)	
학대행위자	보육 교직원 295건 (2.9%)	유치원 교직원 99건 (1%)	보육 교직원 427건 (3.6%)	유치원 교직원 203건 (1.7%)	보육 교직원 587건 (3.1%)	유치원 교직원 240건 (1.3%)
학대행위자 특성 *중복포함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274(33.8%)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196(66.4%)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297(51.6%)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47(21.5%)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496(52.8%)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166(49.1%)
	성격 및 기질문제 61(7.5%)	성격 및 기질문제 5(1.7%)	성격 및 기질문제 34(5.9%)	성격 및 기질문제 1(0.5%)	성격 및 기질문제 87(9.3%)	성격 및 기질문제 4(1.2%)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51(6.3%)	특성없음 (27.5%)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46(8.0%)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3(1.4%)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99(10.5)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6(1.8%)
	전과력 1(0.1%)	파악안됨 13(4.4%)	위생문제 1(0.2%)	특성없음 165(75.3%)	위생문제 1(0.1%)	전과력 13(3.8%)
	성문제 1(0.1%)		특성없음 129(22.4%)	파악안됨 3(1.4%)	질환문제 1(0.1%)	성문제 13(3.8%)
	부부 및 가족갈등 3(0.4%)		파악안됨 69(12.0%)		특성없음 229(24.4%)	특성없음 129(38.2%)
	특성없음 368(45.4%)				파악안됨 25(2.7%)	파악안됨 7(2.1%)
	파악안됨 51(6.3%)					
계	810 (100%)	295 (100%)	576 (100.0%)	219 (100.0%)	939 (100.0%)	338 (100.0%)
전체	2,149(100.0%)		1,631(100.0%)		2522(100.0%)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나) 기관에서의 학대 관련 요인

앞서 살펴본 최근 3년간의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행위자의 특성에 대한 정보는 학대행위자의 양육 부족과 기질적인 부분, 스트레스 등이 영유아에 대한 학대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하는 반면, 그 외의 환경적인 측면이나 제도적인 측면들에 대한 관련성을 추측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보호자-교사-원장의 인터뷰를 통해 이해해 본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모습은 수치가 보여준 이면의 모습들을 더욱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보호자와 교사, 원장이 인지하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관련 요인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인터뷰 내용에 기초하여 이후에 제시하는 아동학대 관련 요인은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이해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여러 관계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경향성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이러한 요소들이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아동학대 발생 요인으로 인지될 수도 있음을 공유하는 차원으로 이해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원장과 교사, 보호자 모두에게서 '교사의 자질'은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현 보육·교육 실습과정은 교사의 자질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보육·교육 현장은 미숙한 신입 교사가 때론 단독으로 보육·교육을 실행하고 있으며 자격제도 시 교사의 자질을 면밀하게 파악할 만한 제도 및 장치가 없기 때문에, 교사의 자질이 아동학대 발생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더해 원장과 교사의 경우 아동의 독특한 기질이 보육과 교육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으며, 때문에 원장의 경우에는 교사의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교사는 서류 업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이 경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어렵고 힘든 돌봄 상황에 대한 동료교사들 간의 지지체계 및 멘토링이 부재한 것 역시 영유아에 대한 교사의 학대행위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교사들의 경우 이러한 지지체계 마련 및 원내 분위기, 서류 업무 간소화 등의 사안은 원장의 재량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교사의 자질과 함께 교사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도 공감했으며, 폐쇄적인 원의 분위기가 학대 상황과도 맞물릴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학부모는 원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가 학대 상황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

며, 학대의심 상황에서 원장과 교사의 미숙한 대처가 보호자의 불신을 가중시켜 고소·고발의 상황까지 이어지게 하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표 Ⅳ-2-8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관련 요인[31]

구분	원장	교사	보호자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학대 발생 원인 및 상황	• 교사 자질(책임감, 참을성) • 교사의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 능력 • 아동 기질	• 교사 자질(책임감, 참을성) • 과중한 업무(서류작업) • 아동-교사 비율 • 지지체계 부족 • 아동 기질	• 교사 자질(책임감, 참을성) • 과중한 업무(서류작업) • 아동-교사 비율 • 폐쇄적 원 분위기	• 과중한 업무(서류작업) • 원장과 교사의 미숙한 대처

주: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한 것임

그러나 실상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아동학대 사건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이슈화될 만큼 심각하고 명확한 사례도 있지만 모호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례들도 많다.[32] 때문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경찰, 사법부 등 다양한 관계자가 종합적으로 아동학대사건의 발생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무엇보다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행동은 아동학대로 판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종합적으로 늘 교사 스스로, 그리고 동료교사와의 슈퍼바이징 등을 통한 자가 및 동료 점검이 필요하다. 실제로 동료 교사들 간의 사례 논의 및 CCTV를 통한 모니터링 점검 등이 아동에 대한 교사의 학대행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서로의 지지를 통해 많은 격려와 도움을 받게 된다고 교사들은 이야기하였다.

3 기관에서의 실천 방법[실천편]

가. 기관에서 아동을 둘러싼 협력 체계[33]

기관에서의 아동을 건강하게 돌보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원장과 교사 등의 종사

31) 해당 요인은 인터뷰 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제시된 아동학대 원인과 함께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인지하는 학대 발생 원인과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구성함.
32) 해당 내용은 자문의견을 통해 작성됨.
33) 해당 협력체계는 보호자-교사-원장을 비롯하여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아동학대사례를 담당했던 상담원들의 인터뷰 내용과 문헌조사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안한 체계로, 각 대상자의 역할과 요구도 역시 인터뷰 내용과 문헌조사 내용을 기초로 정리되었음을 밝히고자 함.

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한 자녀 증가 및 무상교육 실시로 인해 기관에서의 아동 돌봄과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학부모의 욕구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으로 자녀의 수가 많지 않다보니,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요구 수준은 더욱 커지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 아동 보육과 교육에 대한 기준 및 가치는 보호자마다 다를 수 있고 교사 간, 원장 간에도 상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을 중심으로 가장 밀접하게 근접해 있는 중요 인적 자원들(학부모, 교사, 원장) 간에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돌봄 및 교육 방향성을 설정해 내가는 것이 영유아의 권리 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는 데 중요할 수 있다. 물론 영유아가 자라는 과정에서 관여되는 구성원들은 각 계 전문가, 복지센터 종사자, 교육부 관계자 등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일 수 있지만 본 매뉴얼에서는 기관 내에서 아동의 생활과 가장 근접해 있는 학부모, 교사, 원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기관에서 아동을 둘러싼 협력 체계 필요성

기관의 아동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교사 및 원장을 비롯한 종사자의 역할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체계(학부모, 원장, 교사)의 역할과 협력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저출산 추세와 학부모 욕구의 다양성으로 인해 아동 돌봄 및 교육에 대한 욕구 불충족의 상황에서는 학부모와 기관 종사자 간의 불신이 가중될 수 있다. 만약 아동의 문제적인 행동이 있을 경우 교사 개인이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아동의 행동 교정을 위해서는 학부모와 협력하여 공동의 교육 및 돌봄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도 이러한 목표와 방향성을 함께 적용해야 아동도 혼란스럽지 않게 행동 교정을 해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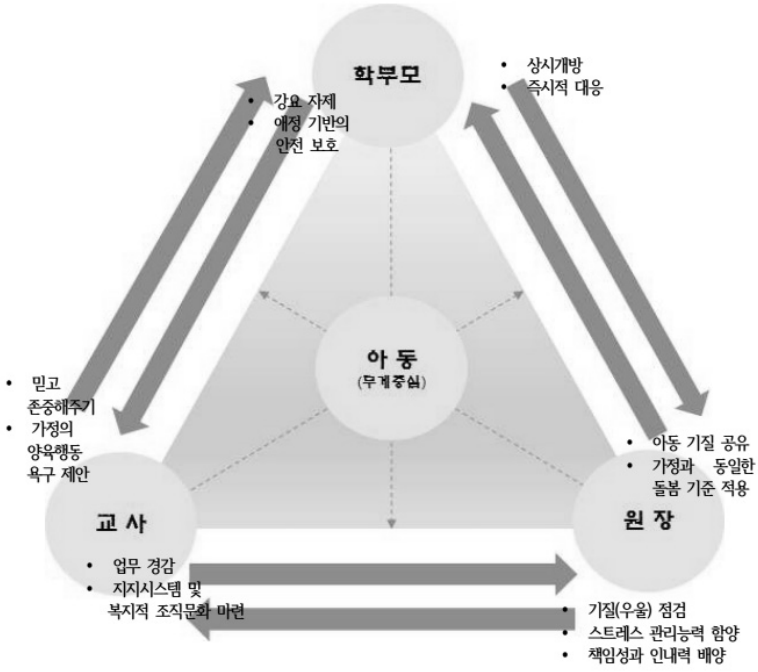
이러한 의미에서, 기관에서의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학부모-교사-원장 개개인의 역할과 서로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기관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건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동 또는 종사자의 개인적인 기질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관계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문제들이 맞닿아 있다. 아동을 둘러싼 대상자들 간의 협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어느 한 대상자의 역할이 강조되거나 부각되어, 또는 역할이 약화되거나 배제되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지게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관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

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아동을 둘러싼 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2) 기관에서의 돌봄과 교육을 위한 협력 파트너십

기관 내에서 아동을 둘러싼 돌봄과 교육에 대한 협력 체계는 마치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에 아동이 위치한 것과 같다.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은 각 세 개의 꼭짓점(학부모, 교사, 원장)이 각각의 위치에서 기준을 잡고 다른 두 꼭짓점의 가운데 점을 정확히 지날 때, 비로소 온전한 무게중심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림 Ⅳ-3-1 보육·교육을 위한 협력 파트너십



주1. 정삼각형 구조로, 아동이 정삼각형의 무게중심 안에 자리 잡음.
주2. 아동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인터뷰 및 문헌조사 내용에 기초하여 생성

이는 기관에서의 아동 돌봄과 교육은 아동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아동 중심의 보육·교육은 아동을 둘러싼 지지체계인 학부모, 교사, 원장 모두의 역할을 바탕으

로 서로 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 협력 체계 내 이뤄져야 할 파트너십은 역할과 욕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며, 이러한 역할과 욕구는 인터뷰 내용과 문헌들을 통해 정리되었다[34].

가) 아동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은 인권을 가진다. 아동도 마땅히 예외일 수 없다. 말할 수 없어도, 표현이 서툴러도 아동은 인권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므로 아동 역시 성인과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동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 성인보다 미숙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고유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되기 보다는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되거나 단순히 보호,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쉽다. 하지만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학부모와 국가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학부모, 성인은 아동이 마땅히 권리의 주체로서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를 위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기관에서는 원장-교사-부모의 삼각체계 내에 아동을 중심에 두고, 아동권리 관점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긍정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아동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교육 및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을 개별화하고 아동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아동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들은 대체로 보편적인 발달단계에 따라 성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또는 발달단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특별한 지도와 관심이 필요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이를 위해 아동의 발달단계별 특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아동 개개인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추어 개별화하여 보육·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 아동의 튀는 행동이나 돌출 행동 등의 문제적인 행동과 상황은 각 발달단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행동임을 협력 체계 구성원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행동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부모-교사-원장 간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34) 협력 체계 내의 역할 및 욕구는 각 대상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문헌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임.

나) 학부모

[욕구] 최근에 집중 보도되었던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아동학대사건을 접하면서 학부모는 '설마 우리 아이도..' 라는 두려움과 의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부모는 실제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기관 내의 원장과 교사를 의심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다만, 학부모는 학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와 원장에 대한 최소한의 욕구를 가질 수 있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자녀가 특정 활동을 이행하지 않을 때(예를 들어, 편식을 한다거나 낮잠을 거부하는 등)와 같은 특정의 상황에서 교사가 아동에게 특정의 활동을 이행할 것에 대해 몇 번 부드럽게 권유한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응하지 않는다면 아동에게 강제하지 말고 아동 의사를 존중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강했다. 한편 학부모의 경우, 기관의 개방적인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내 아동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외부 관찰 등)에서 학부모들이 상시적으로 자녀의 생활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다면 신뢰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기관의 개방적 분위기는 원장의 재량이 크다는 점에서 이는 원장에 대한 학부모의 욕구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역할] 학부모로서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렵듯이,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도 여러 명의 아동을 돌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자녀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내 자녀의 선생님을 믿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교사에 대한 학부모와 지나친 간섭과 비신임은 교사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자칫 학대로도 연결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의 예기치 못한 행동이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 교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교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학부모의 돌봄 및 교육 기대를 교사와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대감과 가치가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때 아동이 혼란스럽지 않게 행동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녀에 대한 키즈노트나 자녀의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 보다 교사가 자녀에게 따뜻하고 애정적인 눈 마주침을 한 번 더 해주는 것이 자녀의 정서에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 교사

[욕구] 과중한 업무 부담은 업무의 집중도를 저해하고 부족한 인력지원은 아동에게 충분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특히 특정 아동의 돌발적이거나 문제적인 행동에 교사가 집중할 때 또 다른 영유아들은 방임의 상태에 놓일 수도 있고 아동의 돌발행동이 반복될 때 교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낮잠시간이나 점심시간 등과 같은 특정의 일과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은 다양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의 대응 방안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와 바람 역시 다양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 개인이 혼자 직접적으로 개선하기는 제한적이므로 교사는 해당 상황을 대해서 학부모 및 원장, 동료 교사와 함께 공유하고 아동이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들을 함께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교사들은 이러한 방안이 가정과 기관 내에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만 아동의 문제적인 행동이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가정 내 학부모의 협력이 부재하다면 아동의 행동이 개선되는 수준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돌봄 어려움에 대한 동료 집단 간 지지체계 및 모니터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은 이러한 원내 분위기를 이끌고 관련 체제를 마련하는 원장의 역량과 방침도 중요하다고도 보았다.

[역할] 근무기관의 유형(유치원 vs. 어린이집) 및 성격(국공립 vs. 사설 vs. 민간)이 어떠하든, 자격증 취득 과정이 어떠하든, 교사의 돌봄과 교육은 아동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에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하다.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게 유지하고 아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은 교사의 역할을 이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교사 개인의 부정적 기분이 아동에게 투영되지 않도록 늘 자가 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사 한 명의 잘못된 행동이 교사 한 명의 잘못된 행동이 보육·교육을 실천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교사는 진솔하고 성실하게 역할을 이행할 필요도 있다.

또한, 한 자녀 증가와 아동 돌봄 및 교육에 대한 기대 증가로 학부모의 욕구는 다양할 수 있기에, 학부모의 욕구를 파악하고 함께 협력하여 아동 돌봄 및 교육을 행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교사로서 아동의 돌봄 및 교육에 대한 원칙과 가치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칙과 가치관이 절대적일 순 없다. 아동 돌봄 및 교육에 대

한 원칙과 가치관은 아동의 기질 및 발달 특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교사 간, 학부모 간, 원장 간에도 다양할 수 있으므로, 협력을 통해 원칙과 가치관을 보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욕구가 많은 학부모와는 지속적인 수시상담으로 돌봄 및 교육의 방향성을 수정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변화무쌍한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여 침착하고 참을성 있게 대응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라) 원장

[욕구] 교사의 기질이나 성격은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돌봄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아동들은 변화무쌍하여 잠시도 한 눈을 팔 틈을 주지 않으며 아동과의 일과는 크고 작은 이벤트들의 반복이다. 이러한 아동의 특성을 기반으로 보육·교육을 행한다는 점에서 원장은 교사가 이러한 아동의 행동을 책임감 있게 지켜봐주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원장은 교사가 스트레스에 예민하고 우울 수준이 강하다면 이러한 교사의 기질적 특성이 아동과의 활동 과정 중에 투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교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교사가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에 대해 늘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원장은 또한 만약 교사가 아동의 기질 및 행동적 측면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다면, 학부모와 함께 논의 및 협력하여 대안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부모마다 양육방식이나 훈육에 대한 수준 및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동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함께 협력적인 구조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무엇보다도 원장은 기관에서의 돌봄과 교육 기준을 가정 내에서의 돌봄과 교육 기준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학부모들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가정과는 다른 엄격한 잣대로 교사의 행동을 학대행위로 몰아가는 일부 학부모의 그릇된 행동과 사회 분위기는 교사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재고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역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사에 대한 복지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행복한 일터가 즐겁고 생산적인 돌봄과 교육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교사들이 어려운 돌봄 상황을 공유하고 조언 받을 수 있도록 교사 간 지지모임과 멘토링(또는 슈퍼바

이징)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스러운 지지체계 내에서 교사들 간에 상호 격려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분위기와 체계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또한, 과중한 업무 부담은 교사가 아동을 애정적으로 지도하고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교사가 휴게 시간에 충분히 쉬고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휴게 시간이 교사에게 문서 등의 잡무 처리 시간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한편, 학부모와 개방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폐쇄적인 원의 분위기는 학부모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영유아의 긍정적 발달과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관 내 종사자들과 학부모와의 협력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며 협력하는 것은 더욱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국외에서도 아동의 가족과의 협력 파트너십은 중요하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아일랜드의 NCCA(2009)는 영유아를 둘러싼 체계 간의 협력 파트너십이 영유아를 비롯하여 학부모와 교사(원장) 모두에게 강점이 있다고 제안했다(이재연 외, 2015). 이 강점은 다음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Ⅳ-3-1 영유아를 둘러싼 협력 파트너십의 강점

학부모	기관(교사, 원장)	영유아
• 가치롭고 존중되는 느낌 • 자녀의 학습과 발달에 더욱 많은 관여 • 자신 가족의 가치, 실행, 전통과 믿음 이해에 대한 존중 느낌 • 기관방문 및 원내 종사자들 간의 얘기와 계획에 대한 부담 감소 • 자녀의 가정 밖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녀 학습 및 발달을 더욱 효과적 수행 • 자녀 양육기술에 대한 자신감 고조	• 영유아와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시키며, 이를 통해 영유아를 위한 더욱 좋은 학습 유도 • 학부모의 기술과 전문성에 대해 공유 • 가족의 가치, 전통, 믿음에 대해 영유아를 더욱 참여시키고 기관 내에서의 소속감 발달 및 향상 • 정서적으로 보다 안정된 환경을 영유아에게 제공	• 안정감을 느끼고 더욱 많은 교육적 혜택 • 자신감 향상 • 가정과 기관의 협력으로 학습 능력 향상 • 기관 내에서 가정 내의 언어 교감 통해 영유아의 언어 능력 향상 • 풍부한 서비스 제공

자료: National Council for Curriculum and Assessment(2009) (이재연 외, 2015:163 재인용)

이후에 제시될 영유아의 발달단계 이해, 기관에서의 일과에 따른 실천방법과 훈육 실천방법 등은 기관 내 종사자들에게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정보 및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이 저변에는 아동을 중심으로 한 가족과

의 협력 파트너십이 전제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이러한 파트너십이 아동을 잘 돌보고 교육하기 위해 필요함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영유아 권리 및 발달단계별 특성

영유아의 경우, 여느 발달단계에 비해서도 급성장의 과정에 있고 각 발달과정에서의 결과가 이후의 발달 결과에까지 지속적으로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성인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기관의 종사자는 영유아의 각 발달단계를 이해하고 적정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해 나가야 한다.

1) 영유아의 권리 이해

영유아, 즉 아동은 양육과 훈육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이다. 영유아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상교육 및 누리과정의 확대 실시로 오늘날의 보육과 교육은 영유아의 권리로 인식되었는데, 이 권리는 국제아동권리협약(UNCRC)의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기반하며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4대 권리로 구성된다(보건복지부, 2017; 이소희, 2018).

- ○ 생존권: 아동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 발달권: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을 통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 ○ 보호권: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이어야 한다.
- ○ 참여권: 아동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그것을 존중 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각 발달단계별 영유아의 특성 이해

영유아의 발달단계를 이해하는 것은 아동의 행동이 교사를 일부러 힘들게 하거나 반항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면, 아동의 특성을 특성 그 자체로 존중하게 될 수 있다. 영아는 보다 안전한 환경과 수용적인 태도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필요하며, 유아는 자율성, 주도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통제를 통한 보다 최적의 생활지도 및 교육과 직결될 수 있다. 각 발달단계별 아동 특징과 그에 따른 교사의 대처 및 목표는 다음과 같다.

표 Ⅳ-3-2 각 발달단계별 영유아의 특성

단계	특 징	대 처	목 표
만0세 (교사1 vs. 아동3)	• 불편함/불쾌함/불만족감을 찡얼거림/얼굴표정/울음 등으로 표현	• 영아의 신호에 신속하고 민감하며 친절한 반응	• 생리적 욕구 이해 • 기질 존중을 통한 상호성 이해 • 낯가림과 분리불안을 애착형성 과정으로 이해
	• 잦은수면/쿠잉(옹알이)/한단어 말하기 • 순한/까다로운/겁 많은 기질 등	• 울음/손짓/접촉/옹알이에 대해 눈 맞춤/응답	
	• 특정 대상(주 양육자)과의 친밀함으로 낯선 사람에 대한 공포/불안감	• 공포/불안감 수용하고 애착형성을 위해 면밀한 관찰과 민감한 상호작용	
만1세 (교사1 vs. 아동5)	• 이동성/활동성 강화 통한 자율성 발달 • 근육과 오감 토대로 환경을 탐색·경험	• 오감 및 근육 발달 증진 위한 놀잇감 충분히 제공	• 탐색적 욕구 이해 • 영아가 물 수 있음을 인지 • 울음이 영아의 의사소통의 한 방법임을 인지 • 낯가림과 분리불안 완화하고 애착관계 형성 노력
	• 입으로 주변 사물 탐색 • 이가 나기 시작 • 타인을 물기도 함	• 치아발육기나 깨물어도 다치지 않을 위생적이고 부드러운 놀잇감 제공 • 무는 흉내 및 행동 자제	
	• 젖은 기저귀/배고픔/아픔/관심 등을 이유로 울면서 의사를 표현	• 울음의 원인을 최선으로 파악하여 욕구 해결 노력	
	• 낯가림과 양육자의 부재로 인해 분리불안을 보이며 놀이 참가 거부/비적응	• 지속적인 울음/비적응을 발달 특성으로 인정하고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기	
만2세 (교사1 vs. 아동7)	• 강한 자기주장/고집스러움/잦은 기분변화/변덕스러움/격렬한 정서표현 • 욕구 좌절에 분노와 좌절의 감정을 표출하며 심한 고집 부리거나 떼를 씀	• 떼쓰기 등의 감정 무시 및 억압보다는 마음을 읽어주고 협상 통해 문제 해결하기	• 긍정적 자아인식과 자율성 형성 시기임을 인지 •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를 이해하고 규정하는 행위임을 인지
	• '나'의 개념이 발달하면서 자기중심적이며 내 것과 친구의 것을 구별 • 소유 개념이 발달하지 않아서 공유하기를 강요할 시 더욱 고집스러워 짐 • 타인의 입장에서 사물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움	• 많은 수의 놀잇감 제공하여 자기 소유권 충족 • 스스로와 친구 모두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소유하기 위해 기다려야 함을 인지시키기	

(표 Ⅳ-3-2 계속)

단계	특 징	대 처	목 표
만3세 (교사1 vs. 아동15)	• 스스로 식사하기/옷 입기/대소변 가리기 등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자율성 발달 • 성인의 간섭에 반항하기도 함	• 자기 주도적인 활동이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인정받는 분위기 조성	• 자기주장과 경쟁 통해 긍정적 자신감과 주도성을 형성하는 시기임을 인지 • 규범을 알게 되어 도덕적 판단을 해나가는 시기임을 인지
	• 자기중심적으로 상상력이 풍부 • 현실과 상상 세계 구분하지 못하거나 바람을 강하게 표현	• 유아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도덕적 판단 보다는 유아의 내면을 이해하기	
만4세 (교사1 vs. 아동20)	• 타인의 감정 지각하고 이해하기 시작	• 또래와의 상호작용 격려하고 공감의 장 마련	• 공감능력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조절능력 향상되는 시기임을 인지
	• 좌절 및 하고 싫지 않은 것을 하면서 참을성을 기르며 이에 대한 보상 인지	• 충동 절제나 인내 통해 일을 해내면 아낌없는 격려	
	• 약속 및 규칙을 이해하며 도덕성 발달 • 수치심/죄의식 생길 수 있어 거짓말 등의 방어 기제를 나타내기도 함	• 약속과 규칙을 지키지 못했을 시 비난보다는 다음에 더 잘하도록 격려	• 약속 및 규칙에 대한 도덕성 및 친사회적 기술이 발달 및 습득되는 시기임을 인지 • 놀이 과정 및 행동 특징 이해
	• 나누고 도와주는 행동 • 협동놀이/감정이입 등을 통해 친사회적 기술 형성 • 놀이 친구로 수용되어 함께 어울림	• 칭찬/격려/반복 학습 • 놀이의 욕구 파악하여 원하는 놀기를 자율적 탐색하고 참여하도록 장려	
만5세	• 성기/성역할에 대한 관심 및 행동 증가	• 성에 대한 죄책감을 형성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질책 자제	• 성기와 성 역할 등의 성적 관심을 수용 및 이해 • 우정에 대한 욕구 강화 이해 • 소속감과 집단 정체감 형성 시기임을 인지
	•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술 배우고 긍정적/부정적 행동의 강화/제어	•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격려	
	• 소속감과 영향력 확인 위해 고의적인 방해(공격성) 행동을 하기도 함 • 언어(욕하기, 심하게 놀리기, 고자질하기 등)/신체(때리기, 물건 빼앗기 등)	• 갈등 해결을 위해 협상이나 분배 방식 등 대안적 행동 제시 • 억압된 정서를 풀 수 있는 동적인 활동 제공	

출처: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5), '함께 배워요' 자료 재구성

다. 기관에서의 일과에 따른 실천 방법

1) 기관에서의 일과에 따른 이슈와 필요 자원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 교사들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은 어떠한 상황들일까? 앞서 살펴본 아동학대사례를 포함하여, 교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할 때, 교사들이 아동을 돌보거나 교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상황은 낮잠시간, 식사시간, 놀이시간, 전이시간, 등·하원시간 등의 순으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 대한 공유는 교사들이 아동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나만 힘든 상황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동질감을 얻는 데 중요하다. 지지적인 체계는 교사의 심리적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적 이슈와 이를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원 및 방안은 여러 측면에 걸쳐 다양하게 제안되었다[35].

영유아를 보육·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적인 상황에서 교사 및 원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력지원 및 서류작업 간소화, 가정과의 연계지도 등을 꼽혔다. 또한 아동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체 공간의 마련과 기관 내의 충분한 시설을 제공하여 아동들의 안전과 갈등을 방지하는 것 역시 중요한 필요 자원으로 꼽혔다.

표 Ⅳ-3-3 기관 일과에서의 이슈와 필요 요소

문제 이슈		구체적 상황	필요 자원 및 방안
낮잠 시간	• 영유아 개인차 수용과 업무 병행	• 낮잠시간에 교사의 업무 병행하는 구조 • 낮잠시간 개인차가 있는 영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용한 놀이 진행하게 되면 교사의 업무(화장실 가기 등 포함) 불가	• 인력 지원 • 서류업무 축소
	• 영유아 낮잠시간을 교사 휴게시간으로 적용	• 휴게시간에 인력 추가 배치 안 되어, 교사 1명이 낮잠 시간에 영유아를 돌봄 • 누리보조 선생님이 존재하여도 모든 반을 모두 돌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님	• 인력지원 • 휴게시간의 효율적 적용 및 사용
	• 학부모 욕구 다양성	• 낮잠을 재우지 말라거나 특정 시간에 낮잠을 재워달라는 학부모의 요구 • 잠투정 심한 아동, 잠을 자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한 학부모 욕구 다양	• 낮잠시간에 대한 학부모 교육 • 가정과 연계지도
식사 시간	• 식사태도 및 습관	• 편식을 하거나 식사 거부 상황 • 돌아다니거나 식사를 혼자 먹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	• 가정과 연계지도 • 인력지원 • 아동특징 및 발달단계 이해
	• 식사 속도 차	• 늦게 먹는 아동이 있을 경우 다음 활동으로의 연계가 지연 • 빠르게 식사를 마친 아동이 떠들거나 뛰어다닐 때의 상황	• 정적활동 사전 준비 부모 식사 도우미 및 교사 인력 지원
	• 안전 위험 노출	• 식사 공간(교실)에서 놀이와 식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상황	• 식사와 놀이 공간 분리

35) 해당 자료는 교사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내용과 연구협력진 5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임.

(표 Ⅳ-3-3 계속)

문제 이슈		구체적 상황	필요 자원 및 방안
놀이 시간	• 안전 위험 노출	• 교실을 이탈하거나 위험한 놀이 행동을 하거나 실내 몸놀이가 아동 간 몸싸움으로 고조	• 실외활동 대체 공간 확보 필요
	• 돌출 행동	• 또래 및 교사를 고의적으로 깨무는 등의 공격적 행동보이며 감정조절 어려운 아동	• 지역사회 전문가 및 가정과 연계지도
	• 갈등 상황	• 또래의 놀잇감을 빼앗거나 또래의 놀이를 방해하는 등 갈등상황을 만듦	• 충분한 놀잇감 제공 • 놀이규칙 정하고 사회성기술 반복지도 • 가정과 연계지도
	• 개별적 놀이 상호작용, 지원 및 갈등 상황 중재	• 영아의 경우 발달에 따른 개인차가 커서 개별적 상호작용 및 지원이 더욱 필요 • 유아의 경우 필요한 자료 및 비품 지원과 혼자 노는 아동을 격려해야 하는 상황	• 질 높은 상호작용과 놀이 확장을 위한 인력 지원
전이 시간	• 놀이 지속과 다음 활동 분주함	• 놀이를 계속하고 싶어 한다거나 다음활동(산책, 바깥놀이) 준비 시 분주해짐	• 일과 운영에 교사 재량 및 융통성 부여 • 놀이규칙 반복학습
	• 정리정돈	• 정리를 하지 않으려 하거나 배회하거나 일부러 정리를 회피하려는 상황	• 놀잇감 정리 간소화 • 놀이규칙 반복학습
	• 집단 기다리기	• 집단으로 화장실 가거나 기다리기 어려워하며 아동 간 자리다툼 상황	• 시설 수 늘리기 • 보조 인력 배치
등·하원시간	• 복합적 사건 발생	• 또래 간 싸움, 학부모면담, 뛰어다니는 영유아 등 복합적 상황이 한꺼번에 발생	• 등하원시 부모 규칙 협조 필요
	• 등·하원 아동의 속도 차	• 늦게 등·하원 아동 관심 시 다른 아동들만 남겨지게 되는 상황	• 등·하원 전담인력 배치
	• 안전 문제	• 도보 이용 시 줄을 이탈하거나, 차량 내외에서 장난을 치는 상황	• 지속적 안전 지도 • 등·하원 전담인력 배치
	• 등원 및 부모와 분리 거부	• 학부모와 분리 거부하는 아동을 교사에게 맡기고 가버리는 경우 및 등원 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아동이 등원	• 가정과 연계지도

주: 교사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내용과 연구협력진 5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임.

2) 기관 일과에서의 실천 방법

가) 교사 기본 행동 강령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힘든 상황에서 어떠한 훈육을 행하는 것이 좋을지 교사들은 고민될 수 있다. 아동의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상황에서 지침 요령이 제공된다면 교사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다. 일과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리고 진행한 이후에 교사 스스로는

상시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여 아동에게 부정적 감정을 투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사 기본 행동 강령]

아동도 인권이 있음을 인지하고, 성인처럼 동등하게 권리를 존중해줄 수 있어야 한다.

강한 어투 및 거친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내용이 부정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교사의 어투와 표현 자체에 아동이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과한 행동이나 표현 역시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상시적인 자기 점검으로 스트레스 및 부정적 감정을 아동에게 투영하지 말아야 한다.

(일과 진행 전) 오늘 아동과의 일과를 침착하게 보낼 만큼 나의 정서는 안정적인가? (만약, 정서가 안정적이지 않다면, 이에 대해 다른 동료 및 원장과 공유하고 대체 인력 투입 및 동료 교사의 감독·제재 요청 등)

(일과 진행 후) 오늘 아동과의 일과 중 과한 행동 및 거친 표현은 없었는가?(동료 교사와의 토의 및 CCTV 모니터링 활용)

[아동에 대한 이해 지침]

아동의 발달단계를 이해하고, 아동과의 일과 생활 중에서 힘든 상황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아동과의 생활은 예상치 못한 늘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아동이 성장하고 배우는 과정에는 아동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지지해줄 어른을 필요로 한다.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교사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어른 중 한 사람으로서 아동의 행동을 긍정적이고 지지적으로 이끌며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방식으로 인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아동의 각 연령대별 상이한 발달적 욕구와 능력에 맞추어 행동을 이끄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효율적인 지도 전략은 아동의 기질 역시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아동을 지도하기 위한 훈육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의 각 연령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기관 일과에서의 실천 방법

앞서 살펴 본 영유아 보육·교육 과정에서의 이슈와 필요를 고려하여 일과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적 상황들과 그에 따른 실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이 실천방법은 기존의 교육 자료와 연구협력진이 제안해준 사항들을 고려하여 제안되었다.

표 Ⅳ-3-4 기관 일과에서의 실천 방법

일과흐름	아동 특성	발생 상황	실천 방법
등·하원 시간	• 학부모와의 분리 및 원내 생활에 대한 적응 필요	아동의 등·하원 안전 확인 ☞ 등원 아동 체크 후 미등원시 확인(기관 → 학부모) ☞ 하원 아동 체크 후 미하원시 확인(학부모 → 기관)	
		•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동	억지로 떼어 놓을 시 불안감 가중,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애정적 관심
		• 울거나 칭얼거리면서 오는 아동	몸과 기분 상태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상태에 대해 공감
		• 원내 있기 싫다고 떼쓰는 아동	어려운 상황 공감, 시간을 점차 늘려가며 적응토록 격려
		• 복합적 상황	우선순위(다친 유아 먼저살피기) 정하기
배뇨(배변), 손씻기 시간	• 방광 미성숙 시기로 화장실 자주 가기도 함 • 화장실 자주가기는 유아기의 대표적인 불안 행동 • 예민한 아동들은 원에서의 배뇨 및 배변활동 불편 가능	• 배뇨(배변)활동 어려워하는 아동	불안 및 스트레스 상황이 원인인지 확인 변비 및 통증 유무 점검하고, 아픈 곳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 연계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 조성
		• 지정된 시간 외에 배뇨(배변)를 원하거나 잦은 배뇨(배변) 활동을 보이는 아동	불안이나 스트레스 상황이 원인인지 확인 전이시간 이용하여 배변활동이 충분하고 원활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제공 부정적 반응은 수치심이나 낮은 자존감과 직결되므로 부정적은 반응 지양
		• 별도의 배뇨(배변) 시간을 통해 선생님의 관심을 원하는 아동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 애착 대상에 대해 혼자서 차지하고 싶은 아동의 마음을 공감 다른 활동 시간을 통해 충분히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애정적 관심
		• 배뇨(배변)를 실수한 아동	방광이나 항문의 잔여물 모두 배출 엉덩이와 다리 등 신체를 깨끗이 씻기고 젖은 옷은 헹군 후 담아 가정에 보냄

(표 Ⅳ-3-4 계속)

일과흐름	아동 특성	발생 상황	실천 방법
급·간식 시간	• 낯선 음식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 가능 • 소근육 미발달로 숟가락 사용 미숙 가능 • 몸이 아프거나 기분에 따라 식욕 저해 가능 • 가정과 협력하여 방안 모색, 공통된 식사습관 목표 설정	• 급·간식을 거부하는 아동	급식과 간식의 시간 간격 점검 기차놀이, 비행기 놀이 등 활용하여 식사 시간의 즐거움 제공 얼마만큼 먹을 수 있는지 스스로 정하게 한 이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격려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아동 의견 존중하고 학부모와 해당 사항에 대해 방향성 설정
		• 급·간식 어려워하는 아동	숟가락질 또는 홀로 식사 어려운 아동은 교사가 개별적 도움 제공 크기 및 식감에 따른 어려움 아동의 경우 잔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으로 제공
		• 편식 아동	익숙하지 않은 음식에 거부는 새로운 음식에 친숙해지도록 시각 및 후각 활동 장려 가정 내의 편식 음식이라면 강제하지 말고 학부모와 (1-2회 권장, 비섭취 등) 협의
		• 시간 지체 아동	급·간식 시간 내에서만 급·간식이 가능한 규칙을 아동이 충분히 숙지토록 안내
전이 시간	• 욕구 지연시간이 짧음 •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함	• 순서 기다리기 및 줄을 서는 것이 어려운 아동	화장실 가기, 양치질하기, 식사 배식하기 등의 동시 진행보다는 유동적 조정 가벼운 활동 참여하면서 순서 기다리기 기다리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조정
정리 정돈 시간	• 장난감 정리 방법을 모르거나 하기 싫어 회피할 수 있음 • 놀이를 갑자기 마무리 지을 경우 쉽게 전환 어려움	•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 아동 • 놀이시간을 더 갖기를 원하는 아동	놀이 시간의 충분성 검토 연령에 적합한 환경 조성 여부 점검 다수를 향한 지시어보다 정리해야 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안내 영아의 경우 하나의 영역만 정리하도록 정리 습관화 목표 다음 활동을 위한 놀이시간이 끝남을 안내, 5분 전에라도 미리 안내하여 놀이를 끝낼 수 있는 시간 여유 제공 역할활동(참새가 블록을 치우기 힘들어 하니 독수리가 되어 도와주자 등) 통해 유도
낮잠 시간	• 기질적으로 에너지 수준이 높으면 낮잠이 어려울 수 있음	• 잠들지 못하는 아동 • 조그만 소리에 깨는 아동 • 오래 자는 아동 • 금방 깨는 아동	예민한 아동의 경우 밝기, 소음, 이불 등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환경 개선 영아의 경우 개별습관(업혀서 자기, 공갈 젖꼭지 물기, 함께 자기 등)에 따라 가정과 연계하여 친숙한 환경 조성 낮잠 전 충분히 에너지 발산 낮잠을 못 자거나 일찍 깨는 아동은 한쪽에서 조용히 활동하도록 배려

자료: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5) '함께 배워요' 자료와 연구협력진 5인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합하여 재구성

라. 기관에서의 영유아에 대한 훈육 실천 방법[36]

1) 보육·교육 환경에서 훈육을 위한 기본 실천 전략 및 방법

아동의 각 발달단계에 대한 특성 이해와 함께 아동이 보여주는 특징이나 문제적인 행동들은 전형적으로 어린 나이에 나타났다가 안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문제적인 상황이나 아동의 문제적인 행동에서 교사의 과잉반응은 해당 상황과 행동을 개선하는 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외의 연구(Arnold et al., 1998)[37]에 따르면, 교사의 과잉반응은 아동의 문제적인 행동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했고 오히려 아동이 보이는 공격성 또는 규칙 비준수의 행동을 무시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거나 보상할 때, 아동들의 긍정적인 행동 수준이 증가되었다고 보고된다.

훈육을 실행할 때에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아동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이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규칙을 유지하면서 좋은 본보기의 행동을 격려하거나 구체적인 격려, 명확한 선택지를 제공해주는 것 등의 전략과 방법을 통해 아동과 소통하는 훈육을 해야 한다.

표 Ⅳ-3-5 보육·교육 환경에서 훈육하기 위한 기본 실천 전략 및 방법

실천 전략	실천 방법
이해하기 쉽고 간단한 규칙 유지	• 아이들과 함께 규칙을 만들고 이 규칙을 자주 반복 ('서로 도와주기',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기' 등)
무슨 뜻인지 말하기	• 가급적 '하지마세요' 대신에 '하세요'를 사용 (예, '뛰지 마세요' 대신에 '천천히 걸으세요'라고 말하기) • 아이들을 훈육할 때, 단어를 신중히 선택하고 문장을 짧고 간단하게 유지하고 제시해주기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말하기	• 보통 그냥 말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 아이들은 말에 집중을 잘 못하므로. 훈육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아동의 반응을 기다려주고 얘기를 경청해 주기

36)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6)의「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보건복지부(2016)의「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조치 매뉴얼(어린이집용)」과 미국 eXtention(https://articles.extension.org/, 2018. 9.6, 9.14 추출)에서 제시한 훈육 방법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37) 데이케어센터 8개 반의 16명 교사와 145명이 참여한 연구에서, 선생님의 과잉태도는 아동의 문제적인 행동을 고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기록된다. 오히려 유사 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교사가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서는 과잉반응하지 않고 긍정적 행동에 반응을 보여주었을 때, 아동의 긍정적인 행동이 강화되었고(Brown et al., 1965), 규정을 준수했을 때 보상하고 준수하지 않았을 때 무시하니 규정을 준수하는 행동 수준이 더욱 높아졌다(Swiezy et al., 1992).

(표 Ⅳ-3-5 계속)

실천 전략	실천 방법
좋은 본보기가 되기	• 아이들은 성인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므로, 좋은 본보기 되기
좋은 본보기의 아동을 칭찬해주기	• 아이들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서로에게서도 많은 것을 배우므로, 서로에게 어떻게 양보하고 친절히 대하는 지를 배울 수 있도록 칭찬해주기
간단하고 명확한 선택지 주기	•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선택지 주기 •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toddler)은 빨간색 컵과 초록색 컵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사육사 역할을 할 건지 조종사 역할을 할 건지 선택 가능
아이들을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지적할 때 다른 아이들의 앞이 아닌, 사적인 공간에서 말하기 • 규칙에 관한 이유를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아이들이 다음에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얘기를 나누어 보기
착한 아이에게 집중이 가도록 해주기	•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주목을 받게 하는 것보다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주목을 받게 하기 • 매일매일 아이들 각각에게 격려를 해주기 • 아이들이 뭔가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그 행동에 대해 언급해주기
구체적으로 격려해주기	• 단지 '잘했어', '아름다운 그림이네'와 같은 일반적인 칭찬보다는 무엇을 옳게 했는지, 아이들이 왜 자랑스러운 지 구체적으로 말해주기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놀이 활동을 이용하기	• 어린이용 연극에서 캐릭터가 되어 아이들에게 좋은 매너를 사용하고 친절해지는 방법을 보여주기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 가르쳐주기	• 사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기술로, 어린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의 감정을 이하는 것이 어렵지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학교 갈 나이의 아이들에게는 4가지 단계의 사과방법을 가르쳐주기 1) 다른 아이를 보기 2) 그 아이의 이름을 말하기 3) "미안하다"고 말하기 4) 이유를 말하기
문제행동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가르쳐주기	• 만약 아이들이 음식을 바닥에 던진다면 아이에게 빗자루를 주고 그것을 어떻게 청소하는 지를 보여주기 • 만약 아이들이 벽에 낙서를 한다면, 아이에게 벽을 청소할 수 있는 걸레를 주기

자료: eXtention 홈페이지., https://articles.extension.org/pages/25703/basic-tips-child-care-providers-can-use-to-guide-childrens-behavior(2018. 9. 14. 추출하여 재구조화)

2) 영유아에 대한 훈육방법 정하기[38)]

영유아를 훈육하는 것은 보육·교육기관의 교사가 마주치는 가장 큰 난제일 수 있다. 난제의 상황 속에서 교사는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격려하는 방법, 잘못

38) https://articles.extension.org/pages/25701/encouragement-is-more-effective-than-praise-in-guiding-childrens-behavior(2018.9.6., 9.14 추출하여 재구조화)

된 행동을 막는 방법,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훈육 방법 중 적합한 훈육방법을 골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훈육]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 환경에서 잘못된 행동(아동의 고의성 없는 실수가 아닌 행동)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적절한 훈육의 예]

교사가 1회성으로 아동에게 '나쁜 짓을 하는 어린이는 경찰에 잡아간대요.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으니 경찰아저씨한테 혼내라고 얘기 해야겠다' 하였고 이에 아동이 울음

[합리적인 훈육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아동의 행동에 대해 화난 상태나 복수를 하기 위한 상태에서의 체벌
아동이 한 행동의 대가로 아동을 때리는 것
(예, 아동이 다른 형제나 친구를 때렸을 때, '너도 맞아 보고 아파봐야 다시는 때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복수의 의도로 체벌을 하는 것)

부적절한 정서 반응
(아동의 고의성 없는 실수에 목욕적, 경멸적, 비난, 비아냥 등의 언어사용)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나 신체적인 해를 가함
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체벌 상황
('맞을래'라고 하거나 둔탁한 물건 또는 도구 등을 들고 협박하는 행위)

- 훈육 시 어떠한 도구 사용도 지양해야 하며, 맨손으로 상흔(멍, 손자국, 긁힘 등)을 발생시키거나 머리, 얼굴 등의 부위를 때려서는 안 됨.

안전하게 영유아를 보호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영유아는 때로는 빨리 움직이고, 물건을 입에 넣고,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던지고, 등반하고 숨기를 좋아할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것 만지지 마", "저리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답이 될 수 없다. 아동들이 잘 조직되고 안전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은 돌봄과 교육을 격려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훈육의 방법을 정할 때 다음의 것들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격려하기

격려는 실제로 아동의 자신감을 키우는 데 칭찬보다 효과적이다. 칭찬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실제로 아동의 자존감을 낮추고 아동들이 더 경쟁적이고 덜 협동적으로 만든다.

[격려와 칭찬의 차이점]

칭찬과 격려는 매우 다르다. 칭찬은 성인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종종 "선(좋은 것, 착한 것)"과 같은 판단을 포함한다. 칭찬받는 아동들은 어른들을 기쁘게 하려고 행동할 수도 있다. 그에 반해, 격려는 판단하지 않는다. 격려는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하지만 평가하지는 않는다. "퍼즐을 다 완성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다"와 같은 문구는 격려의 예이다. 격려를 듣는 아동은 교사가 그들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더 강한 자기 동기와 자부심을 갖게 된다.

② 잘못된 행동을 막기

아동이 잘못하면, 환경이 문제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고 적절한 장난감을 제공하면 아이들이 학습에 관심을 갖게 되고 행동 문제를 줄일 수 있을 수 있다. 잘못된 행동을 다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하는 것이다.

[문제행동 예방 전략]

바라는 행동과 지침들을 명확하게 세워주기

이 때, 아동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동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기

규칙을 세울 때는 아동을 참여시키기

지속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규율을 실행하기

수업이든, 아동 활동 프로그램이든 아동 모두가 참여하고 성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주기

지속적으로 아동을 모니터링하여 과업을 어려워하는 아동들은 도와주고 과업을 쉽게 수행하는 아동들에게는 새로운 과업을 제시해주기

③ 잘못된 행동에 대처하기

대부분의 아동들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동들은 스스로의 필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다른 아동의 일 때문에 바쁠 때 아동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 기다리는 아동은 분노하거나 교사가 "공평하지 않다"고 비난 할 수 있다.

표 Ⅳ-3-6 훈육방법 정하기

훈육 방법	실천 방법
격려하기	얼마나 많이 개선됐는지를 말함으로써 아동이 자부심 갖게 하기 노력에 대한 격려 통해 아동의 행동 발전시키기 격려 받는 아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움
잘못된 행동 막기	아이의 시선으로 보기 공간이 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확인하기 현명하게 공간을 정리하기 “달릴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고 차단하기 쉽게 장난감을 찾을 수 있도록 장난감과 용품을 정리 장난감이 충분한지 확인하기 장난감이 아이들의 연령과 능력에 일치하는지 확인 장난감과 재료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기
잘못된 행동에 대처하기	각 아동이 고유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긍정적이 되기(아동의 강점에 대해 얘기하기) 성인이 주도하는 경쟁을 줄이고 협력을 강조하기 나눔을 장려하고 나누는 아이들에게 긍정적 피드백 주기 교구 등을 이용하거나 경쟁관계 관리 방법에 관한 책 읽고 캐릭터 등에 대해 얘기해 보기

자료: eXtention 홈페이지. https://articles.extension.org/pages/25701/encouragement-is-more-effective-than-praise-in-guiding- childrens-behavior(2018. 9. 14 추출하여 재구조화)

상기의 훈육 방법은 보상, 정중한 요청, 나-전달법, 논리적 결과의 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에게 이행할 수 있다. 각각의 방법을 숙지하여 아동의 기질과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보상]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자주 보상해준다. 아동이 특정 행동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은 강화된다. 특히,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우연히라도 보상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무시한다.

• 구체적인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아동의 긍정적 행동을 강화시키는 데 더 효

과적이며, 사회적 보상이 물질적 보상보다 더 효과적이다.

- 물질적 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행동이 일어난 후에 해야 한다.
- 부정적 행동에 대한 벌: 논리적 결과, 타임아웃 등

표 Ⅳ-3-7 보상의 유형

사회적 보상	활동적 보상	물질적 보상
• 미소 • 안아주기 • 등 두드려주기 • 칭찬하기 • 쓰다듬어 주기 등	•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기 • 만화 영화 보여주기 • 선생님과 공놀이 또는 카드놀이 하기 등	• 아이스크림 • 공, 오락기, 옷 • 돈, 책 • 학용품, 장난감 등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6)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정중한 요청]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엄격하게 훈육할 필요는 없으며, 아동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맺어져 있다면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우리는 아동에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동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는 정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나를 좀 도와주겠니? 사물함 정리를 깨끗이 하려므나"와 같이 요청하고 아동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고맙구나, 00는 참 잘 도와주는구나"라고 말한다.
- 만약 정중하게 요청한 대로 아동이 따르겠다고 해 놓고 실행하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주어야 한다. "00야, ...를 하기로 했는데 네가 잊어버린 거 같구나, 어서 하렴."
- 아동이 계속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중한 요청보다 강력한 의사소통 기법인 '나-전달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나-전달법] 정중한 요청을 하여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조용하나 단호한 목소리로 '나-전달법'을 사용하여 표현하면 효과적이다.

- 아동의 문제행동이나 상황을 그대로 말한다. 이때, 행위와 행위자를 분리하여 아동이 나쁜 것이 아니라, 아동이 취하고 있는 행동에 문제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동의 인격이나 자존감을 공격하지 않아야 한다. 오직 아동의 행동에 집중한다.

- 언성은 높이지 않되, 문제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화가 났다”라는 표현 보다는 “속이 상하다” 또는 “걱정된다” “피곤하다” 등의 진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여 아동이 위협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유를 설명한다. 즉, 아동이 취한 행동이 상황(수업 또는 당신의 일)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가를 “~하기 때문에”의 말을 사용하여 설명해 주되,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한다.

[논리적 결과] 아동을 지도할 때 항상 정중한 요청 또는 ‘나-전달법’이 매번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문제행동을 다루면서 동시에 책임감을 교육하기 위하여 논리적 결과를 이용하도록 한다. 즉, 아동이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그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수반되는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00야,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방과 후 교실에 남아서 못한 숙제를 하고 집에 간다.”

- 이 때, 논리적 결과를 고의적인 보복행위와 구분하여야 한다. 논리적 결과는 아동의 그릇된 행동과 연관을 지어 논리적으로 받게 되는 결과이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를 가진다.
- 예를 들어, “낙서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공놀이를 못하게 될 것이다”와 같은 논리적이지 않은 표현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결과는 항상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효과적이다.

[타임아웃] ‘타임아웃’이란 아동이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즐거운 상황에서 아동을 즉시 격리시켜, 조용하고 지루한 타임아웃 장소에 두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관심이나 그 밖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 훈육 방법은 3세에서 13세 이하의 아동에게 적절하며, 어린 아동일수록 효과적이다.

- 타임아웃 단계
  ① 타임아웃을 사용할 한 가지 대상 행동을 선정한다.
  ② 타임아웃 장소로 사용할 따분한 공간(예: 생각하는 의자, 거실 모퉁이)을 선정하되, 아동에게 무서운 장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아동에게 타임아웃에 대해 설명해 준다.

대상 행동이 나타나면,

④ 10초 이내에 10마디 이하를 사용하여 타임아웃 장소에 보낸다.

⑤ 휴대용 타이머를 맞추어(연령 당 1분) 아동이 들을 수 있는 곳(1~2m가량 떨어진 곳)에 둔다.

⑥ 타이머가 울리기를 기다린다. 그동안 아무런 관심도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 한다.

⑦ 타이머가 울린 후, 타임아웃 장소에 간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3) 영유아의 기분(짜증과 분노)에 따른 훈육 실천 방법

[짜증 다루기] 이 감정은 특히 영유아에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짜증은 성장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대부분의 영유아는 좌절감에 도달하면 짜증을 낼 수 있다. 영유아의 짜증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관련하여 신속한 전략을 세우는 것은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에서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짜증을 내는 영유아의 특성을 이해하고 짜증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요령은 다음과 같다.

표 Ⅳ-3-8 영유아의 짜증 다루기

짜증을 내는 영유아의 특성	짜증을 다루는 법	짜증 예방 실천
• 짜증은 영유아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남 • 영유아는 사소한 것에도 짜증을 낼 수 있는데, 사각 블록이 둥근 구멍에 맞지 않아도 일부 유아는 발로 차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몸을 던질 수 있음 • 영유아는 매우 쉽게 좌절하고 문제해결 기술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음 • 영유아는 배가 고프거나 피곤하거나 지나치게 흥분할 때도 짜증을 낼 수 있음	• 영유아의 짜증에도 침착하기 •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짜증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데 최소 30초 이상을 두기 • 영유아의 관심을 다른 것에 집중시키기(주의 집중이 짧은 영유아에게 특히 효과적) • 다른 영유아와 떨어져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기 • 영유아를 편안하게 하고 안심시키기 • 영유아가 진정될 때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기	• 영유아의 짜증이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 특정 공간의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 현실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일과를 지속하기 (식사 및 낮잠 시간과 같이 아동이 배고픔과 피곤함에 짜증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이해하기) •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공하기 (낮잠시간: 낮잠 자겠니? 대신에 '지금은 낮잠시간인데, 어떤 동물과 자겠니?') • 활동이 끝나기 전에 아동에게 미리 귀띔하기(5분 안에 미술 테이블을 청소해야 합니다, 놀이터에서 들어올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좌절을 겪지 않도록 영유아의 능력 고려하여 단계별로 진행 • 규칙 강요는 짜증으로 반응될 수 있으니 몇 가지 중요한 규칙만 선택하게 하기

자료: eXtention 홈페이지. https://articles.extension.org/pages/25413/dealing-with-toddler-temper-tantrums-in-child-care. (2018 9. 14. 추출하여 재구조화)

[분노와 좌절] 분노와 좌절은 어린 아동들에게 공통적인 감정이다. 그러므로 영유아의 분노를 식별하고 분노가 정상적인 것임을 이해하고 영유아가 분노를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생산적인 방식으로 분로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 아동의 분노와 화남은 영유아가 감정을 식별하도록 돕고 감정을 표현할 단어를 제시해주고, 영유아가 분노와 화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보여줌으로써 영유아의 분노와 좌절 다루기를 도울 수 있다.

표 Ⅳ-3-9 영유아의 분노와 좌절 다루기

분노와 좌절을 표시하도록 돕기	분노와 좌절을 다루는 모델링 방법	분노와 좌절을 다루도록 돕는 실천
• 영유아는 분노와 다른 강한 감정이 정상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감정을 표현할 단어 등 제공하여 영유아가 감정을 인식하고 반응하도록 돕기 • 분노와 화를 내는 것은 정상적이며 이 감정을 다루는 적절한 방법이 있음을 영유아에게 이해시키기 • 분노와 화가 없는 척 가르치는 것은 감정을 숨기거나 무시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오히려 이 감정들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게 할 수 있음 • 도서 등을 통해 "00가 어떻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니?", "왜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니?"와 같은 질문을 통해 감정을 묘사할 수 있도록 돕기	•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아동들은 주위의 어른을 보면서 분노와 화를 다루는 법 학습 • 화가 난 상황에서는 "선생님은 지금 기분이 좋지 않아요"라는 말을 통해 교사의 느낌을 건강하게 표현하기 • "장난감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리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날 수 있어요"와 같이 화를 내는 감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의 예를 들어줌으로써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법을 영유아에게 학습시키기 • 산책,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기, 재미있는 관심거리를 찾기 등의 분노 관리 기술을 아동에게 보여주기 • 기분이 나아지는 방법 등을 아동에게 설명해주기	• 분노와 화가 난 감정일 때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물거나, 상처주거나, 물건을 깨거나 파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를 영유아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 "나는 00 때문에 정말 화가 났어"로 말함으로써 감정에 대해 얘기하도록 하기 • 그림을 그리거나 감정에 관한 이야기를 쓰게 하기 • 발을 구르거나 주먹을 흔들어 분노나 화를 표현할 수 있게 하기 • 조용한 쪽에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돕기 • 재미있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돕기 • 점토를 두드리거나 특정 공간에 물을 뿌려 분노나 화를 표현하게 하기 • 달리기, 등반, 점프 또는 기타 신체활동을 통해 분노를 풀 수 있게 하기

자료: eXtention 홈페이지. https://articles.extension.org/pages/25413/dealing-with-toddler-temper-tantrums-in-child-care. (2018.9.14. 추출하여 재구조화)

[스트레스]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아동은 보육·교육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될 수 있다. 교사는 어린이의 스트레스를 식별하고 스트레스에 최대한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유아와 성인 모두 스트레

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보육·교육 환경에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표 Ⅳ-3-10 영유아의 스트레스 다루기

스트레스 원인	스트레스 대처 방법	스트레스 해소 활동
• 일상의 변화 • 새로운 보육·교육 환경 • 또래간의 싸움 또는 따돌림 • 수면 부족 • 혼잡한 보육 환경 • 새로운 형제, 자매 •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 집에서의 갈등 • 가족유형 변동	•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아동이 정기적으로 자고 있는지 확인 • 건강한 식사를 하고 매일 신체 활동 실시 • 매일 긴장을 풀고 조용한 시간 갖기 • 변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 • 한 번에 한 가지만 취하고 아동도 똑같이 하도록 격려 • 친구들과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 • 아동에게 안전하고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 제공	• 종이 찢음 – 오래된 신문이나 잡지로 종이를 구겨서 공으로 만들어 던지기 놀이 • 손가락 그림 – 오래된 샤워 커튼, 플라스틱 테이블 천 또는 신문으로 그림 그리기(손가락, 손, 팔꿈치를 사용) • 능동적인 놀이 – 달리기, 등산 활동과 공놀이 등을 통해 활력(교사도 함께 참여) • 웃음 – 아동과 함께 웃을 시간을 가지고, 재미있는 노래를 부르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놀기

자료: eXtention 홈페이지. https://articles.extension.org/pages/25413/dealing-with-toddler-temper-tantrums-in-child-care. 2018.9.14. 추출하여 재구조화)

[물기][39] 비록 많은 아동들이 물지 않지만, 영유아 사이에서 물기 행동은 흔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물기는 약 18개월에서 3~4세 사이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성인들이 영유아의 물기 행동을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아동의 물기 행동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이러한 이유 및 물기 행동에 대처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표 Ⅳ-3-11 영유아의 물기 행동 다루기

시기별 물기 행동	물기 행동의 원인	물기 행동 예방 위한 실천 방법
• 이가 나는 시기 • 입을 사용한 탐구 • 타인 반응 유도 • 주의 끌기 • 좌절감과 긴장 • 모방	• 이가 날 때의 불편함 해소 위해 물건 씹음 • 사람 vs. 장난감 씹는 차이 이해 못해 사람 물기도 함 • 물기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울거나 비명 지를 때 놀라기도 하지만 이러한 반응을 통해 배움	• 씹기 가능한 부드러운 천 제공하여 사람을 물지 않도록 유도 • 탐구할 대상이 충분하도록 감독 • '물면 안 돼, 물면 다른 사람이 다치는 거야'임을 말하고, 차가운 수건이나 얼음을 다친 아동에게 건네게 하거나 위로하는 방법 가르치기(물기 행동이 미안하지 않은 아동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긍정적 행동을 가르치는 것 아님)

39) eXtention 홈페이지. https://articles.extension.org/pages/25365/why-do-some-children-in-child-care-bite-others 2018. 9.14. 추출하여 재구조화)

(표 Ⅳ-3-11 계속)

시기별 물기 행동	물기 행동의 원인	물기 행동 예방 위한 실천 방법
	• 무는 것을 빨리 배운 영유아는 주변으로부터 큰 반응을 얻었을 것임 • 좌절감을 표현할 만한 마땅한 단어가 없거나 긴장 풀기 위해 물 수 있음 • 누군가가 무는 모습을 본 이후에 모방할 수 있음	• 모든 영유아에게 매일 최소한 일대일 상호작용을 제공하고, 영유아의 긍정적인 행동에 관심두기 •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도록 가르치기(긍정적인 방법으로 감정 표현, 또래가 싫은 행동을 하면 '싫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 물기 행동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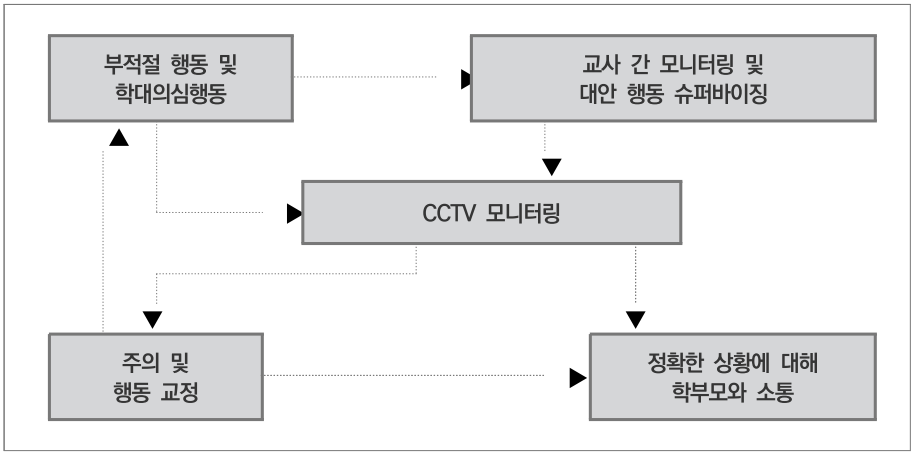
마. 기관 차원에서의 실천 방법

[CCTV의 활용] 기관에서 CCTV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피해아동의 회복을 위한 매개체로서도 활용될 수 있다. 첫째, CCTV가 아동학대의 증거보다는 학대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기관 내 종사자와 학부모 간 신뢰관계를 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CCTV를 활용하여 부적절한 행동 및 위험 상황에 대해 동료 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감으로써 교사는 행동적 교정을 해 나갈 수 있고 이후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를 더욱 큰 부정적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CCTV를 활용한 상시적인 동료 점검은 서로 간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동료 간의 굳건한 지지체계를 쌓을 수 있게 할 것이다. CCTV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위험 상황이나 종사자의 부정적 태도 및 행동이 인지되었다면, 이에 대해 학부모에게 진솔하게 알리고 이후의 대처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도 요구된다. 영유아 보육·교육 과정에서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은 기관 종사자와 보호자 간의 보다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다.

둘째, 만약 기관 내에서 실제적으로 학대가 발생했다면, 이에 관해 학부모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고 학부모의 CCTV 열람 요구와는 별도로 기관 자체 내에서는 CCTV를 활용하여 정확한 학대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학대가 발생했다면, 잘못한 행위자에 대한 책임 소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아동이 어떠한 부정적 상황을 경험했고 이로 인해 어떠한 부정적 감정이나 행동들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학대 상황에 노출되었던

피해아동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 부정적 경험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관 내 종사자와 학부모가 실질적인 방안들을 함께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기관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면, 기관에서는 학부모에게 해당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즉시적 반응과 열린 대응을 하여 피해아동의 이후 긍정적 적응과 회복을 위해 학부모와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을 둘러싼 협력 체계 간의 노력은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유도하기 위해 중요하다.

그림 Ⅳ-3-2 CCTV를 활용한 기관 내 아동학대 예방 실천



4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가. 영유아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의무자 범위 및 역할

국내에선 아동학대처벌법[40] 제정·시행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대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영유아에게 행해지는 학대행위를 쉽게 발견하고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원장과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교사나 부모에 의한 학대를

4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조기 발견하여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 역시 영유아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영유아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신고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41].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신고 요령[4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정의 및 역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 10조).

[신고자 보호조치 내용] 「아동학대처벌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표 Ⅳ-4-1 신고의무자의 범위(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처벌법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영유아보육법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직원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유아교육법	교직원 강사 등
가정폭력 방지법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초·중등 교육법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학원법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다문화가족 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의료법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한부모가족 지원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 사업법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종사자

41) 자문의견을 토대로 정리되었음.
4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안내서(112)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토대로 작성

(표 Ⅳ-4-1 계속)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성폭력 방지법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 시설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소방기본법	구급대의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보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입양특례법	입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2) 신고자 보호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0조의 3, 제62조 제2항에서는 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며, 신고자를 공개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자를 보호조치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제도] 아동학대의 신고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있다.

[신고자의 공개 및 보도 금지] 누구든지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림 Ⅳ-4-1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이익조치의 종류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부당한 인사조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차별조치
파면, 해임, 해고 등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근무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	신체, 정신적 손상행위	
교육,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 취소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자료: 법무부(2017). 우리아이들을 지키는 방법: 아동학대신고의무자용.

나. 영유아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고 절차

1)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것이다. 만약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문항 중 1개 문항 이상에 “예”로 체크될 경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만약,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고의무자는 즉시 112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표 Ⅳ-4-2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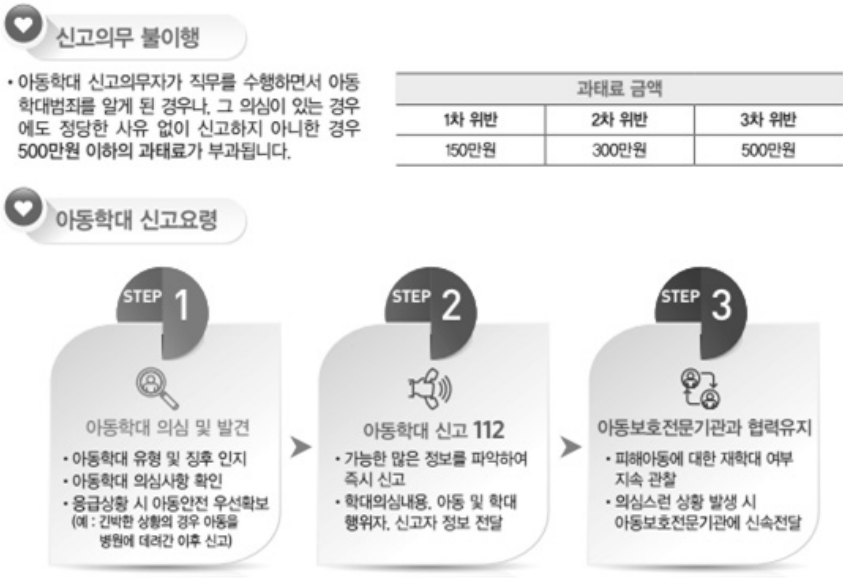
연번	체크항목	체크란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	×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	×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	×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	×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	×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	×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	×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	×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	×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	×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	×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	×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한다.	○	×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	×
15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1~14번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	×

자료: 보건복지부·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현대·사랑의 열매(201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안내서.

2) 아동학대 신고 절차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이 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신고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동학대가 지속될 경우 아동이 있는 해의 정도가 더욱 클 수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Ⅳ-4-2 아동학대 신고 요령



자료: 보건복지부·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현대·사랑의 열매(2017). 아동학대 신고의무 자용 안내서.

[신고 불이행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의무자의 신고 불이행은 직접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Q. 「아동학대 처벌법」상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며, 신고의무 해태 시 처분은 어떻게 될까?

A. 법류에 규정된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즉 피해아동의 말이나 행동 또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통상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여야하는 의무를 진다.

- 신고의무자는 복수가 될 수 있으나 각자가 신고의무를 지므로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관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상급자에게 학대인지 사실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상급자를 통하여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나 상급자가 신고를 약속하고는 신고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상급자에게 고지한 신고의무자의 과실이 없다면 해당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해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학대신고 시에는 가능한 한 학대행위자나 피해아동에 관한 정보 및 학대의 정도나 내용, 학대장소나 시간, 학대사실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상세하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이들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학대사실에 대한 진술만으로 충분하다. 다만, 신고자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게 되어 신고의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도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과태료의 책임을 지며, 과태료의 부과 주체는 신고의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장이 된다.

자료: 서울지방변호사회(2017)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V

정책 제언

1. 현장중심 아동학대 매뉴얼 보급 및 확산
2.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중재센터(가칭) 설립

V. 정책 제언

1 현장중심 아동학대 매뉴얼 보급 및 확산

가. 이해관계자의 욕구를 반영한 매뉴얼 활용 필요

기존의 매뉴얼에서 아쉬운 점은 이해관계자들의 욕구가 면밀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부모, 교사, 기관장의 3자 인식 및 욕구를 파악하여 현장에서 활용되었으면 하는 매뉴얼의 내용을 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욕구를 반영한 매뉴얼을 활용한다면 이해의 정도와 폭이 깊어질 것으로 보여 진다.

나. 아동 권리 중심의 매뉴얼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 대응과 관련한 매뉴얼은 아동 권리가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하루 일과 생활도, 보육과 교육의 지도도 아동 권리 중심으로 진행될 때 활용가능성도 증가할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다.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뉴얼

교사는 아동의 입장에서 양육자이자 교육자의 역할을 동시에 가진다. 이러한 다층적 지위를 가진 교사의 인권은 아동의 권리 보장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은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 이

러한 교사들의 욕구를 반영한 매뉴얼이 현장에서 활용 될 때 수용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라. 사후대응 절차 및 조기발견체계의 통합적 활용 매뉴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럼에도 사전 대응과 사후 대응이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는 탓에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낮은 인지도, 복잡함 등이 얽혀 실제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제는 사후 대응 절차에 대한 인식과 조기발전체계에 대한 인식을 통합적으로 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다. 동 매뉴얼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 감정의 소모를 방지하기 위한 중재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 현장 확산 및 홍보 필요

매뉴얼의 현장 보급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발된 매뉴얼의 현장 확산을 위해 개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의 홍보 및 확산을 위한 노력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중재센터(가칭) 설립

가. 정책 제안 배경

본 연구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을 구성함에 있어 강사자의 욕구를 고려한 신속한 사후 대응 시스템을 함께 제시한다. 관련하여 원장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하여 항목을 추출하였다. 세 당사자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였고, 현행 법제도 및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 시스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합의기구의 부재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 영유아보육교육 기관 사후 대응 절차 관련 역할 및 각 개별당사자 요구[43]

1) 아동보호전문기관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5곳 선정하여 현장상담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현재 영유아보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사후 대응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서울 강서구, 경기북부, 서울 영등포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현장상담원들의 전공은 모두 사회복지였다. 은평구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 신고접수가 가장 많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학대의 유형은 다양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V-2-1 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사항(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번호	경력	영유이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담당 횟수 (최근 1년)	가장 많이 접한 아동학대 유형	학력	전공	성별	연령
01	5년 10개월	1회	방임	대졸	사회복지	남	33
02	11년	10회	신체정서, 방임	대졸	사회복지	남	38
03	2년 1개월	3회	신체, 방임	대졸	사회복지	남	29
04	4년 1개월	20건 이상	모두	대학원 이상	사회복지 정책	남	32
05	2년 7개월	3-4건	중복학대	대졸	사회복지	여	27

현장에서 직접 사례조사를 담당하는 상담원들을 인터뷰한 결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대부분의 케이스 중 아동학대 혐의가 없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영등포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2018년 상반기[44] 동안 영유아보육교육 기관에서의 학대로는 10건의 사건이 신고 접수되었고 현재 4건은 조사진행중, 나머지 6건은 혐의 없음으로 판정이 났다. 2017년에도 학대 판

43) 법제도상의 역할과 당사자 인터뷰 결과에서 추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함
44) 2018년 1월부터 7월을 의미함

단은 전체 케이스 중 1건이 신체적 학대로 판정되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혐의없음 처리로 종결되었다. 상담원들의 인터뷰에 의할 경우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사건들은 정말 흔치 않은 경우이기에 보도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서울시 은평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 기준 12권의 신고 접수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학대 사건 중 학대 정황으로 신고가 되어도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학대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물론 진술로도 가능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CCTV에서 드러난 학대 정황, 학대 상황 등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학대 판단에 CCTV 화면의 내용을 근거로 하는데, 결국 학대 판단을 내렸던 건은 CCTV 상을 통해서 명백한 신체학대 정황이 파악이 된 케이스 들이었다. 2018년도 영등포구의 어린이집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피해의심 아동조사, 의심자 조사, 주변인 조사, 원장조사 등을 시행하였음에도 학대 정황이 CCTV 상으로도 발견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학대 판정에 이르지 못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신체적인 학대로 겉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CCTV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고, 설치 의무화 이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설치 이전에는 아이들의 진술로만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CCTV 설치 이후 아동들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 판단 자료에 의하여 판정을 하기에 불필요한 감정 소모 및 대립도 상대적으로 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 CCTV에 찍히지 않는 사각지대 등에서는 현재 중재 기관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당사자간 감정 소모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현재 수사기관과 함께 동행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당사자들이 중재의 대상이라고 하기 보다는 수사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편을 든다고 여기거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수사를 한다고 여긴다고 증언하였다. 현재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양 당사자로부터 모두 신뢰를 못 받거나 그 힘든 일이 제대로 보상받고 있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집에서의 기준과 기관으로부터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서 신고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 내가 때리면 훈육이고 남이 때리면 학대에요. 선생님이 우리 애 안 봐줬다고 하면 방임으로 신고해서 그런데 집에서 엄마가 설거지 할 때 애를 안보는건 방임이라고 안하잖아요. 선생님이 엉덩이 툭툭 치는 건 학대로. 집에서 때리는걸 훈육이라고 해요. 내가하면 학대가 아니고 남이하면 학대라고 말해요. 이미 이야기들이 엄마들 사이에서 많이 돌고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서 신고 된 게 절반 이상이에요(상담원 01).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가 들어오기 이전에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까지 사건이 넘어오면 합의의 단계 내지는 서로 감정을 풀 수 있는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할 뿐 중재 내지 합의를 시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상담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 10건 중에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게 많이 없어요. 저희까지 오기전에 사전에 어린이집과 잘 얘기가 풀어졌으면 신고나 그런게 안이루어졌을거에요(상담원 05).

> 원만하게 해서 잘 푸시라는 말은 절대 안 해요 이미 그 단계는 지나간 거죠. 그 얘기를 잘 못 꺼내면 그 화살이 잘못해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냥 원칙대로 하죠(상담원 02).

> 현장에 가는거 자체가 조사를 하기위해서 가는 건데 조율을 해서 이거를 풀기위해서 가는걸 아니에요(상담원 01).

> 저희한테 연락오면 이미 그 단계는 지난거에요(상담원 02).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오면 당사가간 개입과 중재가 아닌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비협조적인 기관은 거의 없고 관할 구청 담당자, 혹은 교육청 담당자가 동행하기에 당사자들은 더욱 공적인 수사 단계로 진입한다고 인식한다. 경찰의 경우 정식 사건 접수의 경우 담당 수사관 혹은 의심 사례의 경우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과 동행하는데 CCTV 확보의 경우 원장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경찰이 CCTV를 확보하고 관찰하는 것이 정식 절차이고 그 이외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혹은 경찰이 모두 CCTV를 볼 권한이 없지만 아동학대의 경우 워낙 사건이 시급하고 응급의 상황, 갈등의 소지가 많기에 협조 요청 후에 원장이 자발적으로 수사 기관에 CCTV를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압수수색 절차까지 도달한다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절대로 CCTV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압수수색 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지만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그 이전에 자료를 공개해준다. 학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협조 차원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공개하여 달라는 의미가 서로간 양해가 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CCTV 판독을 하기 위해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 이외에 경찰과 자료를 공유하는 상태에서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분석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방임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학대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회성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교사가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 10분 이상 혼자 방안에 방치하여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안은 다른 아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서 CCTV를 판독하다가 나온 사안으로 의도치 않게 다른 사건이 아동학대 판정이 난 경우였다.

한편 경찰과의 동행은 지역별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서울의 경우 아동학대에 좀 더 적극적인 반면에 경기권의 경우 협조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하였다. 이는 서울에 비하여 경기권의 경찰 인력이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례 판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CCTV 자료 확보가 관건이므로 이를 위해서 경찰과의 동행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상담원들은 경찰인력 확보가 신속히 재정비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 여기서 발생되는 유발 요인들이 CCTV 안보여주겠다 라는 거부가 가장 불지르는 가장 좋은 방법중에 하나에요. 아이들 개인정보나 내규에 대해서 얘기도 해요.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부모는 더 의심하죠. 의심되는 상황에서 같이 보고 풀면 되는데 CCTV를 안보여주면 극단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원장이 대부분 침착하지 못해요. 제가 봤을때는 담임은 정신없고 그런데, 원장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던지 불필요한 발언들이나 말바꾸기가 보호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의심을 하죠(상담원 01).

> 다들 위축되어 있죠. 제가 이걸 10년 이상 했지만 고개 빳빳이 들고 있는 경우는 한명 밖에 못봤어요. 그정도로 다 위축이 돼요. 반성의 여부를 떠나서 관계기관 오고 경찰오고 그러면 위축이 됩니다(상담원 04).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학대 유형차이는 연령대에서 비롯된다고 파악하고 있고

부모의 기대 욕구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는 연령대인거 같아요. 어린이집에서 신체학대가 많은건 정서학대를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상황에 대한 묘사가 어렵기도 하고 아이들 진술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져서 근거를 삼을 수 있는게 부족한거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집은 주로 확인가능한 신체학대가 많은거 같아요(상담원 02).

학대 처리 절차의 과정에서 조사에 진입하는 순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학부모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심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조사의 과정 이전에 제 3자 개입을 통해 중재 절차가 시작되거나, 112에 바로 신고하여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유도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 조사하는 과정들이 학부모가 볼때는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고 이거에 대해서 빠른 피드백을 원하는데, 이걸 규명하는건 쉽지 않고, 아동학대 문의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접수받고 조사를 해야 파악가능하다. 라고 말하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연되면 어린이집과 학부모 사이에 오해가 심해지는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전 조율을 하거나, 매뉴얼에 차라리 112에 신고하라고 하는게 나을거 같아요(상담원 03).

물리적으로 이러한 방안이 불가능하다면, 경찰력이 우선하여 발동 되거나 자체적으로 기관에서 CCTV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월 1회 만들어서 점검을 하는 방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원장의 역량이 상당부분 우선시 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오로지 조사의 단계에서만 개입할 수 있기에 학대가 아니거나 학대로 판명되는 순간, 학대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제 3자적 입장에서 아무런 개입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을 한계로 지적하였다. 경찰의 경우 학대라고 판정을 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개입할 여지가 없을뿐더러 학부모를 설득할 수 있기는커녕 오히려 학부모로부터 질타를 받는 경우도 상당하였다.

> 저희는 아동학대 판단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아닌게 대부분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동기관에서 아동편에 서야지 이걸 학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냐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학대가 아니라는 소견을 전달했는데, 경찰에서 잘못 응대한다고 생각하는게, 아보전에서 아니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혐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이런 대응이 신고자의 학부모에게 시달리는 상황이 발생해요. 우리는 의견이고 소견일 뿐인데 경찰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야하는데 아보전에 책임을 돌리는거 같아요 경찰이 그래서 문제에요(상담원 04).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고, 양 당사자간을 조율하는 과정이 부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지자체가 관리감독 부서로 수시로 지도방문하고 그런 과정에서 의심정황이 있으면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아보전에 떠넘기는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관련부서로서의 책임은 지자체가 지어야 하는거 같아요. (상담원 03)

학대로 판정하기 이전에 학대의 폭을 줄여서 학대로 처벌받는 사람, 경고로 그칠 수 있는 사람 등 등급을 체계화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 그래서 중앙에 학대의 폭을 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규정을 만들자. 학대는 학대다 대신 경고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조치할 사람들을 저희가 만드는거죠. 체계를 조금더 연구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중앙에서 안 만들어요.(상담원 04)

즉, 현재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명확하게 '조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이었고 학부모와 기관의 감정까지 다스릴 여력은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었다. 어린이집의 분위기,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 등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은 할 수 있어도 조사 이외의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인력과 재정이 모자란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재의 구조상으로는 당사자 간 중재나 의견 조율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신고자는 대부분 친부모들인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사설 상담기관에 문의를 이미 해봤거나 동시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오기 전에 기관에 CCTV 열람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기관에서 열람을 거부할 경우 감정은 극에 달하게 되고 의심이 증폭되어 극단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 때 원장과 교사, 학부모의 감정을 제 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중재 혹은 청취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함에도 해당 절차가 부재함에 따른 부작용으로 파악된다.

2)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앞서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우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의 경우 선도적으로 아동학대 전문 상담원을 도입하여 학대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이 원

래 의도되고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해당 기능을 실현하지 못한 바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상담원 제도가 도입되었고 예산도 투입되었으나 아동학대 예방 측면에서 '보육교직원 정신상담' 기능에 그친 미비한 결과를 생산하고 말았다. 이는 기존의 아동학대 관련 중재 내지는 사전 상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 과정에서 변질되었고 실제 시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센터장 인터뷰 결과, 해당 제도 도입 시 관련 요구와 필요에 대한 의견이 매우 강하였으나 사후에 관리가 미흡하였고, 예산 실적 반영에만 급급한 나머지 교직원 상담 건수 늘리기에만 집중한 결과로 귀결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로서 중재 기구의 필요성은 도출되고 기존에도 유사한 시도는 있었으나, 만약 중재 기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지원, 홍보와 구체적 운영 설계 등을 통한 사회적지지가 그 무엇보다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경우 본인들을 '잠재적 범죄인' 으로 낙인찍히는 현재의 아동학대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는 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한 것, 학부모의 강한 불신 등에서도 비롯되지만 본인들의 의견을 들어줄 기관이 없다는 점, 원장 이외에는 어디에다가 호소할 기구가 없다는 점을 아동 학대의 가장 큰 피해자가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 작용하였다.

학대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본인들이 경험하였을 때 학대의 당사자로 몰리거나 확정되기 까지 억울한 경우도 많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학대 판명 과정에서 대부분의 당사자는 억울하거나, 본인이 잘못했거나 상관없이 보육과 교육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 구조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본인들의 정당한 의견 표출 기회 내지는 기관이 부재함에서 오는 부정적인 결과로 보인다.

> 내용은 그냥 선생님이 아이를 어떻게 학대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아이를 좀 힘으로 미는 그런대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분은 그만두셨어요. (교사 07)

> 저는 전에 일했던 곳에서 최근에 있어서 학대까지는 아닌데 부모가 항의해서 교사가 그만둔

적이 있었어요. 교사들도 성향이 다르고 부드럽게 하는게 있고 말이나 그런게 쎈 선생님이 있어요. 영아는 안그런데, 유아는 말을 잘 안듣고 말이나 행동이 강해서 교사들이 쎄고 말투가 쎄요. 그런데 화면으로는 쎄게 나오고 그런게 안타깝죠..(교사 08)

4)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인터뷰 결과 본인들이 컨트롤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 발생함에 대하여 지치는 상황을 포착할 수 있었다. 원장의 경우 대부분 자체적인 정화를 통해 상황을 종료하고 싶어 하였고,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일방적으로 학부모의 의견만 관철되는 것과 같은 시대적 흐름과 상황에 대한 불만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능할 경우 본인의 의견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무조건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었고, 학부모와의 직접적인 의견 조율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다.

비참하기도 하고, 매스컴이 자극적이고 부추기는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CCTV로 봤을때 아무리 잘해도 학대로 보이는게 많아요(어린이집 원장 01)

학부모로 부터 고발을 당해서, 학부모나 경찰들의 관계자들이 와서 상황을 수업시간에 묻는데 나중에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 그냥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할뿐 특별할게 없다고 와서는 취조하듯이 몰아붙이고 그러고 나서 미안하다고는 없이 가버리니까 그 원장이랑 선생은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유치원 원장 02)

5) 학부모

학부모는 본인의 자녀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해당할 경우 일단 감정적인 대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회의적이었다. 일단, 아이를 해당 기관에서 분리하고 싶지만 아동학대 사례 조사 과정에서 원장과 교사 이외에는 이에 대한 상황적 설명을 요구할 기관이 없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아동 학대의 가해자와 마주하기 싫다는 강한 불신, 기관을 믿지 못하겠다는 감정적 이유 등으로 제3자적 기관의 출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CCTV 원에서 보여주는게 법적으로 안보여줘도 되잖아요. 경찰이 가도 안보여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학부모 05)

> 그거를 왜 선생님한테 얘기를 직접 해야되요? 가해자인데? 그리고 현재 시스템은 피해아동 학부모를 고립시켜요. 다른 엄마들을 더 잘해준다거나. 그러면서 한두명의 센터장(어린이집 원장)이 라인이 있어서 너무 못됐다고 그러면서 센터장(어린이집 원장) 있는 자리에서 그랬어요.(학부모 06)

이하 각 기관의 대응 절차에 대한 사실 정리와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Ⅴ-2-2 현재의 기관 발생 아동학대 대응 절차에 관한 사항과 의견 종합 비교

구분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 센터	교사	원장	학부모
개입 주체	해당	권한 무	해당하나 의견 표출 기회 적음	해당하나 조율에 있어 어려움	학대 가해자와 상대하기 싫고 객관적 판단을 바람
사법권 발동	보조적 관여	권한 무	사법적 절차까지는 원치 않음	사법적 절차까지는 원치 않음	원치 않으나 감정적으로 소진하다보면 경찰을 먼저 생각
사건 당사자 보호 관련	권한 무	권한 무	보호 기구 필요성 요구	보호 기구 필요성 요구	보호 기구 필요성 요구
CCTV 열람 관련	필요하나 경찰만큼 확보가 안되는 단점 피력	당연히 필요하나 현재 권한 무	수업에 방해, 아동들과 상호작용에 방해, 보호수단이 된다는 의견도 존재	관리가 불편, 업무에 방해, 방어 수단이라는 의견도 존재	유일하게 증거 확보 차원에서 의존하는 도구이나 열람 거부가 잦은 상황에 불만

주: 연구자가 인터뷰 결과를 정리한 결과임

다. 개선안: 아동학대 중재센터를 통한 완충장치 운영

1) 아동학대 중재센터의 필요성

앞 절에서 살펴본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 학대와 대비하여 발생 경로, 배경, 당사자들의 인식 측면에 있어 특이성을 가진다. 첫째, 가정 내 학대의 경우 학대의 주체가 주 양육자인 부모라는 점에서 기관에서의 아동학대와 큰 차이점을 가진다. 이는 이해갈등 관계가 생길 또 다른 당사자가 없다는 점에서 기관에서의 아동학대와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가정 내 학대와 달리 기관 내 학대의 경우는 학대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과 상황에 대한 양 당사자의 입장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의 부모가 현장에 있지 않기에 간접적인 상황 체험의 상황에서는 당사자간에 충분한 입장 차이에 대한 청취 및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는 아동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진술을 할 수 없는 연령의 경우 부모와 CCTV를 통한 간접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이 주요 증거로 작용하고 이는 객관적일 것을 특히 요한다. 따라서 이해당사자가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중재센터의 설치로 제 3자적 입장에서 기관과 아동, 부모 등의 당사자 간의 의견을 마음껏 제시하고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생기게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에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어린이집의 경우, CCTV 열람 신청 후 아동학대 의심 시 곧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서로 신고 접수가 들어간다. 하지만 현 기관에서 당사자간의 의견 조율, 상황에 대한 상담의 기능까지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 발생, 사건 처리 지연 등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즉, 교직원의 인권을 대변할 기구가 부재하다는 점, 학부모의 경우 역시 심리적으로 불충분한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약점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재센터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조사 및 수사 절차 개시 전에 당사자 간 생각을 정리하고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줌으로서 바로 사법적 절차 혹은 조사 절차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범죄자 징벌 중심의 시스템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화해, 나아가서는 불필요한 법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ADR)의 한 종류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영유아보육기관 아동학대의 사법적 처리의 경우 물론 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함에 따라 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보육교직원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낙인화 하는 부정적인 효과 역시 간과할 수 없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기관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사후 대응 절차에 의하면 중재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관계 회복, 양 당사자 간 화해, 반성 등의 기회가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중재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2) 중재센터의 구성(운영) 방식

중재센터는 세 가지의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센터(안)을 제시함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중재센터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교직원 심리 상담만을 시행함에 따라 아동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해당 기능을 보강하여 전문 상담원 2인을 상시 배치하여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조기에 대응하는 것을 제안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중립적인 기관이라는 차원에서 중재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장점을 가진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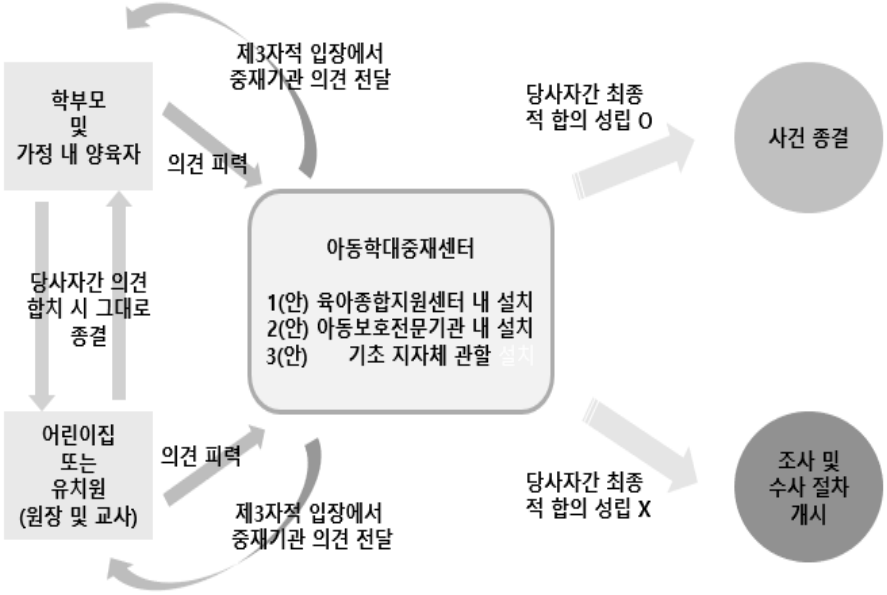
두 번째 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중재센터 구성이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재원의 부족, 인력의 불충분성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45] 하지만 아동학대 사례 경험의 충분성, 인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각 지자체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별도로 중재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세 번째 안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중재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는 각 기초 지자체 내 지역사회복지사, 아동복지전담공무원[46] 등을 활용함과 동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 및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45) 본 연구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인터뷰 결과

46) 아동복지법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그림 V-2-1 아동학대 중재센터 모형(안)



3) 중재센터의 목적과 역할

중재센터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범죄자' 라는 낙인을 가하기 전에 사건의 당사자이자 의견을 표출할 권리자로서의 이익을 보호한다. 더불어 피해 아동의 정신적 상처 회복을 위한 기능을 우선시 하고자 한다. 즉, 중재센터는 일방 당사자의 의견을 통해 움직이는 기구가 아니라 교직원과 아동, 아동의 부모 모두의 권익을 위한 기구라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에서의 학대 사건의 경우 의도성의 결여, 사건의 경미성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소모가 증폭됨에 따라 사건의 의미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학대 피해 아동의 상처 회복, 보육교직원의 인권 보호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 센터는 공공성을 지향하며 객관성과 중립성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 또한 자율적인 운영과 역할로 당사자의 자율적 의지와 관심에 의존하여 절차 개시를 하게 된다.

첫째, 중재센터는 당사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이는 양 당사자의 의견 표출과 더불어 이야기의 과정에서 심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중재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로 작용한다. 필요시에는 당사자 간 대면 면담을 실시한다. 이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 실시하며 피해 아동의 상처 회복과 치유, 교직원의 정당한 의견 표출 기회 부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둘째, 신속하게 중재 절차에 돌입한다. 사건 발생 시 교직원의 중재 신청 혹은 학부모의 중재신청 즉시 담당자 개입을 실시한다. 아동학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이다. 제 3자가 필요한 해당 사례의 경우는 더욱 신속한 반응과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중재가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사례조사위원회 같은 전문가 위원회 즉시 구성으로 사건의 재구성, 사례 판단의 객관성 확보 등을 시행한다. 전문가위원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위원회와는 전혀 다른 기능을 시행하며 육아종합센터 담당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공동으로 참석하여 진행한다.

4) 중재센터 재원 조달 방식

중재센터의 재원 조달 방식은 센터의 운영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아동학대예방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방 교부금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하는경우 보조금의 형식으로 재정을 조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치위임 사무로 일단 시행하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예산의 유연한 편성이 가능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선행할 것을 제안한다.

5) 중재센터의 한계

중재센터의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합의에 이를 경우에는 그 기능에 제한점을 가진다. 왜냐하면 당사자 간에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제 3자가 신속한 대응과 객관적인 판단을 하였음에도 양 당사자가 이의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 결국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 개시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

다. 더욱이 중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중재 센터를 거치기 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 의뢰, 경찰에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할 경우 동 센터는 본래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 센터의 기능을 홍보하고,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가 객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라는 특성을 인지하고 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중재센터 도입 전 후 절차 비교

중재센터 도입 전에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생 시, 아동의 의견과 부모의 의구심, 또한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CCTV 열람 신청, 열람 신청 거부시 또는 열람 후 학대 의심 시에는 당사자 간 의견 교환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의한 조사 및 수사 진행의 과정으로 사후 대응 절차가 시작한다. 교직원의 의견 표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사실이다. 학부모의 감정 소진이 과도한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중재센터 도입 이후에는 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혹은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게 됨에 따라 사전 의견 조율 절차가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적 주체의 개입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기관-학부모 양 당사자 간의 법률적 긴장관계가 완화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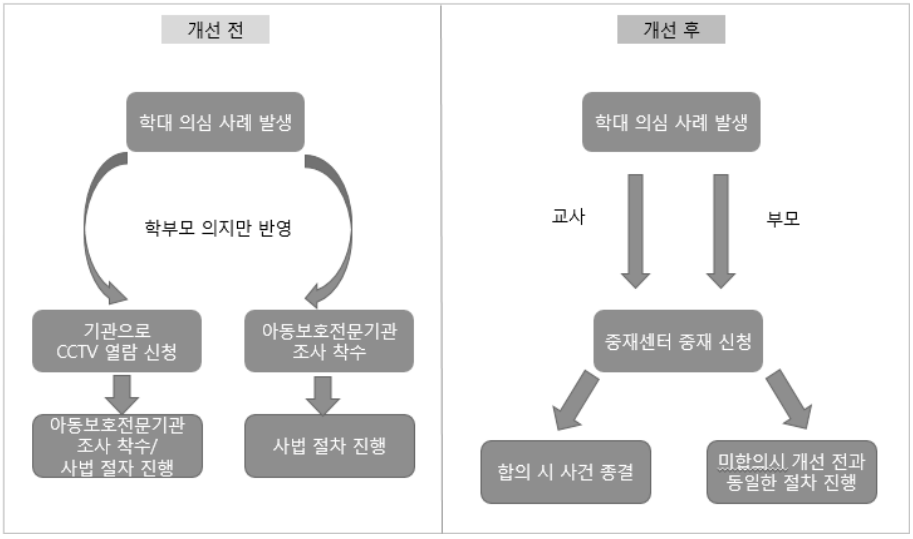
또한 관련 당사자 모두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 따라 중재과정에서의 객관성 또한 보장되며, 사법 절차 개시 전에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입장을 충분히 조율함에 따라 당사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인력의 부족, 기관의 공공성 부재, 육아종합센터의 기능 부재, 지방자치단체의 사건 처리 절차 부재 등으로 중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전혀 없음에 따라 이러한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제도 도입 후에는 중재센터에서 의견 중재 및 당사자 인권 보호 기능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V-2-3 개선 전후 비교

구분	개선 전 (현행)	개선 후
개입 주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원	중재센터에서 합의 미성립시 현재의 개입 주체 발동
사법권 발동	원칙적 개입 가능	원칙적 미개입
당사자 보호 관련	보육교직원 혹은 아동의 입장이 일방적으로만 반영되거나 때에 따라 묵살될 가능성으로 인권 보호 미비	보육교직원과 아동의 인권 양자 보호 모두 가능

주: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한 것임

그림 V-2-2 개선 전후 비교



주: 앞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한 것임

마. 기대효과

아동학대 중재센터를 도입함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직원과 아동의 인권을 모두 보장한다. 최근 '지역 맘카페' 내 신상 공개 등으로 보육교직원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보육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를 통해 유사한 사건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인 제 3자의 시선으로 상황을 감정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양 당사자의 인권이 모두 존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즉, 중재센터를 통하여 당사자 간 이해관계 조율, 의견 조율 등 사후 대

응 처리 절차의 신속한 개시로 사후 대응의 과정에서 현재의 양 당사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재의 형식적인 절차와 달리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학대 중재센터는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의 아동학대 사후 대응 시스템의 비사법적 절차 운영 원칙을 지향한다. 따라서 사법적 절차 개입 전에 중재와 합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비사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당사자 간 자의에 의한 자율적 분쟁해결 절차에 해당하여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법적 절차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감정적 소모, 시간 지연, 학대 피해 아동의 원상회복 보다는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폐해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역할과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도모하고 관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 현재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문제는 그 비중이 가정 내 학대에 비하여 작을지언정,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한 국민적 관심 증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분, 국가의 부상 보육과 교육에 대한 기대감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중재센터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긍정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매김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은진·이정림·조혜주(2015).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의 설치 및 운영방안: 유치원·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관계부처 합동(201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 발견·보호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2016). 아동학대 방지 대책(안).

관계부처 합동(2018).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

경기도교육청(2015).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경기도교육청(2017).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개정판 2017. 12.

교육부 보도자료(2016a). 교육부 소관 22개 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교육부 보도자료(2016b).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 개발. 보급.

교육부(2017).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안)

김기현·장화정·김경희·이지연·장희선·문선영·손나윤(2013). 2013년 아동학대 사례분석 연구 Ⅰ: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김미숙·배화옥·정익중·조성호·박영숙·김지민(2016).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아름·유해미·박은영·장민선(2017).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영은·이희선(2016)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교육 기초 연구. 인지발달중재학회지. 7(1). 15-32.

김은영·박원순·이재희·이혜민(2016).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Ⅱ): 가정과 기관에서의 영유아 학대 인식 실태와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김호현(2016). 홉스의 눈으로 본 유아 학대 교사: 전제군주와의 비교를 통한 학대 교사 비판. 열린교육연구, 24(4), 49-65.

김희영·윤현석(2016). 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및 직무스트레스가 아동학대 인식

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7(4), 547-566.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안.

보건복지부(2016).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조치 매뉴얼(어린이집용).

보건복지부(2017).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보건복지부(2018).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

보건복지부·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현대·사랑의 열매(2017).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안내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 방법.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 속보치.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2015). 함께배워요.

서울지방변호사회(2017). 2017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심향영육아원(2016).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유계숙·양수진·조선아(2016).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원인 인식 및 대책 요구도. 육아정책연구, 10(1), 241-268.

이경숙·박진아·최명희(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상담 요구도 실태조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2). 227-252.

이명수 의원실(2018). 이명수 의원실 내부자료(한국보육진흥원 자료분석).

이소희(2018). 보육현장 중심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서울: 신정.

이재연·안동현·황옥경·구은미·한유미·이완정·한지숙·김경륜(2015). 아동권리 0-8. 육아지원기관에서 아동권리 레토릭과 현실.

이천현(2014). 아동학대 처벌규정에 관한 검토: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27, 167-198.

장희선·김기현·장화정·김경희(2016).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아동학대 피해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24, 3-141,

정선아·이완정·장화정·김경희·김미경(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사례 심층 분석.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부모 안내서.

최은영(2016). 유치원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가, 교직원, 부모의 경험과 인식. 열린부모교육연구 8(1), 199-216.

최혜영(2015). 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이해. 인지발달중재학회지, 6(2), 59-81.

한국법교육센터(2017). 우리아이들을 지키는 방법: 아동학대신고의무자용.

한국영유아보육학회(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지침 및 매뉴얼: 사례·판례 원인 및 대응방안. 양서원.

Arnett, J. (1989). Caregivers in day-care centers: Does Training Matter?. Journal of Applifed Developmental Psychology, 10, 541-552.

Arnold, D., H., McWilliams, L., and Arnold E., H. (1998). Teacher Discipline and Child Misbehavior in Day Care: Untangling Causality with Correlational Date,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276-287.

Brown, P., and Elliot, R. (1965). Control of aggression in a nursery school clas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2, 103-107.

Scott-Little, M. C., & Holloway, S, D.(1994). Caregivers' attributions about children's misbehavior in child-care center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5(2), 241-253.

Swiezy, N. B., Matson, J. M., and Box, P. (1992). The good behavior game: A token reinforcement system for preschoolers. Child and Family Behavior Therapy, 14, 21-32.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W/main.html(2018. 9. 18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아동복지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liBgcolor1 (2018. 9. 18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아동학대처벌특례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undefined (2018. 9. 18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영유아보육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undefined (2018. 9. 18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유아교육법.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undefined (2018. 9. 18 인출).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학대아동 처리도.
http://child.seoul.go.kr/archives/293(2018. 8. 29. 인출).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아동학대예방사업이란.
http://seoul.childcare.go.kr/lseoul/d2_30000/d2_35200/d2_35210.jsp(2018. 10. 22. 인출).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안전및아동학대예방.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30000/d1_60059/d1_30002.jsp(2018. 10. 18. 인출).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 http://e-childschoolinfo.moe.go.kr/(2018. 8. 29. 인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e-childschoolinfo.moe.go.kr/main.do(2018. 8. 29 인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30000/d1_60059/d1_30002.jsp(2018. 10. 18. 인출).

전북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사례전문위원회의.
http://namwon.goodneighbors.kr/gnnamwon/html/cd101111100/default(2018. 10. 22 인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사법처리 절차.
http://www.korea1391.go.kr/new/page/work_system.php(2018. 8. 29. 인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진행도.
http://www.korea1391.go.kr/new/page/work_system.php(2018년 8. 29. 인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판례모음.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case&wr_id=8236(2018. 9. 21. 인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판례모음.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case&wr_id=8288(2018. 9. 21. 인출).

eXtention 홈페이지. https://articles.extension.org/(2018. 9. 14. 인출).

eXtention 홈페이지, Basic Tips Child Care Providers Can Use to Guide Children's Behavior.
https://articles.extension.org/pages/25703/basic-tipschild-care-providers-can-use-to-guide-childrens-behavior(2018. 9. 14. 인출).

eXtention 홈페이지. Dealing with Toddler Temper Tantrums in Child Care.
https://articles.extension.org/pages/25413/dealing-with-toddler-temper-tantrums-in-child-care(2018. 9. 14. 인출).

eXtention 홈페이지. Why Do Some Children in Child Care Bite Others?
https://articles.extension.org/pages/25365/why-do-some-children-in-child-care-bite-others (2018. 9. 14. 인출).

eXtention 홈페이지, Encouragement Is More Effective Than Praise in

Guiding Children's Behavior.
https://articles.extension.org/pages/25701/encouragement-is-more-effective-than-praise-in-guiding-childrens-behavior(2018. 9. 16, 9. 14. 인출).

〈신문기사〉

뉴시스, 2018년 8월 5일, 어린이집CCTV 열람 2년새 12배↑…학대 판정 1%도 안돼.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3_0000382059&cID=10818&pID=10800(2018. 10. 23 인출).

동아일보, 2018년 8월 5일, 어린이집CCTV 열람 2년새 12배↑…학대 판정 1% 도 안돼.
http://news.donga.com/home/3/all/20180805/91377120/1(2018. 10. 1 인출).

연합뉴스, 2016년 3월 24일, '아동학대 예방'…유치원 교실 CCTV 설치율 90%로 확대
https://www.yna.co.kr/view/AKR20160323158400004(2018.10. 18. 인출).

연합뉴스, 2018년 5월 3일, '감시 사각지대' CCTV 1대도 없는 어린이집 전국에 365곳.
https://www.yna.co.kr/view/AKR20180503037900065(2018.10.1. 인출),

전북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전문위원회의.
http://namwon.goodneighbors.kr/gnnamwon/html/cd101111100/default(2018. 10. 18 인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 Education

부록

부록 1. 기관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요령
부록 2. 기관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
부록 3.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중치 지표 및 점수
부록 4. 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 세부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8조 등)
부록 5. 유아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스트레스 대응 및 자가 진단
부록 6. 성인 우울자가선별검사
(Center for Epidemiological-Depression Scale : CES-D)
부록 7. 심층면담 질문지: 어린이집 원장용
부록 8. 심층면담 질문지: 어린이집 교사용
부록 9. 심층면담 질문지: 실무자용
부록 10. 심층면담 질문지: 부모용

부록 1. 기관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요령

가. 영유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및 역할

국내에선 아동학대처벌법[47] 제정·시행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대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영유아에게 행해지는 학대행위를 쉽게 발견하고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하여 원장과 교사가 아동학대를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교사나 부모에 의한 학대를 조기 발견하여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 역시 영유아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아동학대 발견을 위한 신고의무자의 범위와 신고요령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48].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신고 요령[4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정의 및 역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 10조).

[신고자 보호조치 내용] 「아동학대처벌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부록 표 1 신고의무자의 범위(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처벌법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영유아보육법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직원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유아교육법	교직원 강사 등

4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48) 자문의견을 토대로 정리되었음.
4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안내서(112)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게시 내용을 토대로 작성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가정폭력 방지법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초·중등 교육법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학원법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다문화가족 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의료법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의료기사
한부모가족 지원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 사업법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성폭력 방지법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 시설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소방기본법	구급대의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돌보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입양특례법	입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2) 신고자 보호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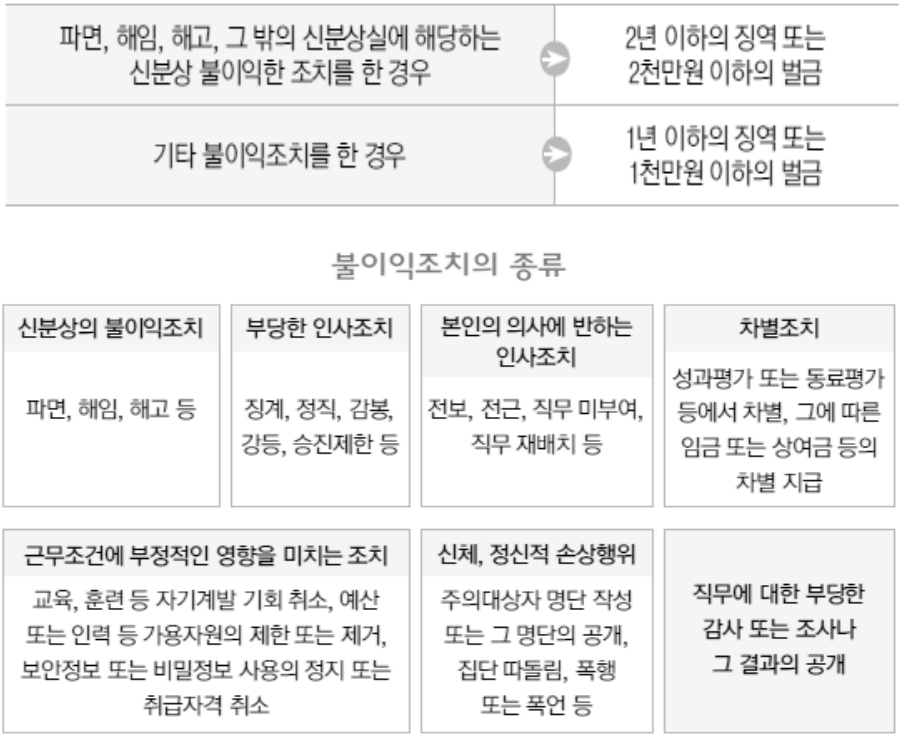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0조의 3, 제62조 제2항에서는 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며, 신고자를 공개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 신고자를 보호조치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제도] 아동학대의 신고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있다.

[신고자의 공개 및 보도 금지] 누구든지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부록 그림 1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자료: 법무부(2017). 우리아이들을 지키는 방법: 아동학대신고의무자용.

나. 영유아 아동학대 신고 절차

1)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것이다. 만약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문항 중 1개 문항 이상에 "예"로 체크될 경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만약, 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고의무자는 즉시 112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부록 표 2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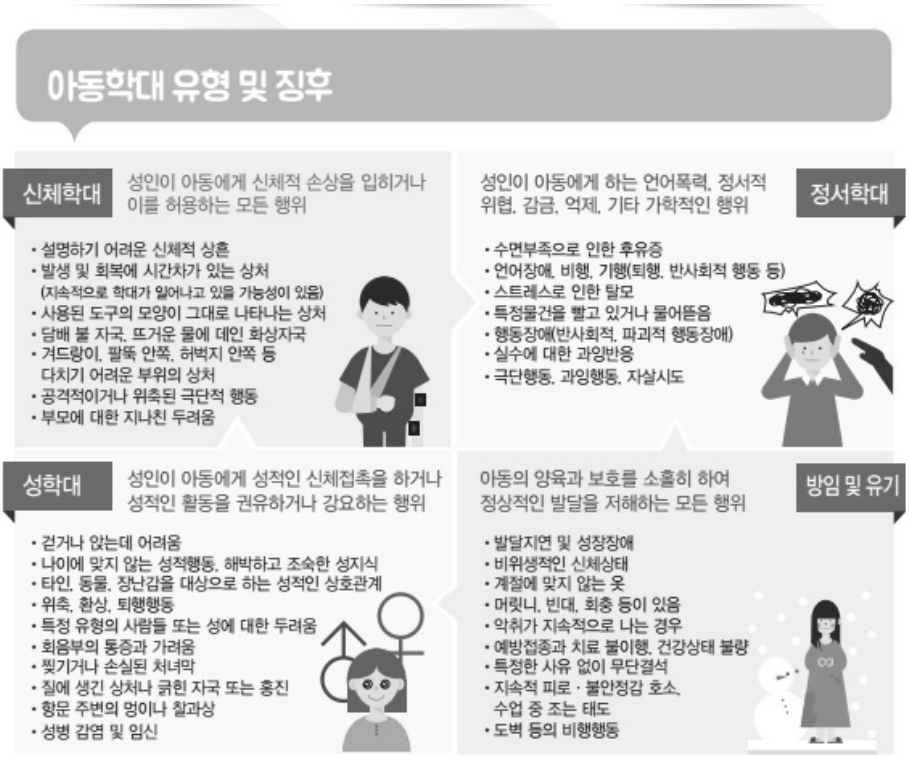
연번	체크항목	체크란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O	X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O	X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O	X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O	X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O	X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O	X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O	X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O	X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O	X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O	X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O	X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O	X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한다.	O	X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O	X
15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1~14번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O	X

자료: 보건복지부·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현대·사랑의 열매(2017). 아동학대 신고의무 자용 안내서.

2)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징후

아동에게 행해질 수 있는 학대 행위의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로 구분되고, 각각의 학대유형에 따라 아동이 나타낼 수 있는 징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부록 그림 2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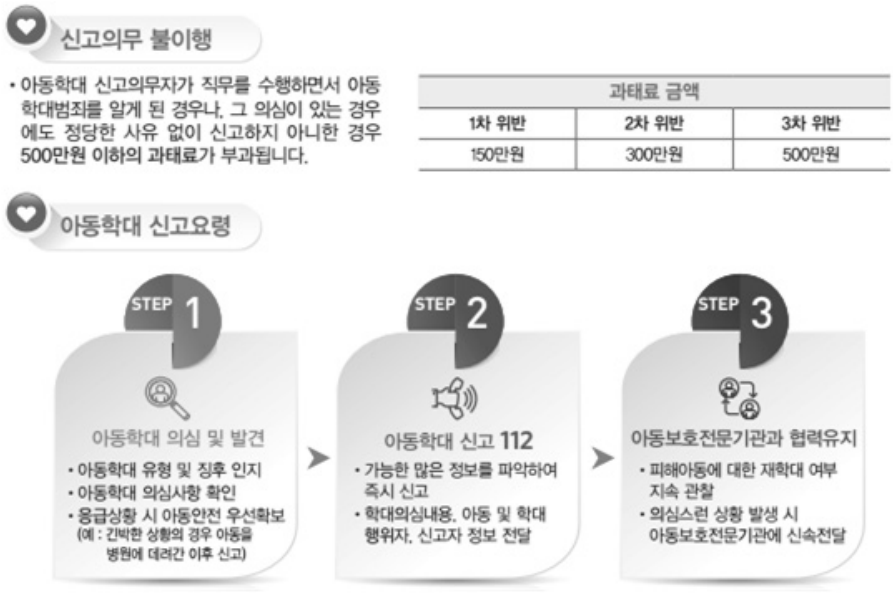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현대·사랑의 열매(2017). 아동학대 신고의무 자용 안내서.

2) 아동학대 신고 절차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인지하거나 의심이 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신고 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동학대가 지속될 경우 아동이 있는 해의 정도가 더욱 클 수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록 그림 3 아동학대 신고 요령



자료: 보건복지부·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현대·사랑의 열매(2017). 아동학대 신고의무 자용 안내서.

[신고 불이행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의무자의 신고 불이행은 직접 수사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Q. 「아동학대 처벌법」상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며, 신고의무 해태 시 처분은 어떻게 될까?

A. 법류에 규정된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즉 피해아동의 말이나 행동 또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통상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여야하는 의무를 진다.

- 신고의무자는 복수가 될 수 있으나 각자가 신고의무를 지므로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관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상급자에게 학대인지 사실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신고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상급자를 통하여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나 상급자가 신고를 약속하고는 신고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상급자에게 고지한 신고의무자의 과실이 없다면 해당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해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학대신고 시에는 가능한 한 학대행위자나 피해아동에 관한 정보 및 학대의 정도나 내용, 학대장소나 시간, 학대사실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상세하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이들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학대사실에 대한 진술만으로 충분하다. 다만, 신고자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게 되어 신고의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도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과태료의 책임을 지며, 과태료의 부과 주체는 신고의무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장이 된다.

자료: 서울지방변호사회(2017). 2017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p. 80.

부록 2. 기관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

가. 기관 아동학대 관련 법

1) 기관 아동학대 관련 법제

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동학대의 정의 및 신고의무자 규정, CCTV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조항들은 영유아와의 생활 중에서 조심해야 할 행동들을 비롯하여 어떠한 예방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게 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한다.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종사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영유아의 권리에서부터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학대 발생 시의 초지 사항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 외의 법 조항에서도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과 학대행위를 발견했을 시의 대처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법 조과 내용은 다음에 제시하였다.

부록 표 3 아동학대 관련법 및 주요 내용

법명	조항	주요 내용
아동복지법	제3조 7항	아동학대 정의
	제15조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제17조	학대를 금지행위로 규정
	제22조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교육 규정
	제28조의2	아동학대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사항
	제29조의3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규정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아동학대 예방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16조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

법명	조항	주요 내용
	제23조의2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내용을 포함하도록 구성
	제45조 3항	설치·운영자 또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행위 의심 시 즉시 보고, 조사·검사 실시 규정
	제46·47·48조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자격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제49조의3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어린이집의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 법 위반 이력과 명단 등 공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 조항	아동학대 범죄의 정의, 처벌, 처리절차, 아동보호사건 처리, 피해아동 보호명령 처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등 명시
아동보호심판규칙	전 조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 배상명령 처리 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유치원 장과 어린이집의 원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 아동학대범지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우선 적용 명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자체를 마련
	제34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시 수사기관에 신고
유아교육법	제21조의2	유아의 인권 보장
	제32조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유치원의 폐쇄 등을 명시

자료: 김은영 외(2016).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Ⅱ)(총괄보고서):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p. 29.

2)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경중 기준

어린이집 아동학대 경중 기준표에 의하면, 아동학대사건의 경중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각성, 고의성을 고려하여 행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상황의 합리성을 평가하여 해당 상황이 얼마나 부적절 했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표를 통해

서 우리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 영유아를 건강하게 보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고 실제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학대행위가 판단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부록 표 4 어린이집 아동학대 경중 기준

가중치 부여 판단 항목		부적절성 판단 항목
심각성	고의성	합리성
상흔 포함한 후유증 발생 또는 도구사용 여부 성학대인 경우 피해아동 연령(36개월 미만 영아는 어떠한 체벌도 금지) 피해아동의 수 피해아동의 감정 반응(부정적 표현의 정도)	학대행위의 반복성 아동학대로 자격정지 또는 형사처벌의 과거 전력 여부 학대행위에 대한 은닉, 은폐 시도 여부 학대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여부	훈육 시 훈육자의 감정 상태가 이성적인 상태(평정심)였는지 여부 훈육의 환경이 합리적이었는지의 여부

[안전사고] 만약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의 위험 발생 여부가 인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면 아동학대 행위로 간주된다.

나. 기관 아동학대 대응 절차

1) CCTV 열람에 대한 규칙 및 과정 매뉴얼

2015년 9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으로 어린이집에서 CCTV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CCTV는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CCTV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사후 책임소재를 가리고 논란의 상황에서 교사의 학대 행위를 밝히는 동시에 교사의 결백을 입증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즉, CCTV는 학대 확인의 증거가 되는 동시에 교사 보호의 증거도 될 수 있다[50].

50) 자문위원 의견 토대로 작성

부록 표 5 CCTV 설치 등에 관한 법령

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③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기준 및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절차·요건,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가) CCTV 영상정보의 열람 및 제공[51)]

보호자, 관계공무원(보육담당공무원, 수사·재판기관 등), 보육관련안전업무수행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등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CCTV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관계공무원 및 보육관련안전업무수행기과의 열람요청의 경우: 관계공무원과 보육관련안전업무수행기관의 열람요청의 경우 해당영상을 보관기간이 경과되어 파기하였거나, 열람요청이 해당기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업무수행과 관계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어린이집 원장은 즉시 영상을 열람하게 하

51) 해당 부분은 서울지방변호사회(2017)의 '2017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임.

여야 한다.

② 보호자의 열람요청의 경우: 보호자의 열람요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의 정도,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열람을 거부하기로 한 경우에 열람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피해아동 외의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어 그들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52]를 한다는 명목으로 즉시 열람을 거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즉시 영상저보를 열람하려면 피해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를 제시하거나, 관계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운영위원장,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즉시 열람이 가능한 기관과 동행하여야 한다.

③ CCTV 영상제공 요청의 경우: CCTV 영상의 열람과 달리 영유아보육법령은 CCTV 영상의 제공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한다. 따라서 CCTV 영상을 제공받으려면 모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공으로 보아 수사기관을 통하여 확보해야 한다.

Q.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유치원에 설치된 CCTV를 열람할 수 있을까?

A. CCTV 설치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만 부과된 것이고, 「영유아 교육법」을 따르는 유치원은 CCTV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설치한 CCTV를 열람하게 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다만, CCTV를 설치한 유치원은 원아들을 비롯한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열람시키는 것 또한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CCTV를 열람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이를 제공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다.
- 현재 2016.7.28. 2015헌마1059: (중략)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에 의거하여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이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이 적용되므로 CCTV 설치가 법에 의하여 강제되지 않는다.

자료: 서울지방변호사회(2017)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52) 영상자료에 정보주체 외에 제3자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3자로부터 열람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님(서울지방변호사회, 2017).

[CCTV 열람 관련 이슈]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CCTV 열람 요구는 교사와 원장에 대한 불신을 표하는 행동으로, 보호자와 종사자 간의 신뢰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학대피해 정황이 높을 때에만 열람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풍토가 종사자와 보호자 간에 조성되는 것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학대피해 정황이 높아 CCTV 열람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된다면, CCTV의 열람은 'CCTV 영상물 열람 요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열람하는 방법과 의사의 소견서나 공무원 동행을 통해 그 자리에서 즉시적 열람을 하는 방법이 있다. 원장은 열람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승인 혹은 거부 여부를 고지하는 과정에서 영상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와 무단 영상 촬영 금지에 대한 내용 또한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보육기관에서 영상 자료는 60일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지나 파기된 영상은 보호자가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아동들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될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으므로 CCTV 열람 요청에 대한 승인 혹은 거부 결정 과정에서 원장의 재량이 중요하다. 즉, CCTV 관리·감독은 원장의 재량이 크며, 학대 의심 상황에 대한 보호자의 항의가 있을 시에도 원장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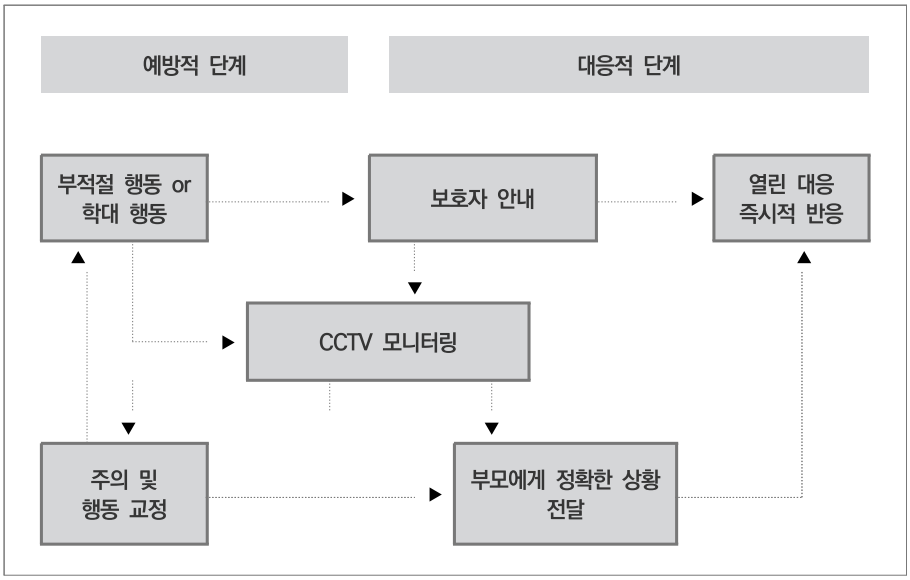
학대 의심 상황에서 보호자의 항의나 CCTV 시청 요구가 있다면 즉시적으로 성실하게 대응해줄 수 있어야 한다.

- 만약 학대가 의심된 상황이 교사 스스로의 점검이나 동료교사에 의해 인지된다면, CCTV를 활용하고 동료교사들 간의 지지체계를 통해 교사의 행동에 대한 행동을 점검해 보고, 이를 토대로 행동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교사의 지식 부재나 의도하지 않은 과정에서 혹시라도 아동이 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일부러 한 행동이 아님을 보호자에게 진솔하게 얘기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원장과 교사의 말이 다르다고 느낄 때 보호자의 불신이 가중될 수 있다. 교사들이 긴장하여 변명을 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할 경우에도 보호자의 불신은 증가될 수 있다. 교사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긴장이 많이 된다

면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고 난 이후, 보호자에게 진솔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내에서 교사의 의도치 않은 상황이나 태도로 인해 경미한 학대의심 상황이 인지되고 발견되었다면, CCTV 모니터링을 활용하여 동료 간 주의 및 행동적인 교정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보호자에게도 진솔하게 관련 행동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단계는 예방적인 단계로, 원내에서 지속적으로 CCTV모니터링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행위를 예방해 나갈 수 있다. 또한, 교사가 의도가 다분하거나 학대적인 상황의 심각성이 크다면,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보호자의 CCTV 열람 요구에 상관없이 원 자체 내에서는 CCTV를 활용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보호자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달함으로써 즉시적으로 반응하고 열린 대응을 보임으로써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록 그림 4 영유아 보육·교육기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절차



2) 기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개입 실천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사례가 가정 내 아동학대 사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으로 본 사례가 다뤄질 수 있어야 한다.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개입 과정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개입 과정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학대행위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사와 사법처분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 기관장 또한 행위자의 자격 중단 또는 취소, 기관의 운영 정지 및 폐쇄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다양한 관련인(피해 영유아, 동일 기관 영유아, 피해 영유아의 부모, 비피해 원아 부모, 가해행위자, 비가해 동료교사, 기관 운영자,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간의 갈등과 긴장 및 이해관계가 실질적인 학대 및 방임에 대한 사례 개입을 보다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53].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동학대 신고-조사-처리 과정에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부모 간의 역학관계를 포함하여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공동 작업한 표준화된 업무기준도 향후 마련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각 전문가들과의 작업을 통해 영유아에게 진행된 학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대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처리절차에 따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관계인에 대한 행정 처분 등이 수반되게 될 것이다. 학대가 발생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은 행정 처벌 및 처분에 따른 이행 외에도 더 이상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돌봄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료 간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역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사건 개입 실천의 한계] 국내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80%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사례인 만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리 및 업무 절차가 가정 및 특정의 학대행위자에 대해 초점이 맞춰

53) 자문의견 반영 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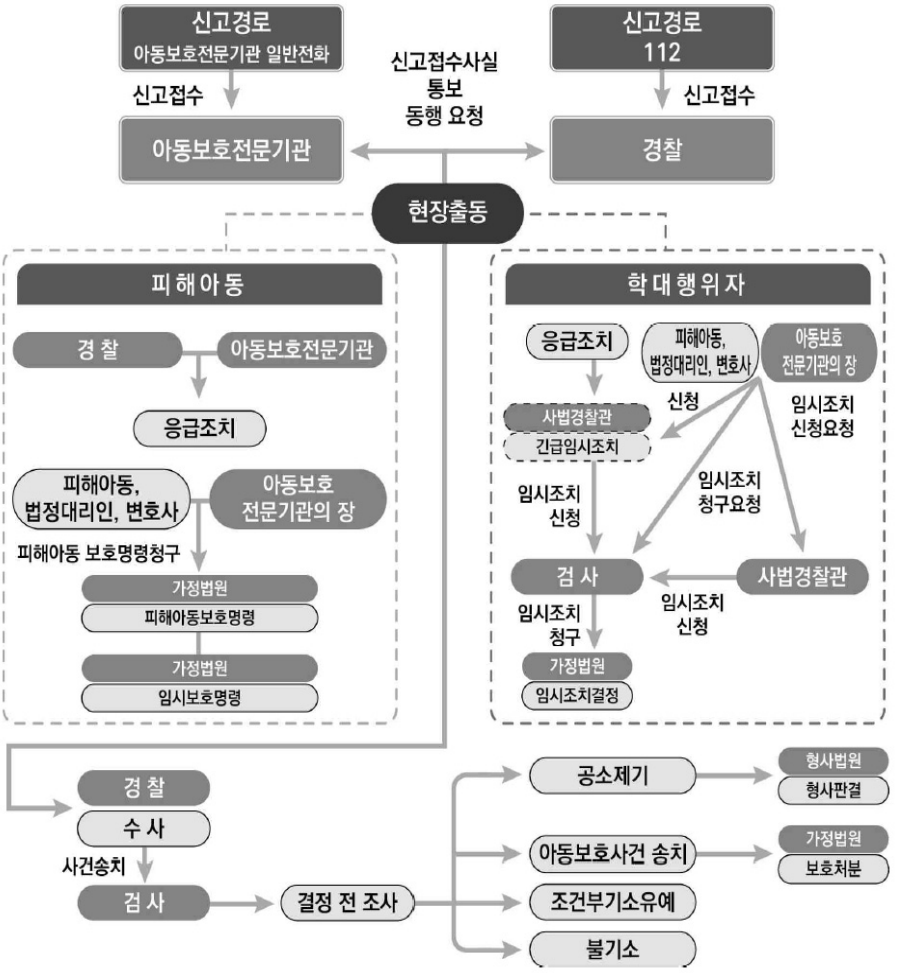
져 있다. 때문에 가정 외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 특히 아동학대 발생 장소가 특정의 보육·교육 현장일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리 및 업무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학대의심사례가 신고 된 보육·교육기관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개월 이상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조사에 응하게 된다. 명확하게 처리 절차나 관련 규정들이 제대로 통보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 실시 기관의 원장과 교사 모두가 '예측할 수 없는 조사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아동학대사건에 따른 조사가 진행될 시, 그에 따른 기관의 이미지 타격과 종사자에 대한 비 신뢰는 해당 기관 내의 다른 종사자들에게도 크고 작은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국내에서는 학대로 의심되어 조사가 진행된 보육·교육기관 내에서 '실제 학대는 발생하지 않았음'으로 판정이 나게 되면 해당 사례를 바로 종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미 이미지 실추를 입은 기관 입장에서는 그간 무너진 기관의 이미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나 대책을 국가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유아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명확한 업무 및 처리절차를 규준하고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기관에 대해서는 이후의 대책과 조치 등을 세분화하여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종사자들의 트라우마적 상황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만약, 실제로 보육교육기관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면, 아동학대사건 처리 흐름에 따라 행위자와 기관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사건 처리 흐름도로, 실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부록 그림 5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사건 처리 흐름도



자료: 보건복지부(2017).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부록 3.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중치 지표 및 점수

구 분	항 목	점 수				
심각성	상흔을 포함한 후유증 발생 여부 ※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으나 급성스트레스, PTSD 등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전문의 소견 있을 시 '입원치료 필요'로 간주	장애 진단 (4)	3주 이상 입원 치료 필요 (3)	3주 미만 입원 치료 필요 (2)	통원 치료 필요 (1)	없음 (0)
	도구 사용 여부 ※ 도구는 아니지만 손발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	망치, 칼, 송곳 등의 흉기 사용 (2)		자, 효자손 등의 물건이나 손발을 사용(1)		사용 안함 (0)
	학대유형이 성학대인 경우	예(1)		아니오(0)		
	피해아동의 연령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체벌 여부)	예(1)		아니오(0)		
	피해아동의 수	2명 이상(1)		1명(0)		
	피해아동의 감정 및 반응 (부정적 표현 정도)	신체반응과 함께 표현(2)	언어로만 표현(1)	아니오(0)		
	소계	( ) 점 / 11점				
고의성	아동학대 행위의 반복성(횟수)	2회 이상(1)		일회성(0)		
	과거 아동학대로 자격정지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예(1)		아니오(0)		
	학대행위자의 학대행위에 대한 은닉, 은폐 시도 여부 ① 증거 훼손/훼손시도 [CCTV등 삭제, 동료교사 또는 아동에게 목격·피해내용에 대한 함구(회유 포함) ② 행위에 대한 축소 진술 또는 부인	①에 해당(2)	②에 해당(1)	아니오(0)		
	개전의 정이 없음 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뉘우치지 않고 행위에 대한 정당화 ②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의지) 없음	예(1)		아니오(0)		
	소계	( ) 점 / 5점				
총계		( ) 점 / 16점				

◎ 절대지표: 1. 심각성 1번의 '장애진단' 및 '3주 이상의 입원치료 필요'에 해당되는 경우
2. 심각성 2번의 '망치, 칼, 송곳 등의 흉기 사용'에 해당되는 경우
3. 심각성 3번의 '학대유형이 성학대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4. 고의성 8번의 '과거 아동학대로 자격정지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경중 유형	기 준
매우 심각한 아동학대	가중지표 중 절대지표에 해당될 경우 또는 총점d; 8점 이상인 경우
심각한 아동학대	총점이 4~7점 이상인 경우
경미한 아동학대	총점이 0~3점 이상인 경우

부록 4. 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 세부 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38조 등)

위 반 행 위		근 거 법조문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어린이집	더.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아동을 매매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경우		시설폐쇄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한 경우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시설폐쇄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운영정지 6개월	운영정지 1년	시설폐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한 경우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시설폐쇄		
	기본적으로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한 경우로서 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운영정지 3개월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		운영정지 7일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 경우 2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 경우 2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 경우 2년)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위 반 행 위		근 거 법조문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보육교사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손해를 입힌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1호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 경우 2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 경우 2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 경우 2년)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아동학대 신고의무 불이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 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부록 5. 유아 보육·교육기관 종사자 스트레스 대응 및 자가 진단

□ 생활 속의 스트레스 대응 요령

1. 주위 사람을 잘 활용한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가족, 친구, 지인, 회사동료와의 대화를 통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킨다.
2. 취미활동, 명상, 여가활동 등을 통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스트레스 요인을 감쇄시킨다.
3. 평소에 꾸준히 운동을 한다.
4. 적극적으로 스트레스 발생원인 제거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5.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역할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수퍼바이저를 만들어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킨다.
6. 자신에게 오는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력을 꾸준하게 한다.

□ 분노조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방 법	내 용
생각 중단하기	지금 자신이 갖는 분노 감정이 과연 관심을 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화를 내게 한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대응책이 있는지를 생각해본다. 그리고는 “그만 멈춰!!”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속으로 외치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할 것인지를 정한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 적대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충동이 사라졌거나 관심 밖에 있게 되면 그럴 수 있는 자신을 칭찬한다.
관심 바꾸기	화가 나는 순간에 덜 성가신 것, 예를 들면 잡비, 라디오 프로그램, 사람 관찰하기 또는 공상하기 등 관심을 순간적으로 다른 곳에 돌려서 잠시 벗어나 본다. 때때로 효과적이다.
이완하기와 명상하기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정신을 집중한다. 숨을 내 쉴 때마다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단어나 문구를 반복해서 말한다. 위기를 벗어날 때까지 이완과 명상을 계속 한다. 집중이 어려우면 단순히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해도 좋다.
근육이완	몸의 긴장을 풀어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운동을 한다.
자극제를 피하기	가능한 담배를 끊고 카페인이 많은 음료나 단 음식물의 섭취는 최대한 줄이고 과음과 과식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
사회봉사활동 하기	자원봉사 단체를 한 곳 정해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이런 경험은 보람과 인내를 키우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공감하기	상대가 하는 행동의 동기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많은 경우에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료: 보건복지부(2017)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부록 6. 성인 우울자가선별검사
(Center for Epidemiological-Depression Scale : CES-D)

※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해 주십시오. / 점수(　　)

0. 극히 드물다(일주일 동안 1일 이하).
1. 가끔 있었다(일주일 동안 1일에서 2일간).
2. 종종 있었다(일주일 동안 3일에서 4일간).
3. 대부분 그랬다(일주일 동안 5일 이상).

1.	0 나는 슬프지 않다. 1 나는 슬프다. 2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3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0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1 나는 앞날에 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 2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느낀다. 3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3.	0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보통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2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투성이인 것 같다. 3 나는 인간적으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4.	0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다. 1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이 즐겁지 않다. 2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3 나는 매사가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5.	0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종종 죄책감을 느낀다. 2 나는 자주 죄책감을 느낀다. 3 나는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	

6.	0 나는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내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2 나는 내가 앞으로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3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0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1 나는 내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2 나는 내 자신이 싫다. 3 나는 내 자신을 증오하고 있다.	
8.	0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하여 내 자신을 비판하는 편이다. 2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해 항상 내 자신을 질책한다. 3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모든 일에 대하여 내 자신을 질책한다.	
9.	0 나는 자살할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1 나는 행동에 옮기지는 않지만 자살할 생각을 갖고 있다. 2 나는 자살하고 싶다. 3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0 나는 전보다 더 자주 울지 않는다. 1 나는 요즘 전보다 자주 운다. 2 나는 요즘 항상 운다. 3 나는 너무 울어 이제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온다.	

자료: 보건복지부(2017).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부록 7. 심층면담 질문지: 어린이집 원장용

1.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을 보고, 어느 정도까지가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지?

1.1 직접 담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있거나 주변 경험 있는지? 사례 소개 부탁

1.2. 언론에서 나온 학대 관련 의견

2. 아동 학대 주변의 관심과 반응에 대한 느낌, 의견

2.1 학부모 입장

2.2 교사 입장

2.3. 원장 입장

2.4. 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차이, 차별성에 대한 의견

3. 사전 대응 관련

1) 채용 과정에서 인성 및 역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는가?

2) 교사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는지?

3) 교사 교육

4) 감독

5) 복리후생

4. 사후 대응 관련

1) 대응 절차 관련 상세히 알고 있는지?

2) 아동학대라고 판단이 드는 상황은 어떻게 판단?
아동을 보고 판단한다면 어떠한 상황을 보고 판단?
판단이 들었을 때 대처 경험

3) 가족과의 의사소통 구조는?

4) 적절히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5) 학대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6) 해당 교사에 대한 대응은?

7) 심리적 지원 절차 마련 방안, 방법

8) 현재 대응 절차에 있어 개선점은?

5. 매뉴얼 및 조기발견체계 관련

- 아동 학대의 가장 큰 원인?
-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아동학대가 예방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올지?(요구도)
-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있나? 어떻게 대처?
- 매뉴얼 활용 방안

기타

1)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2) 아동 권리에 대한 실천, 혹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현장 - 원장〉

심층면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보다 나은 육아지원정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련번호:_____

근무 지역	
경 력	
학대교육 이수 횟수(1년간)	
교사 심리 지원 여부	
채용과정 인적성 검사 활용 여부	
아동학대 매뉴얼 비치여부 및 활용여부	
아동학대 관련법 인지 여부	
아동학대의 종류 인지 여부	
최종 학력	고졸 미만 □ 고졸 □ 대졸 □ 대학원 이상 □
전 공 (최종 학력 기준)	
성별	남 □ 여 □
연 령	만 ( ) 세

※ 바쁘신 일정 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교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8. 심층면담 질문지: 어린이집 교사용

1. 어떤 상황이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지?

1.1 가장 학대가 많이 일어날법한 상황은 언제라고 생각하는가?

1.2. 최근 들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한 말씀

2. 아동 학대 상황을 주변에서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2.1 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정, 원장, 중앙부처 등과의 관계)

3. 아동학대의 원인 관련

1)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아이를 본 적이 있는지? 그랬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2) 가정에서의 학대가 기관에서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지? 어떠한 영향?

3) 어린이집 하루 일과 중 가장 힘든 시간은?

4) 보조교사, 보조원 등 투입을 늘린다면 그만큼 업무가 경감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그럼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편해지는지, 단순히 업무만 줄어드는지?

5) 학대와 가중한 업무와의 관련
- 아이들을 보기 제일 힘든 시간과 프로그램 종류는?
예) 잠재우기, 밥먹이기 등

6) 스트레스의 가중이 학대를 초래한다고 보는지?

7) 기관에서 학대를 없애기 위해 가장 우선 조건?

4. 관련 법

1) 아동 학대 관련 법을 아는지? 그 내용을 아는지?

2) 장기결석 아동들에 대한 대처는?

3) 신고 의무자임을 아는지?
4) 학대 후 처리 절차 알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지? 현재 절차의 개선점은?

5. 관련 교육

1) 학대 관련 교육 받았는지?
2) 그 내용이 기억나는지? 적용을 현실에서 해본 적이 있는지?
3)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본적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4) 매뉴얼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5) 매뉴얼 교육이 중요? 배포가 중요? 비치가 중요?
6) 교육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 기간은? 내용은?
7) 보육교사가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학대 관련 교육은? 매뉴얼 및 절차는?
8) 교사 양성 과정을 개편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9) 교사 상담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처우 개선과 근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10) 본인이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그때 대처 방안은?
11) 영유아 권리의 존중
12) 스트레스 관리

6. 기타

1)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2) 아동 권리에 대한 실천, 혹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현장 – 교사〉
심층면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보다 나은 육아지원정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련번호:_____

근무 지역	
경 력	
학대교육 이수 횟수(1년간)	
담당 아동 연령	
하루 근무시간	
아동과 지내는 시간	
아동학대 관련법 인지 여부	
아동학대의 종류 인지 여부	
최종 학력	고졸 미만 □ 고졸 □ 대졸 □ 대학원 이상 □
전 공 (최종 학력 기준)	
성별	남 □ 여 □
연 령	만 ( ) 세

※ 바쁘신 일정 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교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9. 심층면담 질문지: 실무자용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어린이집) 아동학대 담당 아보전 관계자 FGI 질문지

2018.7.26.
육아정책연구소·굿네이버스 작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고 예방하여야 하며, 해결하여야 하는지?

1.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리 절차)**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시, 사후 처리 절차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현황 및 특징) [붙임 1] 양식 기재 요망**
   ① 최근 담당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들은 어떠한 사례들이었고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②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로 의심되어 신고접수 되었을 때,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③ 어린이집 현장 조사시, 학대 처리 절차가 가장 잘 된 어린이집이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④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⑤ 어떻게 처리를 진행하여야, 신속하고도 학대 아동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사후 처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3. **(현재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들은 주로 어떠한 유형들입니까?

4.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이유)**
   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들의 학대행위자(보육교직원 또는 원장 등)는 어떠한 특성을 보였었습니까?
   ②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여전히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학대 예방교육)**
   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②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견된 이후 학대 예방 교육이나 제반 사항들이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6. **(기존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실효성 확보 방안)**
   기존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가 일선에서 더욱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보완되면 좋을까요?

======== 선택 문항 (FGI 진행 시간에 맞추어 조정하여 질의) ========

- **(교사의 근로 환경과 학대와의 연관성)**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의 조기 발견이나 아동학대 사례 방지를 위해 보육교직원들이나 원장이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사의 인성? vs. 학대 예방 교육? vs.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vs. 원장의 관리감독?)

- **(기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시스템)**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이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붙임 1]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내 최근 아동학대 발생 현황(2017~2018년 현재)

※ 학대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이 한 기관 내에서 중복일 경우, “기관 단위” 수준에서 응답 부탁드립니다. (해당 되는 항목에 “✔” 표시를 해주시거나 “내용을 기입”해 주세요.)

연번	발생연도	기관 유형	학대행위자 (중복 시, 인원 기입)	피해아동		학대 내용(학대유형별 중복 응답 가능)	
				총 수	연령	학대유형 (피해아동 다수 시, 인원 기입)	학대 세부사항 (학대 행위 및 학대 발생 상황)
1	☐ 2017 ☐ 2018	☐ 유치원 ☐ 국공립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원장 ☐ 교사(명) ☐ 강사(명) ☐ 기타 직원(명) 기타서술( )	(명)	*1명일 경우 (만 세) *2명 이상 시 (만 세) ~ (만 세)	☐ 신체학대(명) ☐ 정서학대(명) ☐ 성학대(명) ☐ 방임(명)	
2	☐ 2017 ☐ 2018	☐ 유치원 ☐ 국공립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원장 ☐ 교사(명) ☐ 강사(명) ☐ 기타 직원(명) 기타서술( )	(명)	*1명일 경우 (만 세) *2명 이상 시 (만 세) ~ (만 세)	☐ 신체학대(명) ☐ 정서학대(명) ☐ 성학대(명) ☐ 방임(명)	
3	☐ 2017 ☐ 2018	☐ 유치원 ☐ 국공립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원장 ☐ 교사(명) ☐ 강사(명) ☐ 기타 직원(명) 기타서술( )	(명)	*1명일 경우 (만 세) *2명 이상 시 (만 세) ~ (만 세)	☐ 신체학대(명) ☐ 정서학대(명) ☐ 성학대(명) ☐ 방임(명)	
4	☐ 2017 ☐ 2018	☐ 유치원 ☐ 국공립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원장 ☐ 교사(명) ☐ 강사(명) ☐ 기타 직원(명) 기타서술( )	(명)	*1명일 경우 (만 세) *2명 이상 시 (만 세) ~ (만 세)	☐ 신체학대(명) ☐ 정서학대(명) ☐ 성학대(명) ☐ 방임(명)	

〈실무자_ 아동학대 담당 상담원〉
심층면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보다 나은 육아지원정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련번호:_____

근무 지역 (근무지 주소)	
경 력 (**년 ** 개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담당 횟수(1년간)	
가장 많이 접한 아동학대 유형	
최종 학력	고졸 미만 □ 고졸 □ 대졸 □ 대학원 이상 □
전 공 (최종 학력 기준)	
성별 / 연령	남 □ 여 □
연 령	만 ( ) 세

※ 격무로 바쁘신 일정 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록 10. 심층면담 질문지: 부모용

1. 훈육과 학대의 차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학대를 발견했을 시 어떻게 대응하였나?/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

3. 보육교사/또는 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의 훈육을 원하는가?

4. 아동학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가?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기관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나름대로 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 방법의 내용은?

6. 어느 정도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의 학대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주관적 답변 요망)

7. 주변에서 학대를 보았거나 경험해본 적 있나? 사례의 내용은?

8. 경험한 적 있다면 그 이후 취한 조치는? 신고 관련 의견은? (예) 당연히 법정절차로, 합의로, 사과 받고 종결 등)

9.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은 적 있나? 어떤 수칙으로 가정에서 학대를 예방하나?

10. 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11. 기관에서 아동학대 방지하려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12. 정부에서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13. CCTV 사각지대에 대한 의견은 ?

14. 사후대응 절차에서 필요한 것은?

〈부모〉
심층면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보다 나은 육아지원정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련번호:_____

연 령	만 ( ) 세
성별	남 □ 여 □
자녀 연령	
자녀가 다니는 기관 종류	
자녀가 기관 다닌 기간	
현재 사는 지역	
아동학대 경험 여부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여부	
아동학대 대응 절차 인지 여부	
아동학대 매뉴얼 필요성 여부	
최종 학력	고졸 미만 □ 고졸 □ 대졸 □ 대학원 이상 □
전 공(최종 학력 기준)	

※ 바쁘신 일정 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유아 보육 · 교육기관
아동학대사건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방안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3330
9 791187 952619
ISBN 979-11-87952-61-9